

dBrain 재정사업정보 관리 방안

박정수

2019. 8.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dBrain 재정사업정보 관리 방안

박정수

2019. 8.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dBrain 재정사업정보 관리 방안

박정수 부연구위원

이 보고서는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www.kpfis.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발간 보고서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소중한 의견이 향후 재정관리시스템 개선과 재정운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02-6908-8581 ✉ analysis@kpfis.kr

요 약

1. 연구 개요 및 목적

-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시성과 정확성을 갖춘 수요자 맞춤형 재정통계에 대한 수요 증가
 - 재정운용주체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경기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재정운용에 필요한 재원배분 및 지출구조 등에 관한 체계적 거시재정통계 생성 필요
 - 거시재정통계란 재정규모, 정책목적별 재원배분, 지출 한도, 의무·재량 지출 등 성질별 재정지출 등에 대한 총량수준의 재정지표를 의미
 - 조세 등의 부담주체이며 재정운용의 감시자인 국민은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따른 재정지출 귀착 규모, 재정운용의 성과 등에 대한 미시재정통계 생성 필요
 - 미시재정통계란 재정을 구성하는 사업별 재정규모 및 정책대상별 재정귀착, 사업별 성과 등을 산출목적에 따라 일관된 기준에 의거 분류한 세부 재정지표를 의미
- 재정통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통계 생산 인프라인 dBrain의 세부사업별 관리정보의 체계적 분류 및 신규 관리정보 부여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적시성과 일관성을 갖춘 수요자 맞춤형 통계생산 기반 강화
 - 향후 정책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관리정보 부여 및 관리의 신축성과 통계산출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계층화된 분류체계 개발
 - 재정정보 공개수준이 우수한 해외 주요 국가의 재정관리시스템 정보관리체계 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2. dBrain 사업정보 관리 현황과 문제점

- dBrain의 사업정보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되며, 세부사업별로 일자리, 연구개발 등의 정책 목적, 지출유형 (의무지출/재량지출 등), 각목 명세 등을 입력하고 있으나 정확도와 활용도가 낮음
 - 재정사업정보 중 사업을 요약해 보여주는 메타 데이터인 속성정보가 세부 사업별로 체계적으로 부여 및 관리되고 있지 않음
 -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없어 사업별로 부여된 사업속성이 표준화되지 못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정확성이 결여
 - 사업 신설, 분리, 통합에 따른 사업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사업별, 프로그램별 시계열 통계 작성이 어려움

3. 해외 사례 시사점

- 재정정보 전산화 및 정보 공개 선진국인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의사결정지원 및 정보공개 확대 등 관리목적에 부합하는 속성정보를 관리
 - * 재정정보 공개 수준을 평가하는 Open Budget Index 평가(2017기준)에서 미국은 8위(77점), 영국은 10위(74점), 캐나다는 16위(71점)로 한국(28위, 60점)보다 높음
 - 미국은 의사결정 지원과 대국민 재정사업정보 공개 등 목적에 따라 속성정보를 관리하고 관리예산처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
 - 캐나다는 재정사업정보 관리체계를 재무위원회로 일원화하였으며, 각 부처는 재무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재정사업 정보를 생산하고 의사결정 및 대국민 정보공개에 활용
 - 영국은 재무부 주관으로 중앙 재정정보취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계정, 국제기준과 일치하는 속성을 정책목적별 속성과 함께 관리하여 재정 정보를 활용 및 공개

- dBrain의 의사결정지원과 수혜자 중심 통계를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
 - 미국과 캐나다는 개별 재정사업에 속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목적별, 수혜자별 사업 분류가 가능해 재정정보의 활용성이 증대
 - 영국은 속성별 재정관리를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정 정보를 신속하게 통계화하여 공개
 - 재정사업정보 관리를 위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속성정보를 활용한 통계산출의 다양화, 신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별 속성을 표준화함과 동시에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함

4. dBrain사업정보 속성 분류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 재정사업의 목적, 대상, 추진체계 등을 검토하여 모든 사업에 부여할 수 있는 공통 속성을 추출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분류체계 개발
 - 기업 지원, 복지 지원 등의 속성을 정책목적, 사업속성, 수혜자 속성 등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표준화된 공통속성 분류체계에 따라 개별 재정사업에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
 - 재정사업은 정책 목적을 가지고 편성되고, 사업특성과 전달체계를 따라 집행되며, 최종적으로 수혜자에게 귀착되어 집행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따라 속성을 분류
 - 속성의 분류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속성을 입력하는 사업관리자의 입력 방법과 순서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단계별 분류로 볼 수 있음
 - 속성을 추출하기 위해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세부지침(이하 지침),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게시된 부처별 사업설명자료,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사업관리시스템 자료(이하 dBrain속성) 등을 활용

- 부처별 사업설명자료는 시범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분석

□ 정책목적, 사업속성, 수혜자 속성에 따라 분류체계 구조화

- 정책목적별 속성은 직접지원인 산업지원(기업 지원)과 복지지원(개인 지원) 등 5개로 구분하고 하위분류 제시
- 사업속성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달방식 또는 체계에 관한 속성으로 정책지원 유형에 따른 속성과 전사업 공통속성 등의 체계에 따라 분류
- 수혜자 속성은 정책대상의 경제적 특성을 분류한 것으로 하나의 사업에 복수의 수혜자 속성이 지정될 수 있도록 분류

□ 공통색인 분류체계의 적용을 통해 재정통계의 일관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확보하여 의사결정 지원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

- 정책당국에게는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일자리, 안전, 문화 SOC 등 각 속성으로 사업군을 구분해 시계열에 따른 변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의사결정 지원 강화
- 국민에게는 정책, 사업, 수혜자 관련 속성 분류를 기반으로 추출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개인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을 속성을 통해 검색 기능 제공
- 적실성, 정합성을 갖춘 통계를 산출하고 공개함으로써 재정 투명성 제고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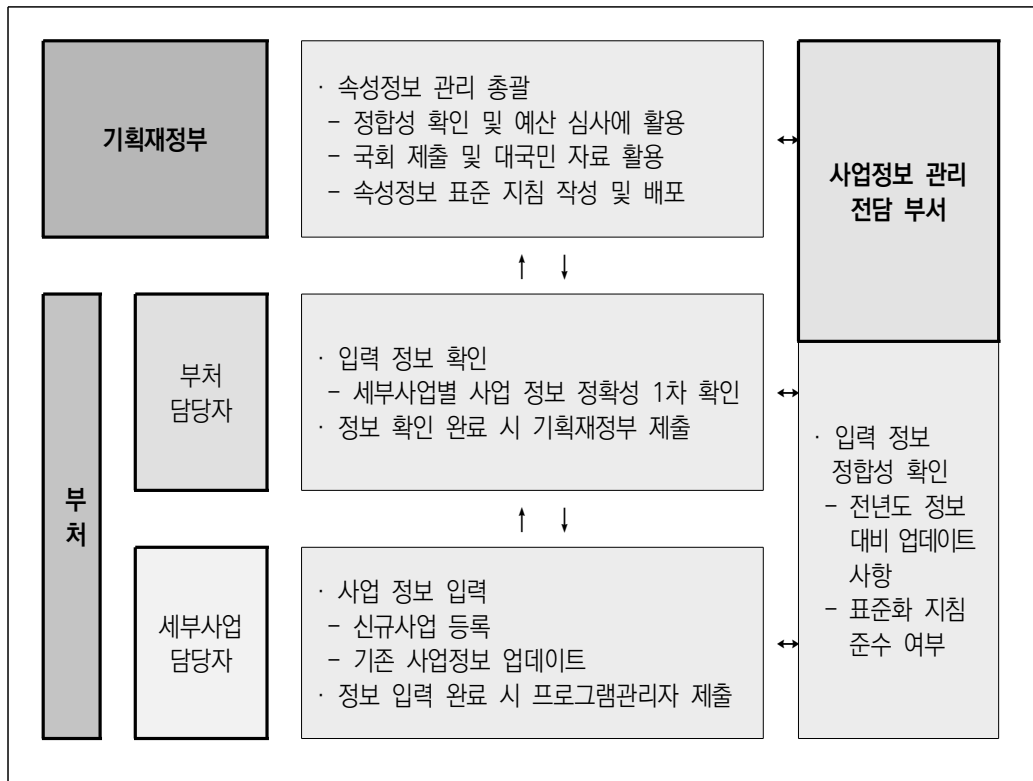
〈그림 1〉 속성분류체계 개선안 및 기대효과



- 속성분류체계에 따른 사업정보 관리, 속성 기반 사업분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사업정보의 이력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속성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정보 변경 사유에 따른 관리(신설, 통합, 폐지 등), 예산 순기에 따른 관리 등이 필요
 - 세부사업 내용 변경 유형을 신규, 개편, 국정 소요 등으로 유형화해 개별 유형에 따른 속성 부여 및 변경 절차를 마련
 -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사업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정확한 일정 관리와 담당자 지정 등이 필요
 - 사업의 이력 관리, 변경된 속성정보의 정합성 검토 등을 위해 전담 관리 기관 지정도 고려

- 세부 사업별 공통색인 속성정보의 관리는 재정사업정보 전산화 관리의 시작이며, 관리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히고 표준화해야 함
 - 사업별 성과정보 관리, 수혜자 상세 정보 등의 재정사업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업무 부담 증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정보 활용의 가치가 비교적 높은 정보부터 관리를 시작하고 관리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함
 - 속성정보는 새로운 속성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신속한 반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미사용 속성의 폐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야 함

〈그림 2〉 사업정보 관리체계 개선 방안



목 차

I. 서론	1
II. dBrain 재정사업정보 관리체계	2
1. 재정사업정보 관리 개요	2
2. 프로그램 예산체계 현황	6
3. dBrain 재정사업정보 관리 현황	17
4. 문제점	28
5. 개선 방향	33
III. 해외 사례	35
1. 미국의 재정사업정보 관리 체계	36
1) 개요	36
2) 예산편성시스템의 재정정보 관리	37
3) 연방보조사업편람의 사업정보 체계	47
4) 관리체계	54
2. 캐나다	59
1) 프로그램 예산체계	59
2) 분야별 재정사업 분류	64
3. 영국	70
1) 재정 체계	71
2) 시스템 속성정보 관리	75
4. 해외 사례 시사점	80

IV. 속성분류 기반 재정사업정보 관리 방안	85
1. 속성 분류체계 재구조화	85
1) 속성 추출 및 재분류	85
2) 사업속성 및 수혜자 속성의 부여	107
3) 속성분류체계 적용방안: 보건복지부 사례	111
4) 속성정보 관리체계	126
2. 사업정보관리제도 운영 방향	129
1) 속성정보의 생산목적 명확화 및 목적에 맞는 속성체계 구축	130
2) 시스템 기반 속성의 표준화와 유연한 관리	131
3) 관리 거버넌스 구축	133
4)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정비	134
V. 결론	137

표 목 차

〈표 2-1〉 주요 선행연구	4
〈표 2-2〉 2019년 본예산 기준 프로그램 예산체계 분야-부문 현황	7
〈표 2-3〉 2019년 본예산 기준 품목별 현황	12
〈표 2-4〉 정부재정통계(GFS) 지출 구분 매핑표	15
〈표 2-5〉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사업유형 분류	17
〈표 2-6〉 dBrain 사업유형 정보 관리 현황	18
〈표 2-7〉 성질별 분류와 사업유형별 분류 인건비 추이	20
〈표 2-8〉 R&D·정보화사업 정부 발표액 및 dBrain세부사업 총액 추이	21
〈표 2-9〉 의무·재량지출 추이	24
〈표 2-10〉 dBrain 일자리 관련 속성정보 관리현황	25
〈표 2-11〉 일자리사업 정부 지침 상의 사업 유형 현황	25
〈표 2-12〉 dBrain정책구분 별 세부사업 속성정보 현황	26
〈표 2-13〉 재정사업 이력관리제도 개요	27
〈표 2-14〉 예산 총액 및 사업유형별 세부사업수 추이(본예산총계기준)	30
〈표 3-1〉 미국의 주요 재정정보시스템 및 주요 관리대상 정보 현황	37
〈표 3-2〉 세출 예산의 기능별 분류와 코드	38
〈표 3-3〉 미국 MAX 시스템의 주요 식별 코드	40
〈표 3-4〉 미국 MAX 시스템의 주요 회계 구분별 코드 부여	41
〈표 3-5〉 미국 MAX 시스템의 전환정보 코드	42
〈표 3-6〉 미국 프로그램 코드 부여	44

〈표 3-7〉 미국 MAX데이터 시스템의 의무·재량지출 구분 속성 정보	45
〈표 3-8〉 미국 MAX시스템의 사업속성 분류 코드 부여	46
〈표 3-9〉 미국 CFDA의 색인정보	49
〈표 3-10〉 미국 CFDA의 보조유형 속성 정보	49
〈표 3-11〉 미국 CFDA의 사업 시행 주체 속성	50
〈표 3-12〉 미국 CFDA의 수혜자격 속성 정보	52
〈표 3-13〉 미국 CFDA의 기타 색인 예시	53
〈표 3-14〉 미국 CFDA의 각 사업별 표준 목차	54
〈표 3-15〉 미국의 예산 편성 절차와 MAX시스템	55
〈표 3-16〉 미국 MAX데이터 구성	56
〈표 3-17〉 미국 2017 회계연도 CFDA 연간 활동 및 일정	57
〈표 3-18〉 캐나다의 예산 분야·부문 대분류	60
〈표 3-19〉 캐나다 재정의 정책별 분류	61
〈표 3-20〉 캐나다 예산의 지출재원 구분	62
〈표 3-21〉 캐나다의 성과관리 취합 및 공개 정보	63
〈표 3-22〉 캐나다 성과 정보 중 카테고리형 속성정보 현황	64
〈표 3-23〉 캐나다 농업 분야 속성 분류	66
〈표 3-24〉 캐나다 산업·기업 분야 속성 분류	67
〈표 3-25〉 캐나다 복지 분야 사업 분류	69
〈표 3-26〉 영국의 재정통계 발간물 주요 특징	72

〈표 3-27〉 영국의 예산 대분류 체계	73
〈표 3-28〉 영국 예산의 통제 기준 분류	74
〈표 3-29〉 영국 OSCAR 총지출 기준 통계작성용 코드	76
〈표 3-30〉 영국 OSCAR 총서비스지출 기준 통계작성용 코드	76
〈표 3-31〉 영국 OSCAR 보조금 통계작성용 코드	76
〈표 3-32〉 영국 OSCAR 스펀딩리뷰 사업 코드	77
〈표 3-33〉 영국 OSCAR 지역정보 코드	77
〈표 3-34〉 영국 OSCAR PESA 통계작성용 코드 재분류 예시	78
〈표 3-35〉 영국 OSCAR 현금주의-발생주의 조정 코드	78
〈표 3-36〉 영국 OSCAR 탑재 국민계정 통계 작성용 대분류 코드	79
〈표 3-37〉 영국 OSCAR 예산표(Public Sector Accounts Table) 작성용 코드	79
〈표 3-38〉 영국 OSCAR 기타 코드	80
〈표 3-39〉 주요국의 속성정보 관리 주체 및 목적 요약	83
〈표 4-1〉 사업요약정보 분류체계 개선 방향	86
〈표 4-2〉 산업지원 정책 유형 사업속성별 사업 예시	98
〈표 4-3〉 사회복지 지원 정책 유형 사업속성별 사업 예시	99
〈표 4-4〉 시설 및 자산지원 정책 유형 사업속성별 사업 예시	100
〈표 4-5〉 국제협력 지원 정책 유형 사업속성별 사업 예시	100
〈표 4-6〉 행정사업 지원 정책 유형 사업속성별 사업 예시	101
〈표 4-7〉 속성분류 및 기입 방식 개선안 신규 대조표	103

〈표 4-8〉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편성 현황	111
〈표 4-9〉 내역사업과 세부사업 일치 비율 90% 이하 사업(2017년 기준)	113
〈표 4-10〉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세부사업 집계 현황	115
〈표 4-11〉 세부사업 기준 일자리 사업 품목별 분류	116
〈표 4-12〉 정책 유형 대분류-중분류 기준 사업 분류	118
〈표 4-13〉 개인·복지지원 유형의 중분류 지원방식별 분류	120
〈표 4-14〉 개인·복지지원 유형 중분류별 부문별 사업 분류 및 예시	121
〈표 4-15〉 정책 유형 대분류별 시행주체별 분류	123
〈표 4-16〉 행정지원사업 유형별 사업 분류	125
〈표 4-17〉 속성정보 관리 일정 예시	128

그림 목 차

〈그림 2-1〉 2019년도 부문체계 개편	9
〈그림 2-2〉 2015~17년 비목체계 변동 현황	14
〈그림 2-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업관리 개요	23
〈그림 3-1〉 미국 MAX 시스템의 계정 코드 부여	43
〈그림 3-2〉 CFDA 신규사업 등록 절차	58
〈그림 3-3〉 영국의 재정 지출 프레임워크 및 통계생산주기	71
〈그림 4-1〉 속성 분류 체계	88
〈그림 4-2〉 속성 분류 적용 예시	105
〈그림 4-3〉 속성정보 업데이트 흐름도 예시	127

I 서론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한 재정의 대응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정보와 재정통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재정운용주체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경기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원배분과 지출구조 등에 관하여 적시성과 정확성을 갖춘 체계적 거시재정통계의 생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은 조세 부담 주체이자 재정운용의 감시자로서,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따른 재정지출 귀착 규모, 재정운용의 성과 등에 대한 미시재정통계의 생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재정 정보 및 재정통계에 대한 수요는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재정통계란 재정 규모, 정책목적별 재원배분, 지출 한도, 의무·재량지출 등 총량 수준의 거시재정 지표에서부터, 재정을 구성하는 개별 사업의 규모 및 정책 대상별 재정귀착, 사업별 성과 등 산출목적과 일관된 기준에 따라 분류한 세부 재정지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재정통계를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재정의 대국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정정보를 활용한 재정운용의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수요자 기반 재정정보를 산출하려면 재정통계 생산 인프라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dBrain)의 세부사업별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현행 dBrain의 사업관리정보는 세부사업별 관리되는 사업정보가 체계적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해 정확도와 활용도가 낮다. 특히 재정사업 관리정보 중 사업에 대한 요약 색인정보이자 메타 데이터에 해당하는 속성 정보가 체계적으로 사업별로 부여 및 관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의 속성정보에 해당하는 상세 사업정보 역시 시스템 기반으로 표준화되지 못하고 부처별로 수기로 작성하고 있어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dBrain의 사업정보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해외 주요국 재정관리시스템의 정보관리체계 현황조사를 통해 속성정보체계 개선방안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것이다. 해외사례는 속성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의사결정 지원 및 대국민 정보 공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II dBrain 재정사업정보 관리체계

1. 재정사업정보 관리 개요

재정정보시스템(FMIS: Financial Management and Information System)은 지난 10여년 간 국제적으로 확산되면서 예산의 신뢰성 회복, 재정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했다. FMIS는 일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준비와 재무/예산 집행 업무에 대한 모든 거래내역을 전자화하여 기록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된다(World Bank, 2012). 재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된 정보와 별도의 관리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된 정보를 단일의 데이터저장소(DW: Data Warehouse)에서 결합하는 경우를 통합재정정보시스템(IFMIS: Integrated FMIS)으로 별도로 구분하기도 하며,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은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재정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즉 재정정보시스템의 도입과 재정의 정보화는 재정 관련 업무의 전산화에서 나아가, 재원 배분 및 정책 결정 등 의사결정 합리화를 위한 정보제공, 그리고 대국민 재정정보 공개를 통한 재정 투명성 달성 등이 재정의 정보화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재정사업정보는 특히 재정의 단위인 재정사업 중 세부 사업에 대한 각종 질적 정보를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사업의 질적 정보 관리는 해당 재정사업의 당해연도 예산액이나 집행액 등 수량적 정보만을 관리하는 것을 벗어나, 각종 텍스트 형태의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들 텍스트 정보는 각 세부사업을 요약해주는 공통 색인 속성에서부터 시작해, 사업의 목적과 수행방식에 대한 서술, 전년도 성과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다.

재정사업정보 관리에 대한 선행연구는 재정정보 공개를 위해 사업을 유형화하여 정보공개 지표, 성과지표 등 재정정보를 생산한다는 관점에서 주로

진행되었다. 이원희(2016)의 연구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재정사업의 정보를 체계화하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점이 있으나, 연구 대상 시스템 차이에 따라 재정의 범주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권오성(2016)의 연구는 각 부처별 지침 등 매뉴얼 중심 접근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본 연구의 문헌연구 접근과 유사하다. 김찬수, 오윤섭(2013)은 감사원의 관점에서 유사중복 식별 및 유형화 연구를 진행, 사업관리체계를 검토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으나 연구의 목적이 감사에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차별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2)의 연구는 일반재정사업을 유형화하여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 본 연구에 시사점이 있으나 연구목적이 기본적으로 성과관리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별적이다.

〈표 2-1〉 주요 선행연구

연구명 (연구자, 수행연도)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국고보조금 정보공개 대국민 서비스 분류체계 개발 (이원희, 2016)	·국고보조금 정보를 수혜자중심으로 분류하여 업무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	·문헌조사 ·전문가 심층 면접	·국고보조금 분류에 top-down, bottom up 방식 활용 ·정보체계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체계 연계
재정사업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권오성, 2016)	·국고보조금 책무성 제고, 실효성개선을 위한 개혁 방안 탐색	·제도 등 문헌 분석 ·사업구조 특성에 맞추어 유형별 특징 분석	·법률, 부처별 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제도 미비점 및 보완사항 도출 ·사업유형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공공부문 유사중복 사업 식별·관리 실태와 주요 이슈 (김찬수, 오윤섭, 2013)	·유사중복 식별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 접근법 제시 ·유사중복 유형화, 및 식별 방법론 수립	·정부 등의 유사중복사업 식별 시스템 및 조정실태 조사	·주요 사업분야 별 조정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유사중복에 대한 체계적, 주기적 접근 등의 시사점 제시
재정사업 성과지표 개발 매뉴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2)	·성과지표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내 재정사업의 성과지표 사례를 제시	·재정사업 성과지표 사례조사	·재정사업을 23개 유형으로 분류한 후 각 유형별 성과지표 정리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 중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공식 정보는 법이 정한 프로그램 예산 분류체계, 지침이 정하는 행정과목 및 사업 유형 분류¹⁾ 등이 있으며, 이 중 행정과목은 통계 생산용 비목체계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공식적이고 단순화된 분류체계에 의한 통계 산출은 예산 순기에 맞는 정보를 정확하게 산출해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공식적 분류체계에 의한 정보는 경직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재정정보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모두 대응하는 것에는 물론, 예산 순기를 벗어난 시기에 적시성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재정정보시스템의 공식적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별도의 좀 더 복잡하게 재정사업에 대해 요약정보를 속성으로 부여하여 관리하기도 한다. 이 요약 색인 정보를 재정사업의 속성이라고 하기도 한다. 현재 dBrain은 예산의 공식적 분류체계에 기반을 둔 사업분류 체계, 재정사업 정보와 이력, 공통 색인 등을 관리하는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예산과 집행의 분리, 재정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속성관리 및 이에 기반을 둔 사업분류체계 및 관리체계 미흡으로 의사결정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정보 산출에 제약이 있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예산 분류체계, dBrain의 사업정보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사업정보를 분석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dBrain 시스템은 중앙집권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유형 분류와 속성정보 체계는 정보의 산출과 제공보다는 예산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는 전 단계의 관리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특징이 있다.

1) 지출목은 인건비, 경비, 건설비 등을 의미한다. 사업 유형 분류는 연구개발, 정보화, 성인지 등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서 분류하는 사업 분류이다.

2. 프로그램 예산체계 현황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을 2007년 시행하면서 공식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을 도입했다. 재정업무의 정보화는 제97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며, dBrain은 동법에 의해 개발되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라 가동 및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그리고 재정 전과정에서 산출되는 정보의 공표에 대해서는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에서 규율하고 있다.

프로그램 예산은 중앙정부의 기능을 중심으로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의 상하계층 구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세출 예산은 2019년 본예산 총지출 기준으로 55개 중앙관서에 대해 16대 분야 75대 부문 563개 프로그램²⁾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편성주체는 조직(실, 국)이 되며, 하나의 프로그램을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부처에서 편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프로그램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 또는 단위사업(activity)의 묶음을 의미한다. 프로그램은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묶음의 범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 분야의 국민연금운영 프로그램은 국민연금 급여지급의 단일 단위사업,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성되고 금액은 2019년 예산 기준 23조원에 달하지만, 같은 분야 취약계층지원 부문의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총액은 2,583억원 규모임에도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의 계정 구분에 따라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된다. 교통 및 물류 분야의 경우는 도로, 철도 부문은 건설, 관리, 지원 등 기능에 따라 프로그램이 구분되고 건설 프로그램은 지역별 건설 사업으로 세분화된다.

즉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상이한 형태의 지출을 분야별, 부문별로 유형

2) 총계 기준 762개. 이 중 성과관리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은 469개이고 699개의 성과지표가 부여되며, 성과관리대상이 설정된 예산은 239조 7,713억원으로 총지출 대비 51.0%이다.

화하고 각 분야, 부문 내에서 특징에 따라 예산이 구분되므로, 그 자체로 하나의 예산분류체계라고 할 수 있다. 각 분야별로 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 편차가 크므로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지출 특징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예를들어 프로그램 수가 22개로 16대 분야 중에서 가장 작은 교육 분야는 전체 예산 70.6조원 중 단일 프로그램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9.1조원(84.3%)에 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교육 분야의 지출은 각 광역 교육청에 지출이 광범위하게 위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유사하게 76.6조원 중 68.6%인 52.5조원을 지방교부세로 지출하는 일반·지방 행정 분야는 해당 분야에서 지출이 있는 소관 부처가 21개에 달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가 96개로 가장 많다.

〈표 2-2〉 2019년 본예산 기준 프로그램 예산체계 분야-부문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금액	비중	구분	금액	비중
010일반·지방행정	765,597	16.3	020공공질서 및 안전	201,317	4.3
011입법및선거관리	10,289	0.2	021법원및헌재	20,652	0.4
012국정운영	5,861	0.1	022법무및검찰	40,615	0.9
013지방행정재정지원	532,631	11.3	023경찰	113,558	2.4
014재정금융	183,262	3.9	024해경	13,845	0.3
015정부자원관리	8,425	0.2	025재난관리	12,647	0.3
016일반행정	25,128	0.5	090보건	121,203	2.6
030통일외교	50,648	1.1	091보건의료	25,930	0.6
031통일	13,621	0.3	092건강보험	90,187	1.9
032외교통상	37,026	0.8	093식품의약안전	5,086	0.1
040국방	453,437	9.7	100농림수산	200,303	4.3
041병력운영	158,353	3.4	101농업농촌	149,143	3.2
042전력유지	139,101	3.0	102임업산촌	21,743	0.5
043방위력개선	153,651	3.3	103수산업어촌	22,448	0.5
044병무행정	2,332	0.0	104식품업	6,970	0.1
050교육	706,490	15.0	110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87,641	4.0

051유아 및 중등교육	593,832	12.6
052고등교육	102,576	2.2
053평생직업교육	8,771	0.2
054교육일반	1,312	0.0
060문화 및 관광	72,495	1.5
061문화예술	31,069	0.7
062관광	14,140	0.3
063체육	14,647	0.3
064문화재	9,008	0.2
065문화및관광일반	3,632	0.1
070환경	73,972	1.6
075해양환경	2,875	0.1
076환경일반	4,739	0.1
077물환경	39,463	0.8
078자원순환및환경경제	6,708	0.1
079기후대기및환경안전	13,808	0.3
07A자연환경	6,379	0.1
080사회복지	1,488,769	31.7
081기초생활보장	127,046	2.7
082취약계층지원	34,019	0.7
083공적연금	503,116	10.7
087보훈	55,588	1.2
088주택	257,309	5.5
089사회복지일반	12,958	0.3
08A아동보육	81,297	1.7
08B노인	139,776	3.0
08C여성가족청소년	10,475	0.2
08D고용	194,598	4.1
08E노동	67,138	1.4
08F고용노동일반	5,449	0.1

111산업금융지원	2,000	0.0
113무역및투자유치	6,705	0.1
115에너지및자원개발	34,194	0.7
116산업중소기업일반	6,146	0.1
117산업혁신지원	38,049	0.8
118창업및벤처	32,369	0.7
119중소기업및소상공인	65,331	1.4
11A지식재산일반	2,848	0.1
120교통 및 물류	156,546	3.3
121도로	58,742	1.3
122철도	55,163	1.2
124해운항만	17,172	0.4
125항공공항	1,561	0.0
126물류등기타	23,908	0.5
130통신	73,319	1.6
131방송통신	2,962	0.1
132우정	57,127	1.2
133정보통신	13,230	0.3
140국토 및 지역개발	40,985	0.9
141수자원	17,311	0.4
142지역및도시	20,205	0.4
143산업단지	3,469	0.1
150과학기술	73,029	1.6
152과학기술연구지원	37,659	0.8
153과학기술일반	4,843	0.1
154과학기술인력및문화	2,229	0.0
155과학기술연구개발	28,297	0.6
160예비비	30,000	0.6
총합계	4,695,752	10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그림 2-1〉 2019년도 부문체계 개편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2019 주요 재정통계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국가재정법」 상 입법과목인 장, 관, 항에 직접 대응되며 일차적으로는 국회에 예산의 내용을 프로그램의 성과 중심으로 보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정부의 공식적 성과관리 제도로서 재정 활동의 성과를 측정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 예산 기반 성과관리의 원리는 유사한 사업 대안들 간의 비교를 통한 자원배분에 있다. 개별 부처는 프로그램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 지출 계획을 예산안 편성과과정에서 작성하며, 프로그램의 하위인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하여 자체적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한다.

각 단위사업에서 프로그램, 부문, 소관, 분야 등 상위로 갈수록 분류체계의 개편이 적으므로 비교적 장기적인 시계열에서 안정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분야, 부문 등은 거시적인 자원 배분의 지표로 사용하기도 한다.³⁾ 그러나 프로그램 예산체계 상위는 사회 변화 등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직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권교체 시기마다 정부조직개편을, 그리고 매년 부처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편을 통해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변화를 주고 있다. 2019년에는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부문 개편을 하였다. 이 개편으로 사회복지 분야 3개 부문이 6개로 분리되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개 부문이 5개로 분리되는 등 수혜자 중심 분류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의 과학기술인력 및 문화 부문 신설, 통신 분야 정보통신 부문 신설 등 신설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건설 지원이 지속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도시철도 부문은 철도 부문으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환경 분야는 4개 부문이 명칭을 변경했다. 이와 같은 개편을 통해 수혜자 중심의 예산분류 강화, 목적 중심의 예산체계 개편이 이루어졌다.

단위사업은 복수의 비교적 동질적인 세부사업들로 구성되며, 각 세부사업

3) 같은 이유로, 비교적 사업의 개폐가 잦은 세부사업의 경우는 자원 배분의 지표로 사용하기 어렵다. 가령 철도, 도로 사업의 경우는 사업 종료로 인한 재정여력(fiscal space)의 지속적인 확보가 있어야 신규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호주는 이러한 자본지출 예산사업을 총액 한도 내에서의 재사용(recycle)관점에서 집행하기도 한다.

은 품목을 중심으로 편성한다. 세부사업, 품목별 예산의 근거는 「국가재정법」상 행정부에 관리가 위임된 행정과목으로 편성에 대한 기준이 행정지침인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지침”이다. 세부사업 수는 2019년 본 예산 총지출 기준으로 6,375개이다.⁴⁾ 세부사업은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로 분류하며 추가적으로 해당 세부지침에서 25개 사업 유형이 나열된다. 그리고 비목체계는 7개 성질 분류, 26개 지출목, 105개 지출세목으로 세분화된다. 예산의 목별 분류는 사업비의 성질을 밝혀줌과 동시에 결산 후 통계 작성의 기본 단위로서 기능을 한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각 사업에 대해 지출 대상별로 예산을 분류해 사업 목적을 분명히 해주는 예산제도이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집행의 재량을 제한하고 책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다. 품목별 예산은 예산을 행정부 지침 상의 행정과목으로 처리해 관리하는 것으로 예산에 대한 적극적 내부통제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의회에 보고되어 행정부의 재정통제 및 책임성 부여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품목별 예산 분류를 통해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구분하고, 출자·출연·위탁 등의 수행방식을 구분하여 지출대상과 지급금액을 명확히 함으로서 지출통제의 기본이 된다. 그러나 통제 위주의 품목 분류는 해당 사업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정보는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4) 예산이 배정된 사업, 즉 국회 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지 않은 사업이 기준이다.

〈표 2-3〉 2019년 본예산 기준 품목별 현황

(단위: 억원, %)

분류	금액	비중	분류	금액	비중
100인건비	401,023	8.5	400자산취득	704,089	15.0
200물건비	246,594	5.3	410건설보상비	13,015	0.3
210운영비	196,501	4.2	420건설비	127,036	2.7
220여비	7,061	0.2	430유형자산	158,937	3.4
230특수활동비	2,860	0.1	440무형자산	1,283	0.0
240업무추진비	1,936	0.0	450융자금	329,735	7.0
250직무수행경비	9,849	0.2	460출자금	71,969	1.5
260연구용역비	22,943	0.5	490지분취득비	2,115	0.0
270안보비	5,446	0.1	500상환지출	158,417	3.4
300이전지출	3,147,470	67.0	700예비비 및 기타	38,160	0.8
310보전금	183,870	3.9			
320민간이전	889,967	19.0			
330자치단체이전	1,704,188	36.3			
340해외이전	16,742	0.4			
350일반출연금	163,627	3.5			
360연구개발출연금	189,076	4.0			
			총합계	4,695,752	100.0

주) 총지출 기준이므로 성질별 대분류인 600전출금은 제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마찬가지로 비목체계 역시 통계 생산, 예산에 대한 품목별 통제 필요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오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2017년에 걸쳐 명칭변경, 분류체계 변경 등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가장 많은 개편이 이루어진 부분은 출연금이다.

출연금은 1개의 단일 지출목과 세목으로 지출되던 것이 2개 지출목 7개 세목으로 구분되기 시작했다. 이 외에 민간이전 비목에 고용부담금 세목이 신

설되고, 보전금 비목의 보상금 세목이 손실보상금과 기타보전금으로 구분되기 시작한 것이 이전지출 분류에서의 주요 차이이다. 인건비 분류에서는 기타직 보수 세목이 기타직보수와 상용임금으로 구분되고, 물건비의 직무수행경비에 포함된 직급보조비가 인건비로 통합되었다. 물건비의 경우는 2015년까지 연구개발비 단일 지출목 세목으로 편성 지출되던 것이 2017년부터 연구용역비 단일 지출목의 2개 목으로 구분된다. 업무추진비, 여비 지출목의 일부 세목은 지침 변경으로 인해 명칭이 바뀌었다. 운영비 지출목의 급량비는 급식비로 개편되면서 급량비로 편성되는 유류비를 연료비 비목과 통합, 유류비로 변경하였으며, 차량선박비, 위탁사업비, 일반수용비는 각각 관리용역비, 일반용역비, 일반수용비로 개편되었다.

〈그림 2-2〉 2015~17년 비목체계 변동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비목	세목	비목	세목	비목	세목
인건비	인건비	기타직보수	좌동		인건비	기타직보수
	직무수행 경비	직급보조비	좌동			상용임금 (분리 신설)
					인건비	인건비(통합)
물건비	연구개발비		연구 용역비	정책연구비	연구 용역비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 (폐지)	
	업무 추진비	관서업무비	좌동		업무 추진비	관서업무추진비
	여비	국제화여비			여비	국외교육여비
	운영비	급량비			운영비	급식비
		연료비			(폐지)	
		차량선박비				
		위탁사업비			관리용역비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분리 신설)	
이전 지출	출연금	출연금	일반 출연금	일반법령출연금	일반 출연금	기관운영출연금
			연구개발 출연금	건축비	연구개발 출연금	사업출연금 (분리 신설)
				경상경비		연구개발건축비
				연구활동비 등		연구개발 경상경비
				인건비		연구개발연구 활동비 등
				장비시스템구축비		연구개발인건비
						연구개발장비 시스템구축비
	민간이전	구료비	좌동		민간이전	구호및교정비
		민간대행사업비				법정민간 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사업비
	보전금	포상금 등	좌동			고용부담금 (신설)
		보상금			보전금	포상금
						손실보상금
						기타보전금 (분리 신설)

구분	2015		2016		2017	
	비목	세목	비목	세목	비목	세목
자산 취득	토지 매입비	토지매입비	작동		건설 보상비	건설보상비
	건설비	건설가계정			건설비	공사비(통합)
		시설비			지분 취득비	지분취득비 (신설)
상환 지출	상환지출	예수금이자상환	작동		상환지출	예수금이자
		차입금이자				차입금이자
		국내차입금상환				민간예수금이자
예비 비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기타	작동		예비비 및기타	반환금및손실금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품목별 예산은 IMF 재정통계편람(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Manual)의 통합재정기준 통계의 세출 경제기능별 분류에도 활용된다. 이 매핑코드는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통합재정수지」에 사용되는 코드이며, 이 코드를 통해 지출을 구획한 후 일부 회계 조정을 통해 중앙정부 통합재정통계를 산출한다.

〈표 2-4〉 정부재정통계(GFS) 지출 구분 매핑표

대분류	지출목	세목
경상지출	110 인건비	01 보수, 02 기타직보수, 03 상용임금, 04 일용임금, 05 연가보상비
	210 운영비	01 일반수용비, 02 공공요금및제세, 03 피복비, 04 급식비 05 특근매식비, 06 일·숙직비, 07 임차료, 08 유류비 09 시설장비유지비, 10 학교운영비, 11 재료비, 12 복리후생비 13 시험연구비, 14 일반용역비, 15 관리용역비, 16 기타운영비
	220 여비	01 국내여비, 02 해외업무여비, 03 해외교육여비
	230 특수활동비	00 특수활동비
	240 업무추진비	01 사업추진비, 02 관서업무추진비
	250 직무수행경비	01 교수보직경비, 02 직책수행경비, 03 특정업무경비

	260 연구용역비	01 일반연구비, 02 정책연구비
	270 안보비	00 안보비
	310 보전금	01 손실보상금, 02 배상금, 03 포상금, 04 기타보전금
	320 민간이전	01 민간경상보조, 02 민간위탁사업비, 03 연금지급금, 04 보험금, 05 이차보전금, 06 구호및교정비, 09 고용부담금
	330 자치단체이전	01 자치단체경상보조, 02 자치단체교부금
	340 해외이전	01 해외경상이전, 02 국제부담금
	350 일반출연금	01 기관운영출연금, 02 사업출연금, 03 금융성기금출연금, 04 민간기금출연금
	360 연구개발 출연금	01 연구개발인건비, 02 연구개발경상경비, 03 연구개발건축비 04 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 05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430 유형자산	02 저장품매입비
	510 상환지출	03 차입금이자
	710 예비비및기타	01 예비비, 02 예비금, 03 반환금및손실금
자본지출	320 민간이전	07 민간자본보조, 08 법정민간대행사업비
	330 자치단체이전	03 자치단체자본보조, 04 자치단체대행사업비
	340 해외이전	03 해외자본이전
	410 건설보상비	00 건설보상비
	420 건설비	01 기본조사설계비, 02 실시설계비, 03 공사비, 04 감리비, 05 시설부대비
	430 유형자산	01 자산취득비
	440 무형자산	00 무형자산
	490 지분취득비	00 지분취득비
융자지출	450 융자금	02 통화금융기관융자금, 04 기타민간융자금, 05 지방자치단체융자금
	460 출자금	01 일반출자금
내부거래 지출	480 예탁금	01 일반회계예탁금, 02 특별회계예탁금, 03 기금예탁금
	510 상환지출	04 예수금원금상환, 05 예수금이자, 06 전대차관원금상환 07 전대차관이자, 08 민간예수금원금상환, 09 민간예수금이자
	610 전출금등	01 일반회계전출금, 02 특별회계전출금, 03 기금전출금 04 계정간전출금, 05 기타전출금, 06 감가상각비, 07 당기순이익
보전지출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01 한국은행예치금, 02 통화금융기관예치금, 0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05 국채매입, 06 공채매입, 07 지방채매입, 08 기타유가증권매입
	510 상환지출	01 국내차입금상환, 02 해외차입금상환

주) 국방부, 방위사업청 소관의 420, 430 목은 경상지출로 분류

3. dBrain 재정사업정보 관리현황

1)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유형분류

프로그램 예산체계, 품목별 예산체계의 공식적 분류 외에도 예산은 사업 예산체계의 최하단인 세부사업에 대해 유형분류 또는 속성 부여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 유형 분류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상의 사업 유형분류이다. 해당 지침에서는 전체 사업 중 일부를 25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다.

〈표 2-5〉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사업유형 분류

1. 인건비	14. 민간보조
2. 기본경비	15. 자치단체 보조
3. 총액인건비	16. 지자체 매칭펀드
4. 출연·보조기관 인건비 및 경상비	17. 바우처 적용대상
5. 수입대체경비	18. 지역발전특별회계
6. 연구개발(R&D)사업	19. 투자(예비타당성조사·총사업비관리대상)
7. 정보화사업	20. 총액계상
8.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21. 국고채무부담행위
9. 일자리 사업	22. 임대형 민자(BTL)
10. 행사지원 사업	23. 지분취득비
11. 통계 사업	24. 신설·변경 사회보장 사업
12.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	25. 신규사업 유사중복 여부 사전점검
13.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위 사업 유형 중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실제 구분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사업 유형은 인건비,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출연·보조기관 인건비 및 경상비, 수입대체경비, 국제개발협력 사업, 연구개발사업, 정보화사업,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 민간보조, 자치단체 보조,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

득, 지역발전특별회계, 총액계상, 임대형 민자(BTL), 지분취득비 등 17개이다. 이 중 인건비,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총액계상 사업은 각 세부사업별로 부여된 사업 코드로 구분되며, 연구개발사업, 정보화사업은 각 세부사업별 해당 여부 및 연구개발비·정보화 투자비 비중 정보를 속성으로 하고 있다. 출연·보조기관 인건비, 민간보조, 자치단체 보조, 지분취득비는 사업 비목으로 구분되는 사업이며, 국유재산관리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은 해당 회계에 속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 구분이다.

일자리사업의 경우는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별도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사지원 사업, 통계사업은 dBrain 사업관리에서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지자체 매칭펀드는 e나라도움에서 입력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사업 중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은 dBrain 내 별도의 모듈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dBrain은 세부사업에 새로운 관리코드가 부여되는 경우에만 관리가 되고 정책적 관점에서의 신규사업 관리(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신규 사업 유사중복 여부 사업 등)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다.

사업 유형 중 dBrain의 세부사업 코드로 관리하는 사업은 인건비, 기본경비 등 6개이다. 지출목으로 관리되는 유형은 세부사업 코드로 관리되는 인건비, 기본경비, ODA를 제외하고 5개이다. 사업 명칭에 꼬리표를 달아서 관리하는 경우는 연구개발, 정보화, 국제개발협력,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 등 4개이며, 별도의 항목표시나 dBrain 모듈로 관리하는 사업은 성인지, 투자비 등 2개이다.

〈표 2-6〉 dBrain 사업유형 정보 관리 현황

	관련세부 사업코드	해당 지출목코드	비고 및 주요 작성요령
인건비	100~199	100	단위사업코드 끝2자리 01~10
기본경비	200~299	200	단위사업코드 끝2자리 11~30
총액인건비	100~149 200~249	100~200	100~149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200~249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출연·보조기관 인건비 및 경상비	-	350-01 360-01 360-02	출연기관에 대해 2017년부터 분류 보조기관주) 제외
수입대체경비	650~699	-	
총액계상	700~749	-	
임대형민자(BTL)	750~799	-	BTL 정부지급금을 표시
연구개발(R&D)사업	-	360	별도 항목에서 예산비율 입력 사업명 끝에(R&D)명칭표시
정보화사업	-	-	별도 항목에서 예산비율 입력 사업명 끝에(정보화)명칭표시
국제개발협력(ODA)사업	-	320-01 340 360-02	사업명 끝에 (ODA) 명칭 표시
민간보조	-	320-01 320-07	
자치단체 보조	-	330-01 330-03	
지분취득비	-	370	
지역발전특별회계	-	-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 사업
투자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	-	2012년까지 사업명 끝에 (총사업비) 표시 이후 총사업비관리시스템으로 이관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	-	-	별도 항목에 표시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	-	-	국유재산관리기금 내 프로그램 명칭을 공용재산취득(취득 부처명)으로 기재

주) 보조기관은 국고보조금을 수지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받거나, 기금 전출금을 통해 보조받는 기관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의해서 관리되는 유형별 사업은 상대적으로 지침이 가지는 관리의 강제성 때문에 지침에 근거하지 않는 사업 유형 구분에 비해서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 유형정보는 예산의 통제 및 집행관리 측면에서 관리가 이루어져 의미있는 통제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인건비 사업의 경우에도, 인건비를 기본경비, 주요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는 편성지침 상의 조항⁵⁾으로 인해 일부 인건비 지출목 예산이 인건비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기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출연금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있으며, 기금 사업비 중에서도 인건비 지출목으로 편성된 예산도 있다. 그 결과, 같은 인건비에 대해서도 유형 분류로 구분하느냐, 지출목으로 구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2개의 기준 정보가 발생하고 있다. 인건비 편성사업 금액이 2013년까지는 인건비 지출목 총액보다 많았으나, 이후에는 역전되고 격차는 점차 벌어지는 추세에 있다.

〈표 2-7〉 성질별 분류와 사업유형별 분류 인건비 추이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산 총액	2,280,954	2,436,433	2,507,885	2,601,466	2,639,243	2,746,699	2,962,367	3,289,199
인건비	264,772	277,410	289,475	307,352	321,458	334,313	357,131	370,844
인건비 중 110인건비	255,038	267,564	279,523	297,189	311,110	334,313	357,131	370,844
기본경비	23,498	23,861	23,231	23,674	24,234	24,788	24,802	25,114
경비 중 110인건비	1,727	1,777	1,038	1,157	1,276	1,282	1,738	1,587
주요사업비	1,992,684	2,135,163	2,195,180	2,270,439	2,293,551	2,387,598	2,580,434	2,893,242
사업비 중 110인건비	9,041	9,446	10,851	11,572	12,312	12,947	15,421	18,633
기금 용액	973,122	983,244	1,050,166	1,152,567	1,224,753	1,258,761	1,325,972	1,406,552
기금운영비	7,073	33,431	6,594	6,377	6,456	6,220	6,237	6,215
경비 중 110인건비	201	171	128	125	98	187	196	313
기금인건비	7,305	7,275	7,580	8,163	8,874	9,633	10,272	10,877
110인건비	4,455	4,313	4,464	4,836	5,405	5,765	6,023	6,400
210운영비	62	78	88	99	113	0	0	0
250직무수행경비	18	18	19	19	0	-	-	-

5) 보수(110-01목) 및 기타직보수(110-02목), 연가보상비(110-05목)은 인건비로 편성하고, 상용임금(110-03목) 및 일용임금(110-04목)은 기본경비나 사업비로 편성. 다만, 대통령직속기구 등과 같은 별도 조직의 인건비를 불가피하게 관련 소관 중앙관서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로 편성 가능하다.

320만간이전	2	4	13	24	29	159	171	189
350일반출연금	2,768	2,862	2,996	3,185	3,326	3,709	4,077	4,287
기금사업비	958,744	942,538	1,035,992	1,138,027	1,209,424	1,242,907	1,309,463	1,389,461
사업비 중 110인건비	1,286	1,377	1,516	2,343	2,226	2,297	2,706	3,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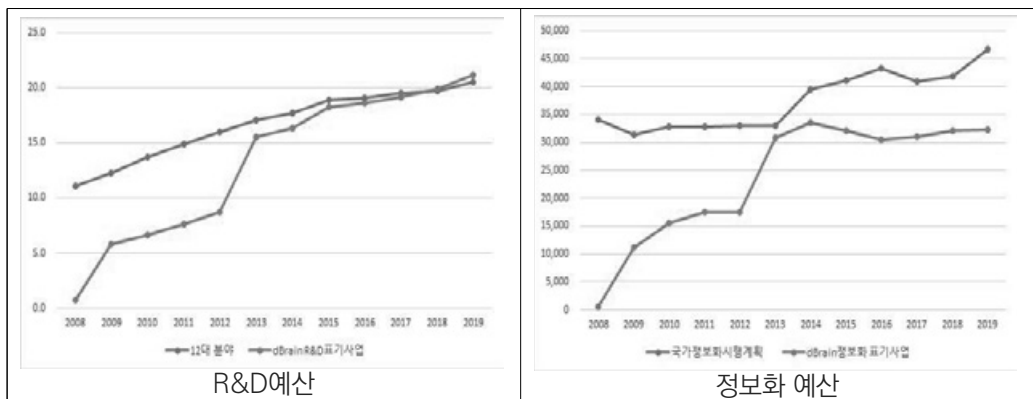
인건비편성사업 총액	272,077	284,684	297,055	315,515	330,332	343,947	367,403	381,721
인건비 지출목 총액	270,461	283,271	296,003	314,878	330,201	354,494	380,509	397,778

주) 국회확정 본예산 기준

연구개발(R&D) 사업, 정보화사업, 국제개발협력의 경우는 세부사업에서 내역사업의 비중을 예산 편성단계에서만 입력하는 dBrain의 한계로 인해, 세부사업을 기본단위로 하는 dBrain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합산금액이 타 기관에서 발표하는 공식통계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최근의 관리노력으로 정부 발표 연구개발 예산 총액과 dBrain에서 관리되는 사업의 예산 총액은 점차 일치해 가는 추세이며 2018년에는 dBrain 관리사업의 총액이 정부발표액보다 커졌다. 그러나 정보화 사업의 경우는 반대로 격차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제협력 속성도 마찬가지로, dBrain에서 외교부 출연금 지출목과 사업명의 구분 속성으로 산출한 정보와 KOICA ODA 통계 및 결산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8〉 R&D·정보화사업 정부 발표액 및 dBrain 상의 총액 추이

(단위: 조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R&D	정부발표액	12.3	13.7	14.9	16.0	17.1	17.7	18.9	19.1	19.5	19.7	20.5
	dBrain 관리사업	5.8	6.6	7.6	8.7	15.5	16.3	18.3	18.6	19.1	19.9	21.1
	일치 비율	(47.2)	(48.2)	(51.0)	(54.4)	(90.6)	(92.1)	(96.8)	(97.4)	(97.9)	(101.0)	(102.9)
정보화	정부발표액	3.1	3.3	3.3	3.3	3.3	3.9	4.1	4.3	4.1	4.2	4.7
	dBrain 관리사업	1.1	1.5	1.7	1.8	3.1	3.3	3.2	3.0	3.1	3.2	3.2
	일치 비율	(35.5)	(45.5)	(51.5)	(54.5)	(93.9)	(84.6)	(78.0)	(69.8)	(75.6)	(76.2)	(68.1)

주) 본예산 기준

그 외 관리적 성격을 가지는 유형(기본경비, 출연·보조기관 인건비 및 경상비, 성인지 작성 대상,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 취득), 제도적 의미에서만 관리가 이루어지는 유형(BTL, 총액계상) 등에 대해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정보가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⁶⁾

그 결과 실제 사업 코드로 관리되는 사업유형 중 외부 공개로 이어지는 통계는 민간보조, 지자체 보조, 지역발전특별회계 총액, 총사업비 정도이다. 이 중 민간보조, 지자체 보조는 사실상 비목으로 분류하는 통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역시 회계코드 분류인 만큼 특정 사업 유형에 대해 코드화해서 관리하는 속성분류와는 성격이 다르다. 총사업비 역시 dBrain을 통한 사업속성 분류 관리를 거치지 않고 별도의 총사업비 관리시스템을 통해 현황 정보를 추출하고 있다.

2) dBrain 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정보 관리

dBrain에는 법률과 지침이 정하는 공식 분류체계와는 세부사업별로 공통색인을 부여하고 사업목적 등 각종 텍스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사업관리시스템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사업에 대한 색인은 선택기입 형태로 입

6) 이들 사업은 그리고 지침에서 정한 세부사업 코드 범주를 벗어나 편성된 사업, 코드 범주 내에서도 지침에서 정한 유형이 아닌 사업이 존재한다.

력이 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각 세부사업별로 상세정보와 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그림 2-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업관리 개요

세부사업 상세정보 등록 및 조회

세부사업의 개요, 부가정보, 관리정보 등을 압력 분야 (16), 부문 (69), 프로그램 (799)

세부사업 조회

세부사업의 상세정보와 집행 현황을 모니터링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1	국립중앙도서관	2,194,000	2,194,000	0
2	국립중앙도서관	2,194,000	2,194,000	0
3	국립중앙도서관	2,194,000	2,194,000	0
4	국립중앙도서관	2,194,000	2,194,000	0
5	국립중앙도서관	2,194,000	2,194,000	0
6	국립중앙도서관	2,194,000	2,194,000	0
7	국립중앙도서관	2,194,000	2,194,000	0
8	국립중앙도서관	2,194,000	2,194,000	0
9	국립중앙도서관	2,194,000	2,194,000	0
10	국립중앙도서관	2,194,000	2,194,000	0
11	국립중앙도서관	2,194,000	2,194,000	0
12	국립중앙도서관	2,194,000	2,194,000	0
13	국립중앙도서관	2,194,000	2,194,000	0
14	국립중앙도서관	2,194,000	2,194,000	0
15	국립중앙도서관	2,194,000	2,194,000	0
16	국립중앙도서관	2,194,000	2,194,000	0

단위사업 : 3,084개
세부사업 : 7,540개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업관리시스템의 속성으로 관리되는 정보 중 대표적인 정보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의무·재량지출 구분 속성이다. 즉 의무지출은 각 사업별로 부여된 코드에 따라 합산된다. 의무지출의 하위인 지방이전재원, 복지분야, 이자지출, 기타 등의 속성은 프로그램 정보, 분야정보, 성질별 분류 정보 등을 결합해 산출한다. 가령 지방이전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부세 항목의 결합,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16대 분야 구분인 복지 분야와 의무지출 코드 결합, 이자지출은 성질별 지출 중 상환지출로 구분한다. 이 3개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의무지출(국제기구 부담금) 등은 기타 의무지출로 구분한다.

〈표 2-9〉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조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의무지출	151.7 (46.6)	158.4 (46.3)	167.2 (47.0)	172.8 (46.0)	182.6 (47.3)	197.0 (49.2)	217.0 (50.6)	239.3 (51.0)
지방이전재원	71.5 (22.0)	76.6 (22.4)	76.6 (21.5)	74.3 (19.8)	77.4 (20.0)	87.6 (21.9)	99.4 (23.2)	111.5 (23.8)
복지 분야 의무지출	58.3 (17.9)	62.2 (18.2)	69.8 (19.6)	77.5 (20.6)	83.3 (21.6)	87.2 (21.8)	95.7 (22.3)	106.7 (22.7)
이자지출	17.3 (5.3)	15.5 (4.5)	16.8 (4.7)	16.5 (4.4)	16.7 (4.3)	16.1 (4.0)	16.0 (3.7)	15.9 (3.4)
기타 의무지출	4.6 (1.4)	4.1 (1.2)	4.1 (1.1)	4.5 (1.2)	5.2 (1.4)	6.1 (1.5)	5.8 (1.4)	5.2 (1.1)
재량지출	173.7 (53.4)	183.6 (53.7)	188.6 (53.0)	202.6 (54.0)	203.8 (52.7)	203.6 (50.8)	211.9 (49.4)	230.3 (49.0)
합계	325.4 (100.0)	342.0 (100.0)	355.8 (100.0)	375.4 (100.0)	386.4 (100.0)	400.5 (100.0)	428.8 (100.0)	469.6 (100.0)

주)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그러나 의무지출 여부를 제외한 정보들이 법률이나 지침의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보의 신뢰성이 높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먼저 해당 속성 카테고리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속성정보가 있다. 대표적인 속성은 일자리 관련 속성정보로, dBrain에서 관리하는 속성과 지침, 일모아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속성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표 2-10〉 dBrain 일자리 관련 속성정보 관리현황

속성 명	속성 내용
사회서비스 여부	사회서비스 여부
성별	남성위주(여성 20% 이하), 남성특화(여성 0%) 여성위주(여성 80% 이상), 여성특화(여성 100%) 일반(여성 50% 수준)
연령	고령층, 장애인, 중장년층, 청년층
일자리별	직접고용, 교육및훈련, 고용촉진, 간접유발, 일자리지키기
지역별	수도권, 지역

〈표 2-11〉 일자리사업 정부 지침 상의 사업 유형 현황

	지침		통합공고	
	2017	2018	2017	2018
직접 일자리 사업	소관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유형(인턴/공공업무지원/ 경기대응/사회서비스/ 사회봉사복지) 대상(노인/중장년/청년/ 기타) 수행방식(민간/지자체보조, 출연·위탁, 직접)	소관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참여목표비율 (취약계층/장년층/청년층) 사업유형(공공업무지원/ 소득보조/인턴/사회서비스/ 사회봉사복지)	지원요건 수행기관 예산 계획인원 사업내용 모집기간	지원요건 수행기관 계획인원 사업내용 모집기간 모집지역 급여수준
기타 일자리 사업	소관,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참여자정보 관리대상 여부	소관,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다음은 정보 미기재이다. dBrain 사업정보시스템의 각 항목 입력 역시 강제사항이 아니며, 별도의 검증 체계 역시 없는 실정이다. 가령 사업관리시스템에 등재된 9,945개 세부사업 중 사업 세부정보를 사용자가 직접 기입하게 되어있는 사업정보의 경우는 92%에 달하는 9,172개 사업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4대강 살리기, 녹색성장, 다문화 등을 체크식으로 기입하게 되어 있는 정책 분류 정보 역시 2.1%에 불과한 213개 사업만 기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며, 정보가 기입된 사업들 역시 정합성 체크가 불가능하다.

〈표 2-12〉 dBrain 정책구분 별 세부사업 속성정보 현황

구분	사업수	구분	사업수
4대강살리기	213	무상급식	213
아니오	211	아니오	213
예	2	예	
글로벌역량강화	213	미래신성장동력	213
아니오	195	아니오	193
예	18	예	20
녹색성장	213	복지분야	213
아니오	150	아니오	173
예	63	예	40
다문화	213	재정집행점검대상	213
아니오	208	아니오	118
예	5	예	95
저출산고령화	213		
아니오	206		
예	7		

주) 2017년 기준

세 번째는 사업정보 변경에 따른 이력관리 부재이다. dBrain에 탑재된 관련 속성정보는 재정사업 이력관리 속성이 있다. 재정사업 이력관리는 dBrain 개통에 맞추어 2008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지침에 포함된 것으로 사업내용 등 기본정보와 아울러 예산편성 관련 주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력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력관리의 목적은 경험에 따른 편성관행에서 벗어나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세부사업의 이력 정보를 dBrain의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표 2-13〉 재정사업 이력관리제도 개요

기본정보	추가할 정보*
사업개요 ▪ 사업목적·내용 ▪ 사업기간 ▪ 사업수행주체 등	▪ 국회 예산안 예결위 심사보고서 지적사항 및 부내의견 ▪ 국회 결산시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감사청구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 예산지원 부대조건(지원기간, 보조율 등) ▪ 시민단체·언론 등 주요 지적사항
부가정보 ▪ 총사업비 ▪ 예비타당성 조사 ▪ 예산편성 유형 등	
연차별투자계획	

* '04년도부터 생성된 이력사항을 추가

자료: 200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지침

그러나 2009년 지침 이후 본문에서 이력관리를 위한 내용이 더 이상 포함되지 않고 예산사업 설명자료 작성양식의 참고문으로 첨부되고 있어 사실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입력·관리 주체를 사업설명자료 작성 주체인 세부사업 담당자가 아닌 부처의 단위사업 관리 담당자로 지정하여 속성정보 관리자와 작성자가 불일치하는 문제도 있었다. 그리고 현행 사업설명자료 작성 지침에는 사업설명자료를 dBrain 또는 기획재정부 양식을 사용해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시스템을 통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즉 이력관리 제도는 있으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DB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

4. 문제점

1)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경직성

재정사업정보 관리는 재정의 효과적 집행과 책임성 강화, 정보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등을 명시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품목별 예산제도는 비록 예산을 구조화하는 기법은 약간 상이하나 재정의 효율성, 책임성을 강조한다는 데에서 공통점이 있다(임성일 외, 2013; 김성주, 윤태섭, 2017).

현재의 프로그램 예산체계 하에서 세부사업은 예산 분류는 물론 각목 명세서와 사업설명자료 작성의 기본단위로써, 조직별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단위사업과 프로그램이 분야와 부문의 하위라기보다는 세부사업의 묶음에 불과한, 상향식의 예산 구조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정책목표와 하부 세부사업 간의 인과관계가 부족한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서로 다른 부처의 사업이라고 해도 유사한 목표를 가지거나 정책 목표 집단을 가지는 사업들을 공통 키워드로 묶어주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예산을 사업 기준으로 분류할 수 없는데는 현행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품목별 예산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dBrain 사업관리시스템의 한계이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속성정보체계는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속성들 간에 규칙이 없고 다양한 수준의 정보가 혼재되어있는 상황이다.

2) 경비 식별 및 지출 통제 위주의 사업구분

세부사업의 속성부여 및 속성에 따른 사업분류가 되지 않는 1차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에서 부처별로 편성되는 세부사업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성격에서 비롯된다. 세부사업은 원래 「국가재정법」 상 예산 과목 구분의 세세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법적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 행정과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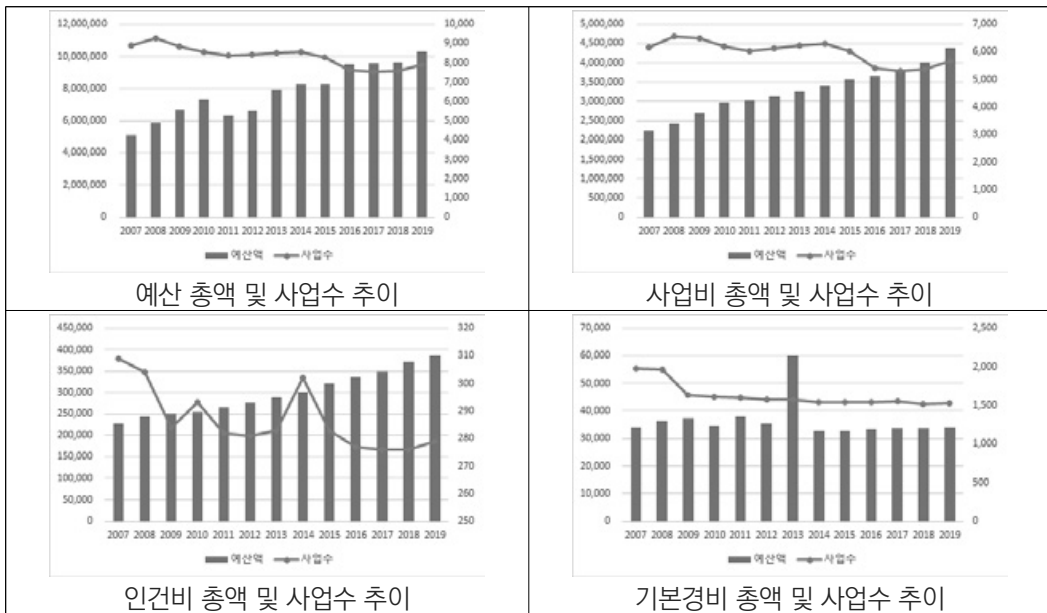
세부사업은 각 부처별로 개별 프로그램이 확정되면 인건비, 경비 등 간접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담당 조직별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재정사업의 단위이다. 그리고 여러 세부사업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묶음으로서, 성과관리의 기본 단위가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의 세부사업 관리는 인건비와 경비는 금액 자체를 통제하고, 사업비의 경우는 각 부처 간의 중복을 없애면서 신규사업 편성을 통한 사업수 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추세는 사업수 감소와 사업당 예산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의무지출의 경우 사업당 예산 증가율(2011년 이후 연평균 6.4%)이 재량지출(4.4%)보다 높지만, 재량지출은 그 사업수가 대폭 감소했다.⁷⁾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려면 신규사업을 편성하여야 하나, 세부사업의 숫자를 통제된 결과 신규사업은 세부사업의 내역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그 결과 세부사업이 복수의 유사한 사업들을 내역으로 가지게 되는, 단위사업과 대단히 유사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단위사업의 성격이 대단히 모호해지게 되었다.⁸⁾

7) 의무지출 사업 수는 2011년 이후 170~180개 선을 유지하고 있다. 내부거래·보전지출을 제외한 사업비 사업수의 감소는 주로 재량지출에서 일어나고 있다.

8) 이러한 추세는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기본취지인 성과관리 자체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12~2019년 간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수가 8,418개에서 7,892개로 6.2% 감소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수는 641개에서 579개로, 9.7%가 감소해 비율로는 세부사업보다 더 크게 감소했다. 이처럼 프로그램의 수마저 줄어드는 이유는 정부 부처의 성과관리 목표 자체가 단순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관리적인 이유인지는 분석을 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단 프로그램 목표는 부처가 추구해야 할 전략목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수와 프로그램 수 감소는 관리과제를 단순화하고 집중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지만, 단순화된 전략목표와 세부, 내역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와의 괴리가 더 커질 수 있다.

〈표 2-14〉 예산 총액 및 사업유형별 세부사업수 추이(본예산 총계기준)

(단위: 억원, 개, %)



		2007	2013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인건비	예산액	227,705	288,934	335,023	348,720	372,378	386,963	4.5
	사업수	308	284	277	277	277	279	-0.8
	사업당예산	739	1,017	1,209	1,259	1,344	1,387	5.4
기본경비 /경상운 영비	예산액	34,061	60,184	33,314	33,698	33,717	34,083	0.0
	사업수	1,972	1,580	1,551	1,548	1,517	1,526	-2.1
	사업당예산	17	38	21	22	22	22	2.2
사업비	예산액	2,233,502	3,252,112	3,648,118	3,768,313	4,014,572	4,401,460	5.8
	사업수	6,107	6,173	5,326	5,259	5,301	5,576	-0.7
	사업당예산	366	527	685	717	757	789	6.6
내부보전 거래	예산액	2,599,896	4,358,110	5,490,370	5,398,521	5,214,504	5,506,967	6.5
	사업수	448	432	427	416	416	422	-0.6
	사업당예산	5,803	10,088	12,858	12,977	12,535	13,050	7.1
합계	예산액	5,095,164	7,959,340	9,506,826	9,549,252	9,635,170	10,329,474	6.1
	사업수	8,835	8,469	7,581	7,500	7,511	7,803	-1.0
	사업당예산	577	940	1,254	1,273	1,283	1,324	7.1

주) 사업수는 국회 확정예산에서 예산을 배정을 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계산했으며, 해당연도 전체 등록된 사업수와는 다를 수 있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그 결과 현재 세부사업은 사업의 성격별로, 즉 규모나 전달 방식, 수혜자 별로 구분되지 못하고 예산 관리 기능 이상의 정보생산 단위가 되지 못하고 있다. 즉 다. 개별 세부사업에 출연, 보조, 위탁 금액이 구분없이 편성되고 있으며, 자본지출과 경상지출도 하나의 사업에 함께 편성되고 있다. 사업 명칭으로 수혜자를 선택한 사업은 많지만, 이 사업이 직접전달사업인지, 사업 체계를 관리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구분도 명확하지 못하다. 즉 현 체계에서는 각각의 세부사업에 대해 대표속성을 중첩되지 않게 부여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하나의 사업이 불가피하게 여러 대표속성을 가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3) 속성 부여 미비 및 관리체계 부재

세부사업은 위에서 언급했듯 부처의 자율적 편성과 관리를 위한 재정의 한 단위이다. 정부의 예산 편성과정에서 세부사업 단위에서 의미있는 정보가 산출되려면 사업수를 줄이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사업정보가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기획재정부가 통보하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상의 예산사업 분류는 해당 분류가 세부사업인지 내역사업인지 구분이 되고 있지 않으며, 사업별 편성지침이 각각의 중첩에 대한 구분 없이 나열되고 있다. 재정사업의 속성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이력관리 제도는 전술했듯이 200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지침의 프로그램 예산 작성 지침에 포함되어 시작되었으나, 2019년 현재는 지침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물론 세부사업의 사업정보를 관리하려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업관리시스템은 사업의 속성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모듈형식으로 만들어져 탑재되어 있으나, 최초 설치 이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업관리시스템의 데이터 속성들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없이 시스템 상으로 입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 내용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내용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사실 속성 정보 체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사업 정보 입력이 표준화된 지침 등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마찬가지로 처음 입력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업데이

트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사업관리시스템은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여기에는 각 부처에서 사업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고려하지 못했던 과거의 한계가 있었다. 사업관리시스템의 관리 속성은 현재 각 부처에서 공개하는 세부사업 설명자료와는 차이가 있다. 즉 이미 예산안 편성, 국회 심의 과정에 사용하고 대국민 공개하는 별도의 세부사업 설명자료가 있고, 해당 자료를 별도의 서식에 의해 한글 파일로 작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 서식과는 별개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사업관리시스템은 사실상 별도의 행정력을 요구하면서도 굳이 작성과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하는 구속력이 없었다.

각 세부사업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는 근시일 내에는 극복이 불가능한 문제이다. 뒤에서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겠지만, 세부사업의 편성 방식 개선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므로 중장기 과제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현행 체계에서 세부사업을 속성으로 관리하려면 지침, 요구되는 서식, 요구되는 행정력과 적절한 관리체계 등에 대한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관리하는 목적이 예산 편성과 심의에 있는지, 정보 공개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 한다.

5. 개선 방향

예산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각종 재정통계 수요에 대응해 빠르게 재정정보를 생산하려면 각각의 세부사업에 대한 공통 분류체계에 기반한 색인 즉 공통 속성을 부여해 사업 분류를 체계화하고 속성 분류에 따라 사업을 검색하거나 관련 정보를 산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정사업들을 요약해줄 수 있는 핵심 키워드로서 속성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들 속성 정보를 분류할 수 있는 계층화된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일정한 체계가 없이 관리되고 있는 속성들을 체계에 따라 분류하여 세부사업에 부여해야 한다. 현재는 의무지출, 일자리사업 구분 등의 정책구분, 출자·출연·보조 등 사업추진방식 속성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의무지출 여부는 사업의 목표나 집행방식과 상관없는 일반적 범주의 공통 사업구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에 의한 사업 구분, 출자·출연·보조의 경우는 추진방식에 따른 구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의 속성을 재분류하는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수혜자 중심의 속성정보 관리를 위해서는 각 사업별로 부처에서 공개하는 사업설명자료 상의 수혜자 정보와 정책 목표, 추진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구조화하여 현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속성 분류체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책사업을 묶는 기준은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과 같은 정책의 목적을 기준으로 할 수도, 중소기업, 노인 등과 같이 정책의 주요 대상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특히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속성화하여 보완해야, 각 수혜자 별로 사업을 묶거나 수혜자 별 사업을 추진방식별로 구조화하는 등 속성정보를 활용한 사업군 구분을 다양화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구분이 가능하면 이 사업군 정보는 예산 편성 및 심의에 사용될 수도 있고, 대국민 정책자료 생산에도 사용

될 수 있어 재정정보 활용가치가 극대화된다.

재정사업에 대한 속성 부여와 관리는, 각 부처 단위로 편성되는 재정사업들을 정책 목적, 수혜자 중심으로 재정렬하여 최상단의 정책목표, 국민의 관심사와 프로그램 예산체계 최 하단에 위치한 품목별 사업예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부처별 자율적 예산관리를 보완해주는 한편 최고 위층의 정책관리를 더 용이하게 해주며, 정책사업군 구획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적시에 유용한 정보를 산출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별로 속성을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일관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사업별 관리자 지정, 일정관리, 그리고 입력 정보의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점담조직 지정 등도 고려해야 한다.

III 해외 사례

본 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인 미국, 영국, 캐나다의 재정정보시스템과 사업 정보, 속성정보 현황을 비교하도록 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는 재정을 비롯한 정부 업무의 전산화에 있어 선진국으로 분류되며,⁹⁾ 정부의 정보공개에 있어서도 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다.¹⁰⁾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재정정보와 통계 생산을 위해 어떠한 체계와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 사례의 중점 시사점을 우리나라에 적용, 사업정보관리 개선 및 관리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들 국가들은 재정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재정정보를 가공하여 정책결정자,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재정정보시스템에 저장된, 가독성이 낮은 자료를 별도의 분류체계를 통해 요약하여 제시하려 하는 한편, 예산 편성 단계에 있어서 특정 예산사업을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 예산 속성 분류(character classification) 또는 재정사업별 색인 속성(subject index) 기반 분류를 사용하거나, 전체 예산에서 별도의 정책구획 설정(policy ring-fencing)을 하여 정보를 생산,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속성 정보를 코드화하여 해당 속성을 가지는 사업들을 별도로 분류해 사용하거나, 통계 제공 시기를 앞당기고 다양한 통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출 속성 등을 시스템에 탑재해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미국을 시작으로 정보시스템에 적재되는, 가독성이 가장 낮은 최하단부의 지출 건별 자료를 분류하기 위한 개별 건별자료에도 공통속성을 부여하여 정보공개에 활용하고 있다.¹¹⁾

9) UN에서 격년으로 실시하는 전자정부 평가에서 영국은 4위, 미국은 11위, 캐나다는 22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위이다.

10) 국제 비영리기구 W W Foundation에서 실시한 오픈데이터 바로미터 2018년 평가에서 캐나다는 1위, 영국은 2위, 미국은 9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5위이다. 국제 비영리기구 IBP의 열린예산 지표(OBI: Open Budget Index)평가에서 미국은 8위, 영국은 10위, 캐나다는 16위이며, 한국은 39위이다.

11) 개별 건별 자료의 공개에 대하여는 박정수(2018)의 연구를 참고할 것.

국가별 특징을 요약하면, 미국은 의사결정지원용 예산편성시스템과 대국민 공개용 사업정보시스템이 별도로 구축하고 있으며, 속성 정보는 표준화, 코드화되어 시스템 간 자료 통합이 용이하게 설계되어 있다. 캐나다는 재정정보시스템 표준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는 성과정보를 중앙에서 취합하고 개별 사업정보는 부처에서 자체 분류체계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은 예산 편성, 집행, 결산 통계의 산출관점에서 시스템과 속성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그리고 3개국 모두 단일화된 사업정보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1. 미국의 재정사업정보 관리체계

1) 개요

미국은 재정업무의 전산화를 오래 전부터 시행해 왔으며, 재정사업과 예산 전반에 대한 코드 부여 및 관리가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모든 연방 정부 업무의 전자화 및 전산화는 전자정부법(e-Government Act)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의 회기에 대한 관리는 예산책임법(Budget and Accounting Act), 재정사업에 대한 코드 부여와 사업 정보 관리는 연방 프로그램정보법(Federal Program Information Act)에 근거를 하고 있다.

미국의 재정 관리는 크게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예산 관리와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의 재무 출납 업무, 관리예산처와 조달청(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의 공동 재정사업 정보 관리와 각 부처의 집행정보 관리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직접적으로 사업분류 및 관리와 관련된 시스템은 관리예산처의 MAX A-11 Data Entry(이하 MAX 시스템), 조달청의 SAMS¹²⁾의 하위 구성요소(sub-component)인 재정사업 정

12) 차세대 SAM (State Award Management System)은 조달 사업 관련 시스템 10개를 연결하는 차세대 사업이며, CFDA는 사업정보 관리를 위한 SAM의 하부 시스템으로 2018년부터 통합되었다.

보편람(Catalogue of Federal Domestic Assistance 또는 Assistance Listing. 이하 CFDA) 작성시스템의 사업정보 관리이다.

〈표 3-1〉 미국의 주요 재정정보시스템 및 주요 관리대상 정보 현황

시스템 명	MAX A-11 Data Entry	CARS/GTAS ^{주)}	SAM Assistance Listings
주무부처	관리예산처	재무부	조달청
주요 목적	예산편성 및 의회제출	국고 출납	사업 정보 관리
주요 관리 대상 전자 정보	부처, 실/국별 코드 프로그램 별 코드 프로그램별 정보 속성분류 정보	부처별 코드 계정 코드	각 사업별 코드 사업별 색인 정보 수혜자 속성 정보
근거 지침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OMB Circular A-11)	재무회계편람(Treasury Financial Manual) 재무보고 지침 (OMB Circular A-136)	재정사업정보 수집지침 (OMB Circular A-89)

주) GTAS는 Government Treasury Account Symbol Adjusted Trial Balance System의 약자로 부처의 재정집행에 대한 재무보고를 월별 스케줄에 따라 입력하는 시스템이며, CARS는 Central Accounting Reporting System의 약자로 재무 원장(ledger), 현금 및 유동자산 관리 등 재무회계편람에 규정된 재무 회계 활동에 사용된다. 정부 기관들은 범정부 회계(Government-wide Accounting, GW)에 의해 CARS와 GTAS를 이용해 재무 활동과 보고를 수행한다.

MAX시스템은 주로 의회에 제출하는 대통령 예산안 작성과 관련된 내용을 관리하고 있으며, CFDA 재정사업 정보 관리는 주로 연방보조사업¹³⁾ 정보의 대국민 공개를 위한 것이다. 이 정보들은 예산 편성, 집행 정보와 결합되어 연방 사업정보 검색, 수혜자 정보 검색 등 재정정보 공개에 활용된다.

2) 예산편성시스템의 재정정보 체계

관리예산처(OMB)의 MAX A-11 Data Entry(이하 MAX)는 미 연방정부 예산안 준비 및 집행지침(Circular A-11)에 따라 의회에 송부하는 대통령 예

13) 연방보조사업은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과 같은 재정보조 뿐만 아니라 용자사업, 학자금, 주택담보대출, 보험, 연방 소유 자산 및 시설 제공, 컨설팅, 통계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산안을 작성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예산안 준비에 있어 관리예산처와 중앙관서 간 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2007년 개통했다. MAX시스템은 보고서 자동 생성, 사업관리, 자료검색, 분석, 서베이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용자 요구에 따라 개선되어오고 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표 3-2〉 세출 예산의 기능별 분류와 코드

050 NATIONAL DEFENSE	570 MEDICARE
051 Department of Defense-Military	571 Medicare
053 Atomic energy defense activities	600 INCOME SECURITY
054 Defense-related activities	601 General retirement and disability insurance(excluding social security)
150 INTERNATIONAL AFFAIRS	602 Federal employee retirement and disability
151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assistance	603 Unemployment compensation
152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604 Housing assistance
153 Conduct of foreign affairs	605 Food and nutrition assistance
154 Foreign information and exchange activities	609 Other income security
155 International financial programs	650 SOCIAL SECURITY
250 GENERAL SCIENCE, SPACE, AND TECHNOLOGY	651 Social security
251 General science and basic research	700 VETERANS BENEFITS AND SERVICES
252 Space flight, research, and supporting activities	701 Income security for veterans
270 ENERGY	702 Veterans education, training, and rehabilitation
271 Energy supply	703 Hospital and medical care for veterans
272 Energy conservation	704 Veterans housing
274 Emergency energy preparedness	705 Other veterans benefits and services
276 Energy information, policy, and regulation	750 ADMINISTRATION OF JUSTICE
300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751 Federal law enforcement activities
301 Water resources	752 Federal litigative and judicial activities
302 Conservation and land management	753 Federal correctional activities
303 Recreational resources	754 Criminal justice assistance

304 Pollution control and abatement	800 GENERAL GOVERNMENT
306 Other natural resources	801 Legislative functions
350 AGRICULTURE	802 Executive direction and management
351 Farm income stabilization	803 Central fiscal operations
352 Agricultural research and services	804 General property and records management
370 COMMERCE AND HOUSING CREDIT	805 Central personnel management
371 Mortgage credit	806 General purpose fiscal assistance
372 Postal Service	808 Other general government
373 Deposit insurance	809 Deductions for offsetting receipts
376 Other advancement of commerce	900 NET INTEREST
400 TRANSPORTATION	901 Interest on Treasury debt securities (gross)
401 Ground transportation	902 Interest received by on-budget trust funds
402 Air transportation	903 Interest received by off-budget trust funds
403 Water transportation	908 Other interest
407 Other transportation	909 Other investment income
450 COMMUNITY AND REGIONAL DEVELOPMENT	920 ALLOWANCES
451 Community development	921-929 Allowances [Assigned by OMB]
452 Area and regional development	950 UNDISTRIBUTED OFFSETTING RECEIPTS
453 Disaster relief and insurance	951 Employer share, employee retirement (on-budget)
500 EDUCATION, TRAINING, EMPLOYMENT, AND SOCIAL SERVICES	952 Employer share, employee retirement (off-budget)
501 Elementary, secondary, and vocational education	953 Rents and royalties on the Outer Continental Shelf
502 Higher education	954 Sale of major assets
503 Research and general education aids	959 Other undistributed offsetting receipts
504 Training and employment	MULTIPLE FUNCTIONS
505 Other labor services	999 Multifunction account [used for accounts that involve two or more major functions]
506 Social services	
550 HEALTH	
551 Health care services	
552 Health research and training	
554 Consumer 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자료: OMB, Circular A-11

MAX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식별 코드(identification code)를 통해 가능하다. 즉 각 예산액 입력을 위한 계좌정보는 설정된 여러 코드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접근할 수 있다. 해당 코드 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 3-3〉 미국 MAX 시스템의 주요 식별 코드

구분	정보 성격
관리예산처 기관별 코드	관리예산처에서 부여하는 3자리 기관별 코드
관리예산처 실국별 코드	관리예산처에서 부여하는 2자리 실국별 코드 수입 등 실국별 관리가 안되는 경우 00 표시
재무부 기관별 코드	재무부에서 부여하는 2자리 기관별 코드
GGAC 기관코드	재무부에서 세출예산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3자리 기관별 코드
계정 정보 코드 (account sym db)	수입 계정은 6자리, 지출계정은 4자리로 부여
전환코드(transim ttal code)	입력 시점 등 지정 스케줄에 따라 한자리 코드를 부여
기금코드(fund code)	기금/계정의 성격에 따라 부여되며 account sym db에 대응
부문 코드	분야-부문 정보로, 3자리 코드 부여

자료: OMB, Circular A-11

기금(fund types) 정보와 계정(accounts) 정보는 개별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활동, 프로그램과 연관된다. 예산 편성단계에서 하나의 계정은 급여 및 경비(salaries and expenses) 등 하나의 명칭과 대응되도록 하고 있다. 재무부에서 부여하는 코드(account symbol, Treasury Bond Code)와 관리 예산처에서 부여하는 기금 코드(Fund Code)는 아래와 같이 대응된다.

〈표 3-4〉 미국 MAX 시스템의 주요 회계 구분별 코드 부여

Account sym db	Type of fund	OMB Fund Code	Treasury Fund Code
0000-3899	General fund	1	EG
3800-3899	Any receipt accounts here are clearing accounts		
5000-5999	Special fund	2	ES
4000-4499	Public enterprise revolving fund	3	EP
4500-4999	Intra-governmental revolving fund	4	ER
3900-3999	Management fund	4	
3900-3959	Consolidated working fund		EC
3960-3999	Management fund		EM
8000-8399 and 8500-8999	Trust non-revolving fund	7	ET
8400-8499	Trust revolving fund	8	TR
6000-6999	Deposit fund	N/A	
90xx	Assigned by OMB to designate allowances		
991x-998x	Assigned by OMB for certain merged accounts		

자료: OMB, Circular A-11

전환정보(transmittal code)는 입력이 요청되는 시기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코드로 1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보는 아래와 같다. 입력되는 정보는 통상적인 회기에 따라 입력되는가, PAYGO와 관련이 있는가 등에 따른 정보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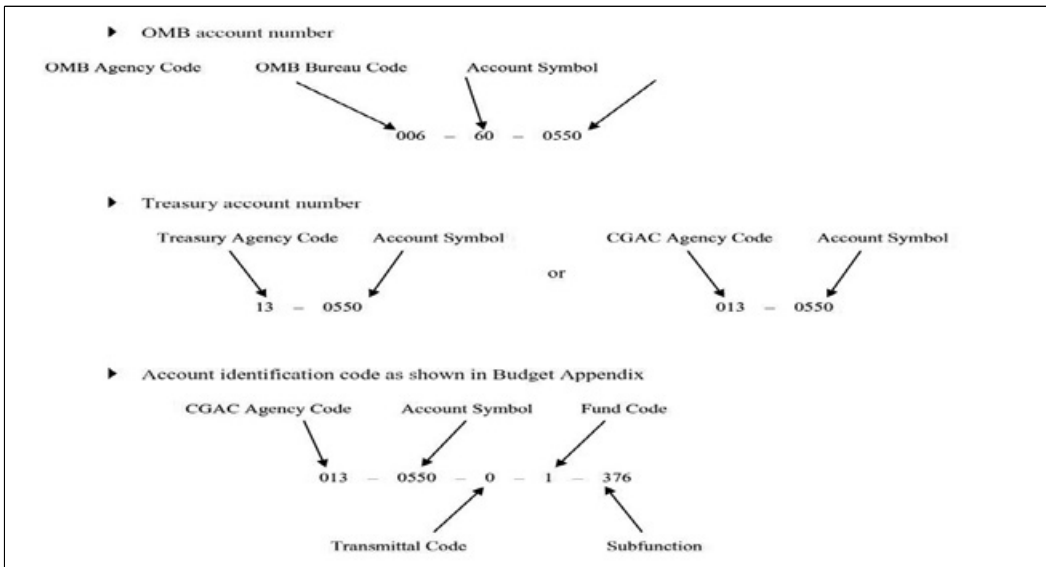
〈표 3-5〉 미국 MAX 시스템의 전환정보 코드

Trans- mittal Code	Title and description
0	Regular budget schedules.
1	Supplemental proposal. Use only for requesting supplemental CY amounts.
2	Legislative proposal, not subject to PAYGO. Use for the effects of proposals requiring authorizing legislation where those effects are not subject to PAYGO. These include both discretionary proposals that are contingent on the enactment of authorizing legislation, as well as mandatory and revenue proposals that do not have a PAYGO impact, which are sometimes referred to as third scorecard (see section 20.3). Do not use for routine reauthorization of ongoing programs.
3	Appropriations language to be transmitted later. Use only with prior approval of OMB where language for a significant policy proposal cannot be transmitted in the budget.
4	Legislative proposal, subject to PAYGO. Use for the effects of proposals requiring authorizing legislation that are subject to PAYGO. Do not use for routine reauthorization of ongoing discretionary programs or for an extension of a mandatory program assumed to be continued in the baseline (transmittal 0).
5	Rescission proposal pursuant to Title 10 of the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Use only for requesting rescission of CY amounts.
7	Reserved for OMB use.
8	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 Use only for amounts requested for BY through BY+9.
9	Reserved for OMB use.

자료: OMB, Circular A-11

위 코드들을 조합하여, 각 프로그램 별 계정 코드는 아래 3가지가 부여된다.

〈그림 3-1〉 미국 MAX 시스템의 계정 코드 부여



자료: OMB, Circular A-11

즉 예산편성 시 각 계정 코드는 관리예산처 코드 9자리, 재무부 5자리 또는 7자리 코드, 예산 부속서류 10자리가 부여된다.

다음은 프로그램 정보이다. 프로그램에 대해 부여되는 코드는 각 기금·계정 내에서 중복되지 않게 부여된다. 프로그램 코드는 용자 관련 계정에 대해 상세한 코드가 부여된다.

〈표 3-6〉 미국 프로그램 코드 부여

구분	해당코드
Obligations by program activity	0001-0900
Direct obligations	0001-0799
Credit-specific obligations	07xx
Direct loan subsidy	0701
Loan guarantee subsidy	0702
Subsidy for modifications of direct loans	0703
Subsidy for modifications of loan guarantees	0704
Reestimates of direct loan subsidy	0705
Interest of reestimates on guarantee subsidy	0706
Reestimates of loan guarantee subsidy	0707
Interest on reestimates on loan guarantee subsidy	0708
Administrative expenses	0709
Direct loan obligations	0710
Default claim payment on principal	0711
Default claim payment on interest	0712
Payment of interest to treasury	0713
Other	0715-0739
Negative subsidy obligations	0740
Modification savings	0741
Downward reestimates paid to receipt accounts	0742
Interest on downward reestimates	0743
Adjusting payments to liquidating accounts	0744
Reimbursable obligations	0801-0899
Total new obligations	0900-0911

자료: OMB, Circular A-11

의무지출과 재량지출과 관련된 정보는 MAX시스템 데이터 입력을 통해 관리된다. 이 데이터는 재량지출 상한, 전년도부터 +9회계연도까지의 지출 추계를 위한 목적으로 입력된다. 입력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3-7〉 미국 MAX데이터 시스템의 의무·재량지출 구분 속성 정보

구분	소관	분류		상세
Discretionary	Appropriations Committee	Discretionary	Highway	재량지출 상한의 고속도로 카테고리에 속하는 경우
			Mass Transit	재량지출 상한의 대중교통 카테고리에 속하는 경우
			Emergency Pursuant to 2011 BCA	긴급 카테고리에 속하는 재량지출
			Discretionary Change in a Mandatory Program	해당 세출법(CHIMPs)에 의해 지출승인을 받은 의무지출의 증가분 *해당 지출승인분은 의무지출 카테고리에도 반영이 되어야 함
			-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재량 지출
		Non-Emergency Supplemental Funding		비 응급 카테고리이면서 법(supplemental act)에서 지출이 결정되고 관리예산처 승인을 받은 경우
		OCO/GW O (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Global war on terrorism)		BBEDCD 251(b)(2)(A)의 안보 관련 규정에 의한 재량 지출
		Program Integrity Funding		사회보장청(HHS)의 Continuing Disability Review에 의해 지출이 승인되고 보건복지부(HHS) Health Care Fraud and Abuse Control 계정에 속한 프로그램
		Disaster Relief Funding		의회의 재난구호 지정을 받은 경우
Mandatory	Appropriations Committee	Emergency		긴급 지출(emergency funding)에 포함
		-		긴급 지출이 아닌 경우
	Authorizing Committee	Emergency		긴급 지출(emergency funding)에 포함 시
		Sequestration Pop-up		전년도 세출 삭감된 경우
		Account-specific Sequestration Policy		특정 세출의 삭감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
		-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Net interest		Third Scorecard		의회의 변경 제안으로 인한 변동분
		-		기능별 분류에 포함되는 이자지출
Governmental Receipts	Authorizing Committee	-		정부의 세입

자료: OMB, Circular A-11

다음은 위에서 설명한 세출예산 과목체계를 보충하는 속성분류(character classification)이다. 이 속성분류 체계 역시 A-11에 의해 관리된다. 사업 속성 분류는 세출예산 과목체계가 다루지 못하는 자본지출과 교육훈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표 3-8〉 미국 MAX시스템의 사업속성 분류 코드 부여

4자리 접두 코드	
Physical assets	Construction and rehabilitation:
	1311-xx1) Research and development facilities: Grants
	1312-xx Research and development facilities: Direct Federal programs
	1313-xx1) Other construction and rehabilitation: Grants
Major equipment	1314-xx Other construction and rehabilitation: Direct Federal programs
	1321-xx1) Research and development equipment: Grants
	1322-xx Research and development equipment: Direct Federal programs
	1323-xx1) Other major equipment: Grants
	1324-xx Other major equipment: Direct Federal programs
	1330-xx Commodity inventories: Direct Federal programs
	1340-xx Purchases and sales of land and structures for Federal use: Direct Federal programs
	1351-xx1) Other physical assets: Grants
Conduc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1352-xx Other physical assets: Direct Federal programs
	1411-xx1) Basic research: Grants
	1412-xx Basic research: Direct Federal programs
	1421-xx1) Applied research: Grants
	1422-xx Applied research: Direct Federal programs
	1431-xx1) Experimental Development: Grants
Conduct of education and training	1432-xx Experimental Development: Direct Federal programs
	1511-xx1) Grants
Non-Investment Activities	1512-xx Direct Federal programs
	2001-xx1) Grants-other than shared revenues
	2003-xx1) Grants-shared revenues
2자리 접미어	
	xxxx-01 Budget authority
	xxxx-02 Outlays
	xxxx-03 Offsetting receipts

- 주) 1) 해당 항목은 스케줄X의 BEA 하위 항목(의무/재량 등)을 구분 표기해야 함
 2) 회색 음영에 해당하는 항목의 합계는 부처의 R&D예산 합계와 일치해야 함
 3) Budget Authority와 Outlays는 스케줄A의 항목과 일치해야 함
 자료: OMB, Circular A-11

3) 연방보조사업편람의 사업정보 관리

CFDA는 보조금, 융자 등 재정사업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재정사업 설명서의 묶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전달되는 재정수단을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연방프로그램정보법(FPIA: Federal Program Information Act of 1978)에 따라 관리예산처와 조달청(GSA: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공동으로 1984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즉 재정사업의 정보를 국민에게 자세하게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의회에 송부하는 대통령예산안을 작성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MAX시스템의 차이가 있다.

CFDA는 보조금, 융자 등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사업에 관한 한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정보 원천(authoritative source)이며, 해당 정보는 SAMS(State Award Management System)¹⁴⁾ 홈페이지는 물론 benefits.gov, grants.gov 등 대국민 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기초가 된다.¹⁵⁾ 개별 재정사업에 대해 색인, 보조사업 신청자격과 수급자격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가 자세하게 제공되며, 1년 주기로 업데이트된다.

FPIA에서 규정하는 프로그램은 그동안 정부 각 부처 및 제공기관에서 활동(activity), 서비스, 프로젝트, 절차(process) 등으로 호칭되는 것을 망라하는 개념이다. 연방보조사업(Federal domestic assistance program)은 보조를 제공하는 연방 기관의 기능(function)으로 정의된다. CFDA 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사업은 2018년 기준 2,286개이다.¹⁶⁾

개별 프로그램 즉 사업정보는 CFDA 내에서 법적 주체, 제공 기관(administering office), 재원 조달(funding), 목적, 혜택의 내용(benefits)과 수혜자(beneficiaries)로 구분된다. 기관 코드 2자리와 사업코드 3자리로 구성된

14) 2018년부터 관련 자료와 기능을 이관받았다. 이전에는 CFDA.gov를 통해 관리가 되었다.

15) 비연방(non-federal) 재정사업 정보는 CFDA의 관리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취급되어 게시된다.

16) 폐지된 사업까지 전부 합치면 6,258개의 사업이 등재되어 있다.

다섯 자리 코드가 개별 사업마다 부여되며, 사업 코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에서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CFDA와 MAX시스템은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이 약간 다르다. MAX시스템은 성과관리 대상인 프로그램 활동(program activity)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반면¹⁷⁾, CFDA는 보다 하위인, 세부 내지는 내역 성격의 사업이 관리되고 있다. 2014년 DATA Act 시행 이전에는 양자의 일치 범위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으며, USASpending.gov의 건별 수혜정보는 CFDA코드까지만 매칭되어 공개가 이루어졌었다. 2014년 이후부터는 공개되기 시작한 재정 사업 수혜 건별 자료에 MAX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예산 상의 프로그램 정보를 매칭하여 공개하고 있다.

CFDA는 색인(Indices), 사업 설명자료(assistance listing descriptions), 부록으로 구성된다. 먼저 색인은 각 사업별로 키워드 속성을 부여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색인은 크게 기능별 색인(Functional Index), 신청자 색인(Applicant Index), 신청 기한 색인(Deadlines Index), 근거 법률 색인(Authorization Index), 일반색인(Subject Index)으로 구성된다. 색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17) 정부성과결과법(GPRA: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에서 규정하는, 각 관서에서 설정한 목표에 대응하는 활동이다. GPRA가 FPIA보다 늦게 제정되었다.

〈표 3-9〉 미국 CFDA의 색인정보

The Agency Index Summary	소관 요약자료
The Agency Assistance Listing Index	기관별(CFDA코드 정렬), 재정/비재정 지원 구분
The Alphabetical Index of Listings	알파벳 순서 별
The Functional Index Summary	분야·부문별 사업 구분
The Subject Index	토픽별,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업명(popular name)에 사업 카테고리별 색인 정보
The Applicant Eligibility Index/Beneficiaries Index	사업 신청자격별 사업 정보 수혜자 정보
The Deadlines Index	신청기한별 사업 정보
The Archived Index	전년 대비 폐지 사업
The Added Assistance Listings	전년 대비 신규 사업
The Crosswalk of Changes to CFDA Numbers and Listing Titles	전년 대비 CFDA코드/사업명칭 변경 사업

자료: OMB, GSA. 2018. Catalog of Federal Domestic Assistance

각 사업의 설명자료에 요구되는 사업 속성은 다음과 같다.

가) 보조 유형

보조유형은 재정지원의 성격, 기타 서비스의 대분류를 나타내는 정보이다.

〈표 3-10〉 미국 CFDA의 보조유형 속성 정보

대분류	소분류	상세
Financial Assistance	Formal Grants	법률에 의해 주·지방정부에 공식에 의해 지원되는 보조금

	Project Grants	주·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금(학자금, 연구개발, 훈련 등)
	Direct Payments for Specified Use	개인, 회사 및 개인기관에게 특정 목적에 사용되도록 직접 전달되는 지원금
	Direct Payments with Unrestricted Use	수급자격을 만족하는 수혜자에게 용도의 제한이 없이 직접 전달되는 지원금
	Direct Loans	특정기한, 상환을 전제로 직접 지원되며, 이자가 약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Guaranteed/Insured Loans	채무불이행 시 대부자에게 원금 지급을 보증하는 융자
	Insurance	특정 조건에서의 손실에 대한 변제를 제공하는 보험
Non-Financial Assistance	Sale, Exchange, or Donation of Property and Goods	연방정부가 소유한 재산 등의 판매, 교환, 기부 등을 제공하는 사업
	Use of Property, Facilities, and Equipment	연방정부가 보유한 시설 또는 재산의 이용 또는 활용을 제공하는 사업
	Provision of Specialized Services	단순 상담 이상의 특수 서비스의 제공
	Advisory Services and Counseling	상담 서비스
	Dissemination of Technical Information	도서관, 정보교환소 등을 통한 출판 및 정보전달 사업
	Training	정부 기관이 비정부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훈련 서비스
	Investigation of Complaints	연방 법률 및 규정 위반사례에 대한 공식, 비공식 조사 활동
	Federal Employment	연방 정부가 민간인을 고용하는 사업

자료: OMB, GSA. 2018. Catalog of Federal Domestic Assistance
Department of Interior, 2018. Federal Domestic Assistance Reference Manual

나) 사업 시행 주체(Applicant Eligibility)

사업 신청자격은 연방보조사업을 신청하는 주·지방정부/사업자 등을 구분하는 속성이다. 개인 자격은 각종 인종 관련 조직, 영리조직이 포함된다. 이 구분은 사업 시행 주체에 대한 속성 정보이다.

〈표 3-11〉 미국 CFDA의 사업 시행 주체 속성

대분류	소분류	상세
Federal		연방 부처나 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사업
Individual	Individual/Family	푸드스탬프 등 개인 수혜 사업
	Native American Org.	도시 인디언 그룹 등에서 제공하는 사업
	Sponsored Org.	지역개발공사 등 비정부 공기업에서 제공하는 사업
	Anyone/general public	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업
	Minority Group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미계 등 소수 인종 관련 조직에서 제공하는 사업
	Specialized Group	전미의료협회 등 특수 이해관계 조직에서 제공하는 사업
	Small Business	5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사업
	Profit Org.	영리활동이 목적인 민간/공공조직에서 제공하는 사업
	Other Private	배당을 실시하는 기관이 제공하는 사업
State	State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사업(고등교육과 의료 포함)
	Interstate	2개 이상의 주가 관여하는 사업
	Intrastate	각 주정부 산하 무역공사, 교통공사 등의 조직에서 제공하는 사업
Local	Local	도시, 타운, 학교구 등 주정부 산하 지방 각급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업
Nonprofit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Public Nonprofit	비영리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업
	Private Nonprofit	자선, 과학 등의 분야에 있어 비영리 인증을 받은 조직에서 제공하는 사업
	Quasi Public Nonprofit	전미적십자사 등 특별한 인증을 받은 조직에서 제공하는 사업
Federal Tribal Government		정부가 조직한 인디언 자치정부 등에서 제공하는 사업
U.S. Territories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등 정부 직할령에서 제공하는 사업

자료: Department of Interior, 2018. Federal Domestic Assistance Reference Manual

다) 수혜자격(Beneficiary Eligibility)

수혜자격은 궁극적으로 사업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수혜자에 대한 속성이다. 연방정부로부터 직접 수혜를 받는 경우는 신청자격과 수급자격이 동일하다. 해당 정보는 중복 체크가 가능하다.

〈표 3-12〉 미국 CFDA의 수혜자격 속성 정보

신청 자격	Federal	직군	Health Professional
	Interstate		Education Professional
	Intrastate		Student/Trainee
	State		Graduate Student
	Local		Scientists/Researcher
	Sponsored Org.		Artist/Humanist
	Public Nonprofit		Engineer/Architect
	Other Public		Builder/Contractor/Developer
	Indian Tribal Gov.		Industrialist/Business Person
	U.S. Territory		Small Business Person
	Individual/Family	가구 유형	Consumer
	Small Business		Homeowner
	Profit Org.		Land/Property Owner
	Private Org.	인종	Black American
	Quasi Public		Spanish Origin
	Other Private		Oriental
	Anyone/General		Other Nonwhite
	Native American Org.		Migrant
국적	U.S. Citizen	복지/소득	Unemployed
	Refugee/Alien		Welfare Recipient
사회적 약자/ 의료	Ward		Pension Recipient
	Handicapped(Deaf, Blind, Crippled)		Moderate Income
	Physically Afflicted(TB, Arthritis, Heart Disease)		Low Income

	mentally Disabled	지역	Major Metropolis(250,000+)
	Drug Addict		Other Urban
	Alcoholic		Suburban
교육	Juvenile Delinquent		Rural
	Preschool ... School	연령	Infant(0-5))
	Education(0-8)		Child(6-15)
	Education(9-12)		Youth(16-21)
	Education(13+)/Credentials/ Documentation		Senior Citizen(60+)

주) 대분류는 저자가 임의로 분류한 것으로 미국의 공식 분류체계는 아님

자료: Department of Interior, 2018. Federal Domestic Assistance Reference Manual

라) 기타 색인(Subject index)

기타 색인은 위에서 열거된 공식적 속성 체계 외에 사업의 대중적 명칭(popular name), 공식 기능분류 외 일반 기능(general functional terms), 서비스 분류, 특정 수혜자(selected beneficiaries) 등이다. CFDA책자에는 해당 색인을 클릭 시 해당 사업의 CFDA분류번호가 나열된다.

〈표 3-13〉 미국 CFDA의 기타 색인 예시

색인 명	관련 사업
Academic facilities	11,020 Cluster Grants 15,163 Trivial Education Departments 15,942 Environmental Education and Conservation-North Cascades
Agriculture commodities	10.030 Indemnity Program 10.051 Commodity Loans and Loan Deficiency Payments 10.055 Direct and Counter-cyclical Payments Program
Space Programs	43.007 Space Operations 43.008 Education(NASA)

자료: OMB, GSA. 2018 Catalog of Federal Domestic Assistance

그리고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표준화된 목차로 작성된다. 근거법률, 신청 기한 등은 별도의 색인으로도 제공된다. 사업의 통폐합 등의 이력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 또한 CFDA 연방보조사업 정보관리의 특징이다.

〈표 3-14〉 미국 CFDA의 각 사업별 표준 목차

구분	포함 정보
Overview	기본사항(부문, CFDA번호, 관련 사업) 사업목적, 예시
Authorizations	근거 법률
Financial Information	사업 총액, 성과 정보, 계좌 정보 등
Criteria for Applying	사업유형, 신청 자격, 수혜자격, 기간
Applying for Assistance	신청 기한, 사전 필요 서류, 절차, 선정기준 등
Compliance Requirements	사후 절차(보고 및 감사), 관련 규정 및 지침 등
Contact Information	문의처
History	사업 정보 수정 내역

자료: OMB, GSA. 2018 Catalog of Federal Domestic Assistance
Department of Interior, 2018. Federal Domestic Assistance Reference Manual

4) 관리체계

예산편성시스템(MAX)와 연방보조사업편람의 관리는 모두 관리예산처가 주관하고 있다. MAX 시스템은 예산안 준비 및 집행지침 통보(6월) 후 11월부터 자료 입력이 시작된다. 차년도 예산안 준비를 위한 요구서 등은 모두 1월 말까지 입력이 완료되어야 하며, MAX데이터 입력이 끝나면 2월 두 번째주 월요일에 대통령 예산안이 의회로 송부된다.

MAX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따라 구조화되어 있다. 미국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예산 구분, 기관 구분, 계정 정

보, 기능별 분류, 프로그램 분류, 비목체계(object class) 그리고 체계 외에 해당하는 속성분류(character classification) 정보까지 이어진다.

예산 편성시스템에서 MAX 데이터베이스 입력은 회기 도중에 이루어진다. 2019년 예산 편성시, 2017년도 예산 확정 정보가 먼저 MAX시스템에 입력하며, 차년도 경제전망에 따라 각 집행관서(agency) 예산을 확정하고 입력하면, 이 데이터가 최종 예산안으로 확정되어 의회로 송부된다. 11월 1일 MAX데이터베이스가 열리기 전에, 10월 1일까지 각 부처 및 집행관서는 예산의 기능별 분류, 프로그램 예산구조와 집행 스케줄, 전년 대비 변동사항 등에 대해 관리예산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3-15〉 미국의 예산 편성 절차와 MAX시스템

관리예산처로 예산 요구(Initial budget) 제출	9/11
2017년 4분기 세출관리시스템(GTAS) 마감	10/18
GTAS 수정창 오픈	10/18
MAX A-11 데이터베이스 오픈	11/1
전년도 세입 수정창 마감	11/14
전년도 세출자료 MAX데이터베이스 확정 및 GTAS 수정창 마감	11/14
경제 전망(economic assumptions) 발표	-
기관 추계 확정	12/8
최종 데이터베이스 생성	1/9
2019년 예산안 송부	2/5

자료: OMB, Circular A-11

예산편성을 위한 MAX데이터의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데이터 입력은 각각 지정된 스케줄에 의해 관리된다.

〈표 3-16〉 미국 MAX데이터 구성

If your agency has	Then submit for each applicable budget account	MAX data schedule	A-11 section
Budget authority and outlays	Estimates of budget authority and outlays	X	81, 82
	Character classification data, including R&D data	C	84
	Program and financing schedules ³	X	82
Obligations	Object classification schedules	O	83
Employment	Employment summary data	Q	85.6
Receipt accounts	Receipt estimates	K and R	81.3(b)
Credit liquidating or financing accounts; or non-credit revolving funds that conduct business-type activities (as determined by OMB), including GSEs	Balance sheet	F	86.1
Appropriations language requests	Budget year appropriations requests in thousands of dollars	T	86.2
Major trust funds and certain other accounts (as determined by OMB)	Status of funds	J	86.3
Special or trust fund receipts	Special and trust fund receipts	N	86.4
Credit programs	Federal credit data	G, H, U, and Y	185

주 1) Including agencies not subject to Executive Branch review. GSEs submit data for schedules F, G, and H only.

Federal Reserve Board submit data for schedules A, P, and O only.

2) Information required for schedules A, S, and P will be reported in a single worksheet (schedule X).

3) Schedule P also required for accounts with obligated or unobligated balances.

자료: OMB, Circular A-11

다음은 CFDA의 일정관리이다. CFDA는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사업 정보의 단일 출판물 제공이 목적이다. 사업 정보는 기능별 분류, 색인(subject index)¹⁸⁾, 신청자 자격정보, 신청 기한, 관련 법률 등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즉 재정사업에 대한 색인 내지는 속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정사업을 검색하는 사용자가 빠르게 자신이 원하는 사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에 시작하며, 이 일정에 맞추어 CFDA의 내용이 업데이트한다.¹⁹⁾ 해당 회계연도의 CFDA 사업설명자료 업데이트는 MAX시스템의 다음 회계연도 대통령예산안의 데이터 입력이 끝난 1월 말부터 시작된다. 신규 등록사업부터 차례로 수정되며,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위한 별도 기간이 설정되고 있다. 최종업데이트는 9월까지 이루어지며, 검증이 끝나는 10월 중순에 공개된다.

〈표 3-17〉 미국 2017 회계연도 CFDA 연간 활동 및 일정

Activity Title	Lead	Date
CFDA Data Call and Schedule	GSA-IAE PMO ^{주)}	01/31/2017
Annual Agency Coordinator Forum	GSA-IAE PMO	06/08/2017
Recommend Data for Agencies to Submit New Programs	Agency Coordinator	07/14/2017
Recommend Data for Agencies to Update Current Programs	Agency Coordinator	08/11/2017
Final Updates to Any CFDA Programs	Agency Coordinator	09/08/2017
CFDA Database Closes to All Program Updates	Supporting Vendor	09/11/2017
OMB Program Review (Accuracy of Content)	GSA & OMB	09/24/2017
GSA Program Review (Edits to Style and Formatting)	GSA & Vendor	10/13/2017
PDF Production	GSA & Vendor	10/17/2017
Database re-opens	Supporting Vendor	10/16/2017

주) Integrated Integration Environment Project Management Officer. IAE는 통합 조달환경의 약어로 2016년부터 시작된 조달관련 9개 시스템을 통합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자료: Department of Commerce 2017. Understanding the Catalog of Federal Domestic Assist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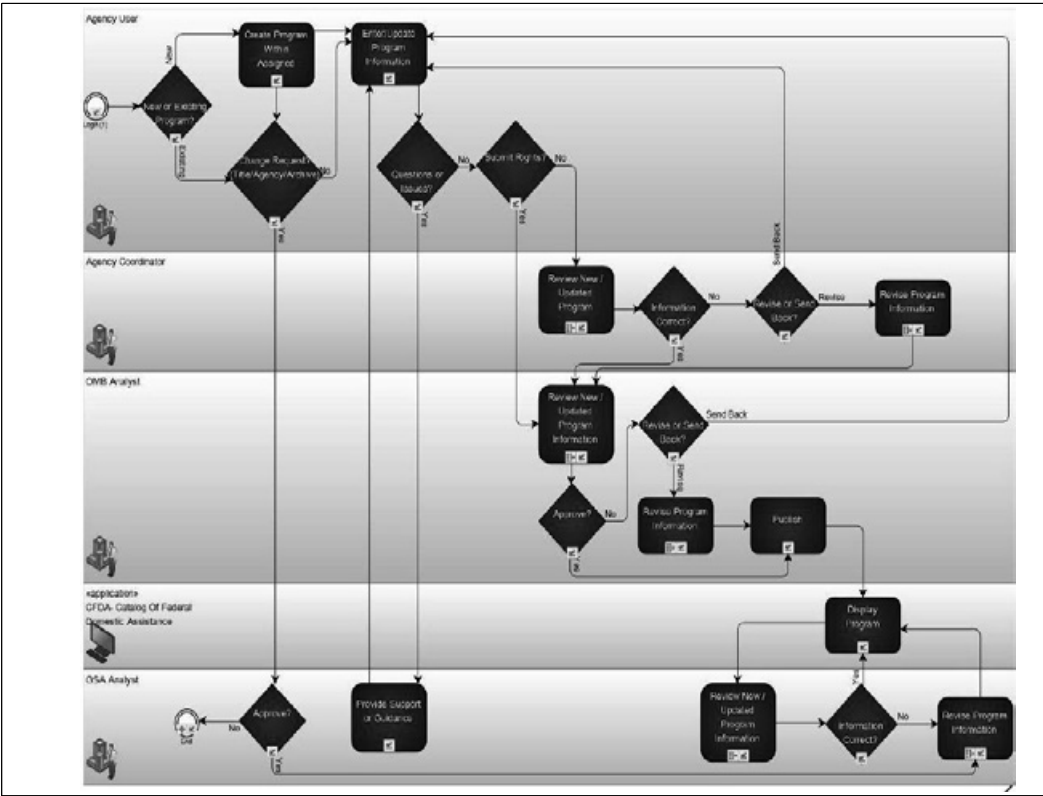
18) 기능별 색인(Subject index)은 각 부처에서 임의로 부여한다는 점에서 A-11에 따라 부여하는 품목(object class)과 구분된다.

19) 가령 2019년의 회계연도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이다.

CFDA 관리 절차에서 관리예산처는 크게 2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는 신규사업 등록과정에 담당자(Agency Coordinator)와 관리예산처 분석가(OMB Analyst)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신규사업의 사업정보 입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이후 프로그램 리뷰 과정에서 7일의 검토 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예산처는 검토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경우 검토 기간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그림 3-2〉 CFDA 신규사업 등록 절차



자료: Department of Commerce 2017. Understanding the Catalog of Federal Domestic Assistance

2. 캐나다

캐나다의 재정업무는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전산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재정업무의 제반사항은 재무행정법(Financial Administration Act)에 규정되어 있지만 업무의 전산화나 재정정보의 공개는 재무위원회(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재무총감실(Office of Comptroller General) 재무관리과(Financial Management Sector)와 정보화담당관실(Office of Chief Information Officer)의 다년간 전략적 계획 하에서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재정정보 시스템은 각 부처별로 구축되어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각 부처별로 30여 개에 달하던 시스템들을 현재 7개로 통합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각 시스템의 업무처리 절차 및 생산되는 정보를 표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유승원 외, 2017). 현재 캐나다 연방정부는 각 시스템 연계 및 표준화 등을 거쳐 하나의 민간 기업 수준(enterprise level)의 그룹으로 간주하여 재정정보를 생산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는 아직은 부처별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시스템 간의 연계가 느슨한 까닭에, 중앙재정에서 산출하는 재정정보는 다년간 예산안 전망과 프로그램별 예산에 대한 정보, 그리고 결산 이후 성과정보를 취합해서 공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단 사업별 정보 공개의 경우 각 부처에서 공개를 하고 있으며, 키워드 내지는 속성 위주의 사업정보 검색이 용이한 수준까지 발전해 있다. 2013년 이후 각 부처에서 공개하는 사업정보 설명자료의 공통 속성화와 표준화를 시도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캐나다 프로그램 예산체계

캐나다의 연방정부 재정 규모는 결산 기준으로 2016-2017년 기준 2,459억 달러이며, 부채 규모는 GDP 대비 30% 선에서 관리되고 있다.²⁰⁾ 캐나다 연방

20) 단, 이는 중앙정부 기준이다. 일반정부 기준 GDP 대비 부채규모는 2017년 기준 109.1%이다.

정부의 재정은 크게 4개의 분야, 17대 부분 501개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다. 분야, 부문으로 볼 경우 경제 분야의 고용 및 소득안정 부문이 지출의 34.3%, 사회 분야의 보건 부문이 지출의 17.6%로 비중이 높다.

〈표 3-18〉 캐나다의 예산 분야·부문 대분류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Economic Affairs	Employment and Income Security	72,786 (31.9)	74,407 (32.4)	77,658 (33.6)	80,666 (33.4)	84,470 (34.3)
	Economic Development	39,712 (17.4)	39,239 (17.1)	35,790 (15.5)	34,798 (14.4)	34,819 (14.2)
	Research and Development	5,973 (2.6)	5,740 (2.5)	5,766 (2.5)	5,867 (2.4)	7,344 (3.0)
	Environment	3,199 (1.4)	3,117 (1.4)	2,596 (1.1)	2,502 (1.0)	2,752 (1.1)
	Market integrity, regulation, and competition	542 (0.2)	539 (0.2)	553 (0.2)	510 (0.2)	475 (0.2)
	소계	122,212 (53.6)	123,042 (53.5)	122,362 (52.9)	124,343 (51.5)	129,860 (52.8)
Social Affairs	Health	35,756 (15.7)	37,393 (16.3)	38,869 (16.8)	40,803 (16.9)	43,312 (17.6)
	Safety and Security	12,247 (5.4)	13,302 (5.8)	30,355 (13.1)	30,281 (12.5)	32,107 (13.1)
	Social Inclusion	9,828 (4.3)	9,645 (4.2)	9,227 (4.0)	15,227 (6.3)	9,461 (3.8)
	Heritage and Culture	2,903 (1.3)	2,931 (1.3)	3,001 (1.3)	2,898 (1.2)	3,363 (1.4)
	소계	60,735 (26.7)	63,271 (27.5)	81,451 (35.2)	89,208 (37.0)	88,243 (35.9)
Government Affairs	Government Operations	9,362 (4.1)	9,803 (4.3)	10,087 (4.4)	11,235 (4.7)	10,457 (4.3)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1,399 (0.6)	1,314 (0.6)	1,278 (0.6)	1,184 (0.5)	1,289 (0.5)
	Democratic Institutions	720 (0.3)	698 (0.3)	708 (0.3)	752 (0.3)	806 (0.3)
	소계	11,481 (5.0)	11,815 (5.1)	12,073 (5.2)	13,171 (5.5)	12,552 (5.1)
International Affairs	International Engagement	19,836 (8.7)	18,597 (8.1)	2,844 (1.2)	2,858 (1.2)	2,763 (1.1)
	International Development	3,958 (1.7)	4,061 (1.8)	4,503 (1.9)	4,222 (1.7)	4,512 (1.8)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461 (0.2)	344 (0.1)	242 (0.1)	224 (0.1)	253 (0.1)

	North American Partnership	349 (0.2)	331 (0.1)	7 (0.0)	7 (0.0)	6 (0.0)
	소계	24,604 (10.8)	23,333 (10.1)	7,596 (3.3)	7,311 (3.0)	7,535 (3.1)
	Internal Services	8,786 (3.9)	8,501 (3.7)	7,658 (3.3)	7,367 (3.1)	7,764 (3.2)
	합계	227,817 (100.0)	229,962 (100.0)	231,140 (100.0)	241,399 (100.0)	245,955 (100.0)

자료: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캐나다 재정은 이와 같은 공식적 분류체계와는 별도로 주요 국정과제에 대하여 매년 조정되어 발표되는 정책(measure) 분류가 존재한다. 이는 분야, 부문에 상관 없이 선정되며 2017년 기준 27개 과제에 1,226억 달러가 분류되어 있다. 일종의 프로그램 예산과 대분류의 중간 단계로 기능하는 일종의 속성분류에 해당하며, 매년 조정되고 3자리 코드가 부여되고 관리, 공개된다.

〈표 3-19〉 캐나다 재정의 정책별 분류

정책명	예산액
Service Income Security Insurance Plan and other Public Service Employee Benefits	554,014,185
Addressing the Opioid Crisis	144,617,038
Clean and Safe Drinking Water On Reserve	102,133,524
Indigenous Health: Keeping Families Healthy in Their Communities	98,243,766
Strengthening the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73,729,991
National Research Council	63,192,499
Ensuring Rules-Based and Responsible Trade	31,271,909
Renewal of Base Funding for the Federal Economic Development Agency for Southern Ontario	25,000,000
Renewal of Economic Development Funding for the Canadian Northern Economic Development Agency	19,423,539
Cracking Down on Tax Evasion and Combating Tax Avoidance	14,944,003
Revitalizing National Capital Commission Assets	13,240,741
Addressing Demand for Immigration and Refugee Legal Aid	12,791,977
Strengthening Canada / Food Safety System	12,753,982

Maintaining Rail Service to Remote Communities	11,269,743
Sustainable Aquaculture Program	9,523,168
Stabilizing and Future Transformation of the Federal Government's Pay Administration (Phoenix)	6,991,848
Adapting Canada's Weather and Weather Services to Climate Change	6,535,996
Improving Access to the Digital Economy	5,286,148
Securing Market Access for Canada – Agriculture and Agri-food Products	4,983,832
Combating Aggressive International Tax Avoidance	3,966,360
Strengthening Motor Vehicle Safety	3,156,958
Strengthening the Canadian Judiciary	3,000,000
Ensuring the Safe Operation of Tankers	2,508,194
Critical Infrastructure Security	1,099,233
Strengthening Capacity for Environmental Assessments	801,283
Canada's Co-Chairmanship of the G-20 Finance Working Group	576,955
Support for the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and the Office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 of Canada	527,582
합계	1,225,584,454

자료: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캐나다의 재정 역시 법정 지출(statutory authorities)과 일반지출(voted authorities)을 구분하고 있다.

〈표 3-20〉 캐나다 예산의 지출재원 구분

	2015-16	2016-17
Statutory Authorities	156,144 (65.0)	153,126 (62.6)
Voted Authorities	84,100 (35.0)	91,648 (37.4)
합계	240,243 (100.0)	244,774 (100.0)

자료: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캐나다 재정의 프로그램 세부 예산체계는 501개의 프로그램, 일부 프로그램에 753의 하위 프로그램(sub-program)과 203개의 내역 프로그램(sub-sub program)이 설정된다. 이 중 성과목표는 334개 프로그램, 210개 하위 프로그램, 27개 내역 프로그램에 부여된다.

소관별 코드는 120개 관서에 3자리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며, 프로그램 ID는 다섯 자리를 부여한다. 각 프로그램별 성과정보는 프로그램에 성과정보가 게시되는 경우, 하위 프로그램에 성과정보가 게시되는 경우, 내역 프로그램에 성과정보가 게시되는 경우 등 3가지이다. 각 사업 별로 평균 2~3개의 성과지표가 부여되며 연말에 계량지표 달성률, 비계량지표 달성 여부 정보를 게시한다.

〈표 3-21〉 캐나다의 성과관리 취합 및 공개 정보

필드명	상세
Name of the Organization	집행조직
Name of the Strategic Outcome	전략 목표
Name of the Program	프로그램 명
Name of the Sub-Program	하위 프로그램 명
Name of the Sub-Sub-Program	내역 프로그램 명
Result Name	결과 명칭
Indicator Name	지표 명칭
Data Type	데이터 형식
Numerical - Minimum Target	계량-최소 목표
Numerical - Maximum Target	계량-최대 목표
Non-Numerical Target	비계량 목표
Numerical - Actual Results	계량-성과
Non-numérique - Actual Results	비계량-성과
Indicator Status	지표 상태
Date to achieve Target	목표 달성 일시
Explanation	상세

자료: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성과 정보 중 Data type, Indicator Status는 각각 4개 항목을 선택입력하도록 하게 하고 있다.

〈표 3-22〉 캐나다 성과 정보 중 카테고리형 속성정보 현황

		Indicator Status				
		Target Met (On Track to Meet Target)	Attention Required	Result not available	Target no longer applicable	총합계
Data type	Percentage	263	224	87	26	600
	Number	150	90	37	12	289
	Dollar	13	20	2	-	35
	Narrative Description	39	14	69	8	130
열합계		465	348	195	46	1,054

자료: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2) 분야별 재정사업 분류

캐나다는 재정사업에 대한 정보 작성과 공개를 각 부처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각 부처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캐나다 연방정부 홈페이지에 검색기능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사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 홈페이지에 연계되어 구축된 방식은 질의응답 방식으로 복지 서비스를 검색하기 위한 Benefit Finder가 대표적이다. 농림부의 경우는 AGPAL(Agriculture Program and Service Finder)이라는 별도의 검색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를 구축해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재정사업 속성 기반 사업정보 검색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산업부 등 다른 부처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부처에서 재정사업을 대-중분류로 나누고 있는 것은 공통점이다. 이들 분류는 트리구조이기는 하나, 하나의 사업이 여러 카테고리에 중복 포함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CFDA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인데, 하나의 속성에 대응하는 재정사업 규모를 파악하는데는 불리하지만 대국민 검색 기반 정보공개 서비스를 위해서는 유리한 형태이다.

단 속성 분류가 부처별로 표준화되지 못하고 부처마다 다른 양식의 사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캐나다의 사업 속성기반 사업정보공개 및 검색 서비스가 가지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각 부처가 관리하는 사업 속성은 공통속성보다는 미국 CFDA사례에서 각 부처가 사업에 부여하는 인덱스(subject index)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캐나다는 재정사업에 부여하는 속성을 표준화하고 통일된 양식의 편람형 사업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부처별로 다른 형태의 사업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표 3-23〉 캐나다 농업 분야 속성 분류

Commodity	Bees and apiculture	Topic	Animal health, welfare, genetics
	Bio-products		Basic and applied research
	Dairy products		Branding, advertising, promotion
	Fertilizers, pesticides, etc.		Business planning, analysis
	Fish or seafood		Climate, geography, optimizing land use
	Fruits, vegetables and other agriculture		Community, rural development
	Grains, cereals and other crops		Developing new markets, exporting
	Livestock		Energy, sustainability, BMPs
	Non-specific		Environment, energy, stewardship
	Poultry, eggs		Farming methods, practices
	Processed foods and agri-based products		Financing, credit, income stability
Client Type	Agri-business or food processors		Finding suppliers, buyers
	Agricultural Service Providers and suppliers		Food safety, animal health
	Co-operatives		Food safety, traceability, biosecurity
	Educational or research institutions		Helping agri-business succeed
	Equine Business(breeding, horse racing)		Hiring, managing workers
	Farmers and food producers		Land purchase, leasing, access
	Fishing and aquaculture industries		Leadership, workforce development
	Food service providers or food retailers		Licensing, certification, legal issues
	General Public		Manufacturing, processing, value-added
	Governments		Market analysis, prices, forecasts
	Indigenous Individuals, organizations		Markers, marketing, trade
	Industry associations and farming organizations		New to farming
	Non-profit or community organizations		Pest management, organic farming
	Students and researchers		Predators, wildlife

	Veterinarians
	Work-related workshops organizations
	Young farmers and new entrants
Service	Economic data, information
	Expertise, advice, guidance
	Financial support, incentives
	Geospatial, climate data, maps, tools
	Insurance, recovery aid
	Laboratory, veterinary services
	Land, infrastructure
	Promotional events, support
	Regulations, enforcement
	Research results
	Training, workshops

Category	Product development, commercialization
	Science, sector innovation
	Sector competitiveness, adaptation
	Water, soil, shelterbelts
	Education/Training
	Guides/Information
	Import/Export
	Market Intelligence
	Program
	Research
	Services

자료: 캐나다 정부. AGPAL 홈페이지(agpal.ca)

〈표 3-24〉 캐나다 산업·기업 분야 속성 분류

My main goal is to	conduct R&D, innovate, develop a product or service
	start or buy a business
	buy or lease equipment or property
	grow and expand my business
	hire or train employees
	increase working capital
	increase productivity, quality, safety or efficiency
	reduce pollution or improve energy efficiency
	develop the local economy

Project area	advanced manufacturing
	aerospace and defence
	agribusiness
	aquaculture and fisheries
	biotech, healthtech and life sciences
	cleantech and environment
	computer, electronics, software and ICT
	digital media, arts and culture
	nanotechnology
	natural resources
	service innovation

	infrastructure
	sell or close a business
Industry	agriculture and agri-food
	forestry, fishing and hunting
	mining, oil and gas and utilities
	construction
	manufacturing
	wholesale and retail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services
	book publishing industry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finances, real estate, management of companies, administrative and support services
	computer system software and videogame design and publishing and data processing
	business, scientific and other professional services
	arts, entertainment and recreation
	education, health and other services
	not sure
Needed Most	Funding
	Loans and capital investments
	Tax credits
	Wage subsidies and interns
	Expert advice
	Partnering and collaboration

	social innovation
	space
	tourism
	other
	Show all
Stage	research
	development
	demonstration
	pre-commercialization
	any
Owned by	Canadian
	Indigenous people
	persons with disabilities
	rural or northern residents
	youth(<40)
	none of these
	not sure/prefer not to say
Incorporated	Incorporated/not incorporated/show all
For-profit	For profit/not for profit/show all
Amount needed	from to
Etc.	Number of employees
	% project funded

자료: 캐나다 정부 산업부 홈페이지(www.ic.gc.ca)

〈표 3-25〉 캐나다 복지 분야 사업 분류

Employment Insurance	Regular	public pensions	Canada pension plan retirement pension
	Maternity and parental		old age security pension
	for the self-employed		Canada Pension plan disability benefits
	fishing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sickness		Allowance for people aged 60 to 64
	caregiving benefits and leave		Benefits for Canadians abroad
	for Canadians living abroad		Retirement planning
	EI-information for employers		Allowance for the Survivor
Family benefits	find a job	Disability	survivor's pension
	EI maternity and parental benefits		Living with a disability
	Canada Child benefit		child Disability Benefit
	caregiving benefits and leave		Canada Pension plan disability benefits
	Canadian benefit for parents of young victims of crime		Federal excise gasoline tax refund program
	following death		Canada Pension Plan children's benefits
	child disability benefit		Canada Disability Savings Grant and Bond
	goods and services tax/harmonized sales tax credit		Disability Award
	victim services and funding		Disability pension
	survivor's pension		Education fund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child disability benefit	Benefits by audiences	Benefits for Indigenous people
	manage personal finances		Military benefits

	having a baby		Benefits for Veterans
	GST/HST new housing rebate		Disability benefits
	Buying a home		Retirees
	Residential Rehabilitation Assistance Program		Benefits for Canadians living abroad
	Home Adaptations for Seniors' Independence Program		Public service group insurance benefit plans
	Cost to buy, maintain and sell a home		victim services and funding
Housing			

자료: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3.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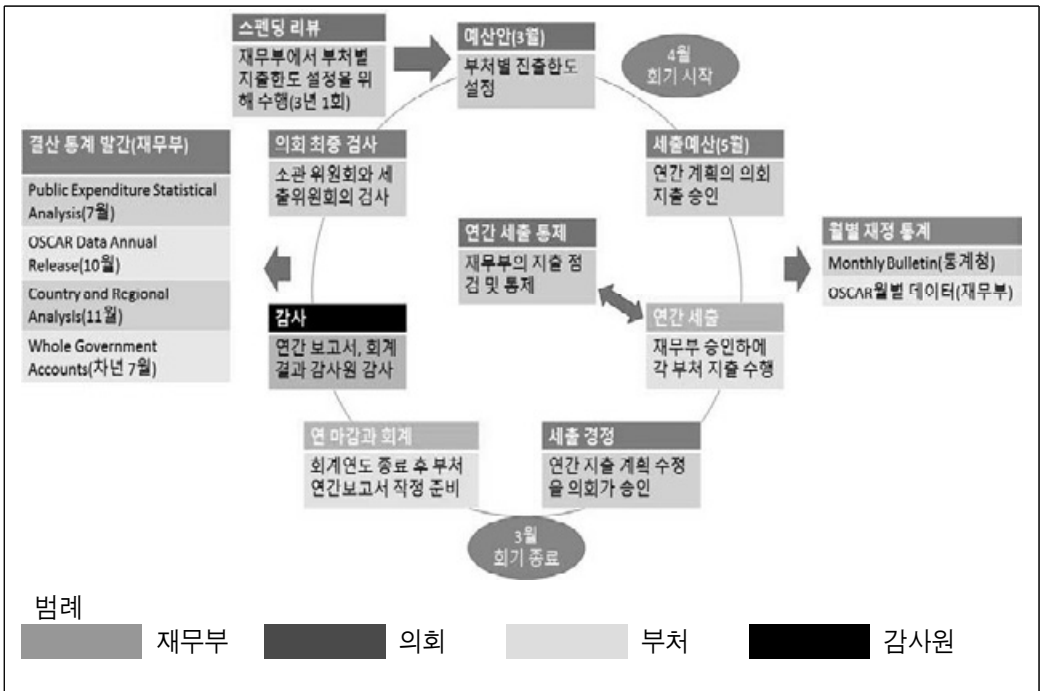
영국 재정의 세출 관련 법제는 재정원칙과 각연도 세입을 규정하는 재정법(Finance Act), 부채 관리와 재정건전성을 규율하는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그리고 발생주의 예산 및 회계시스템 도입에 관한 정부자원및회계법(Government Resources and Accounts Act 2000) 등이 있으며, 정보공개는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서 규율한 바를 따르고 있다. 중앙 차원의 성문법 체계 완비가 늦어진 것과 별도로 영국의 재정 관리는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다. 즉 영국,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각 부처, 지방 정부 별로 재정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영국 정부는 부처별 재정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취합하여 예산, 결산 등에 이르는 각종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에 COINS(Combined Online Information System)를 구축했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11년 OSCAR(Online System for Central Accounting and Reporting)를 구축했다. OSCAR Database는 예산 정보 입력, 월별 및 결산 정보 입력을 통해 주요 정보를 산출하는 시스템으로 기능하고 있다.

OSCAR에는 각 부처별로 Database 입력의 시한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결산 시에는 회계연도 마감 후 1개월 이내에 입력을 완료해야 하며, 월별 마감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 OSCAR Database를 기초로 영국정부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그림 3-3〉 영국의 재정 지출 프레임워크 및 통계생산주기



자료: ICAEW (2018)을 일부 수정

1) 재정 체계

영국 재정의 회기는 4월부터 이듬해 3월이며, 월 마감 후 21일 이내에 Public Sector Bulletin이 통계청에서 발간된다. Public Sector Bulletin은 공공부문 월별 부채 통계, 중앙정부 총수입, 총지출, 순차입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연간 통계 작성일정에 따라 원본데이터와 가공보고서를 공개해오고 있다. 각 월 마감 후 3개월(약 80일) 이내에 중앙 재정의 OSCAR 월별 데이

터가 공개된다. 연 마감(3월) 후 4개월 후(7월) OSCAR데이터를 가공한 PESA(Public Expenditure Statistical Analysis)를 공개하며, PESA 발간 후 3개월(10월) 시점에서는 OSCAR 데이터의 원본을 공개한다. OSCAR 원본 데이터 공개 후 1개월(11월) 시점에서는 CRA(Country and Regional Analysis)를 작성, 공개한다. PESA 발간 후 1년(차년 7월) 경과 시점에서는 통합정부 계정 WGA(Whole Government Accounts)을 공개하며, WGA 후 1개월 시점(차년 8월) CRPSF(Country and Regional Public Sector Finances) 공개하는데 이들 자료집은 모두 OSCAR Database를 기반으로 작성한다.

〈표 3-26〉 영국의 재정통계 발간물 주요 특징

	PESA	CRA	WGA	CRPSF
발간 시점	7월	11월	차년 7월	차년 8월
주관 기관	재무부			
회계기준	NA/ESA	NA/ESA	IFRS	NA/ESA
정부 규모 기준	TME TES	TME TES	WGA TES	TME
포괄 범위	지출		수입, 지출 수지, 채무	수입, 지출 수지
의의	공공부문 지출 잠정치 공개	지역별 지출 통계 공개	기관 재무제표 통합	지역별 재정수지 공개
차이점	잠정통계	7월 통계집 발간 후 수정사항 반영	타 통계집과 회계기준에서 차이 발생	CRA와 비교시, 지역별 수입, 지출과 수지차 통계를 포함
원본 데이터	재무부 OSCAR Database			통계청 국민계정

- 주 1) TME: Total Managed Expenditure. 예산상에 포함되는 모든 정부 지출. 국민계정(National Account) 및 유럽통계청 기준(ESA. European Statistical Office Standard)과 일치
 2) WGA: Whole Government Accounts. 회계처리 국제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따르며, TME와 약 2~3% 정도 차이가 있음
 3) TES: Total Expenditure on Service. 일반정부 자본소비(감가상각), 특정 부가가치세(VAT) 환급 및 일부 회계 처리를 제외한 것으로 TME, WGA의 공통부분임

- 4) 재무부 OSCAR Database와 통계청 국민계정 Database는 회계항목 처리, 일부 항목에서 다른 상이한 원천의 자료 이용 등의 차이가 있음

영국의 재정체계는 유럽통계청(Eurostat)과 영국통계청(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의 국민계정 기준 즉 UN의 SNA(System for National Accounts) 기준과 완전히 일치하는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즉 국내, 국제 기준에 일치하는 집계결과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통계 생산이 가능하다. 반면 예산 단계에서는 세부화된 경제기능별 예산 분류 정보는 생산하고 있지 않다.

단, 예산의 대분류와 중분류는 UN의 정부기능별 분류(COFO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 of Government)를 한단계 더 세분화한 분류체계를 사용한다. 전반적으로 영국의 재정체계는 예산과 결산 모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를 생산하는데 부합한다.

〈표 3-27〉 영국의 예산 대분류 체계

COFOG	영국 예산 분류 체계
General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services
	Public and community services
Defence	Defence
Public order and safety	Public order and safety
Economic affairs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Employment policies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Science and technology
	Transport
Environment protection	Environment protection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Health	Health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Education	Education
Social protection	Social protection
EU transactions	EU transactions

자료: OSCAR Annual Database, 2018.

그리고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을 구분하고 지출한도에 해당하는 DEL(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과 연간관리지출(AME: Annually Managed Expenditure)을 구분하고 있다. 연간관리지출은 매년 지출 상한이 결정되는 법정성 지출이며, 비 법정 지출에 해당하는 DEL은 경상 지출에 한해 행정비용과 프로그램 비용을 구분한다. 경상지출의 DEL 프로그램비용, 자본지출의 DEL 총액이 3년에 한번 수행되는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통해 상한규제를 받는 지출한도액에 해당한다. 이 정보들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코드화된다.

〈표 3-28〉 영국 예산의 통제 기준 분류

경제적 분류	통제 유형
Resource (경상지출)	DEL Administration
	DEL Programme
	Departmental AME
	Non-departmental AME
	Non-budget
Capital (자본지출)	DEL
	Departmental AME
	Non-departmental AME
	Non-budget

자료: OSCAR Annual Database, 2018.

영국의 예산제도는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이행하였고 상세한 품목별 예산제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단 부처별로 지출통제를 위한 품목별 분류체계는 존재하며, 통계적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경상지출은 자본재 감가상각의 경상지출 처리²¹⁾ 후, 중분류, 소분류된다. 자본지출은 금융거래, 일

21) 상각 링펜스(depreciation ringfence)는 감가상각(depreciation), 가치변동(impairment) 등 서비스 직접공급과는 무관한 예산을 분리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감가상각과 자산가치 변동은 총관리대상 지출(TM)에는 포함되지만 총서비스지출(TES)에서는 제외된다. 이는 후술할 정책 링펜스(policy ringfence)와는 구분된다.

반자본지출, 특정 국방지출로 구분된다. 품목 대분류, 중분류는 대부분 유럽통계청 분류와 일치하며,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매핑코드가 OSCAR에 탑재되어 있다. 즉 집행 결과 데이터를 통계화하는데 드는 행정력이 비교적 적다.

2) 시스템 속성정보 관리

영국의 재정체계에서 예산 편성 및 확정 단계에서는 수입 총량 및 향후 계획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지출에 관해서는 생산되는 정보가 품목별로도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하면 적은 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세출예산법안 단계에서 제공되는 사업 내지는 프로그램(programme) 정보 역시 OSCAR에서는 관리대상이 아닌데, 프로그램별 예산 구분은 부처의 자율에 맞춰져 있고 월별 및 연간 결산 정보 산출의 취합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OSCAR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가장 하위 단의 정보는 부처, 실국, 지출한도 여부, 경비 여부 등이 결합되어 표시되는 SEGMENT_L4 코드, 수입/지출 회계정보를 표시하는 CHART_OF_ACCOUNTS_L5 코드이다.

반면 부처에서 월별, 연간 결산에서 입력해야 하는 정보의 속성화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 OSCAR시스템에 탑재된 PESA 통계 작성을 위한 속성정보는 일곱가지이다.

첫 번째는 1장 총지출 기준(TME: Total Managed Expenditure) 통계작성용으로 연간 관리지출(AME: Annually Managemd Expenditure)을 구분하기 위한 정책지표로 6개로 구성된다.

〈표 3-29〉 영국 OSCAR 총지출 기준 통계작성용 코드

AME 정책코드
BBC DOMESTIC SERVICES
FINANCIAL SECTOR INTERVENTIONS
NATIONAL LOTTERY
SOCIAL SECURITY BENEFITS
STUDENT LOANS
TAX CREDITS

자료: OSCAR Annual Database, 2018.

두 번째는 총서비스지출 기준 TES(Total Expenditure on Service) 통계작성을 위한 코드이다.

〈표 3-30〉 영국 OSCAR 총서비스지출 기준 통계작성용 코드

TES 분류 코드
EXPENDITURE THAT FEEDS INTO CAPITAL TES
EXPENDITURE THAT FEEDS INTO CURRENT TES

자료: OSCAR Annual Database, 2018.

세 번째는 보조금 특정 사업을 구분하기 위한 통계속성이다.

〈표 3-31〉 영국 OSCAR 보조금 통계작성용 코드

보조금 특정사업 구분 코드
GLA TRANSPORT
MAINTAINED SIXTH FORM
NON-DOMESTIC RATE PAY
POLICE
PUPIL PREMIUM
REVENUE SUPPORT GRANT
SCHOOL STANDARDS GRANT
SCHOOLS GRANT
STRATEGIC RAIL AUTHORITY
SUPPORTING PEOPLE

자료: OSCAR Annual Database, 2018.

네 번째는 스펀딩리뷰에서 특정 사업군으로 묶인(policy ring-fenced) 사업들을 의미하는 코드이다.

〈표 3-32〉 영국 OSCAR 스펀딩리뷰 사업 코드

사업 코드
BRITISH COUNCIL
CARBON CAPTURE AND STOR
COMMISSIONERS FEES
CONFLICT PREVENTION
NUCLEAR DECOMMISSIONING
OFFICIAL DEVELOPMENT AS
OLYMPICS
PEACEKEEPING
PUPIL PREMIUM
REFERENDUM FUNDING
REGIONAL GROW TH FUND
SCIENCE
UKTI ADMIN

자료: OSCAR Annual Database, 2018.

다섯 번째는 지리정보를 나타내는 코드로 5장 지역별 통계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코드이다.

〈표 3-33〉 영국 OSCAR 지역정보 코드

지역 대분류(PESA_REGIONAL_CODE)	지역 중분류(COVERAGE_LONG_NAME)
REGIONAL	ENGLAND
	ENGLAND & W IRES
	GREAT BRITAIN
	NORTHERN IRELAND
	SCOTLAND
	UNITED KINGDOM
	W IRES

자료: OSCAR Annual Database, 2018.

여섯 번째는 세출의 경제적분류를 통계작성용으로 재분류한 코드로 경제적 분류와 약간 상이하게 매핑되고 있다. 아래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중 분류 69개 코드는 19개 PESA 통계작성용 코드와 매칭된다.

〈표 3-34〉 영국 OSCAR PESA 통계작성용 코드 재분류 예시

통계작성용 코드 PESA_ECONOMIC_GROUP_CODE	세출 경제적 중분류 ECONOMIC_GROUP_LONG_NAME
CAPITAL SUPPORT FOR LOCAL GOVERNMENT (NET)	CAPITAL GRANTS TO LOCAL GOVERNMENT (NET)
	LENDING TO LOCAL GOVERNMENT (NET)
	SUPPORTED CAPITAL EXPENDITURE
CAPITAL SUPPORT FOR PUBLIC CORPORATIONS	CAPITAL GRANTS TO PUBLIC CORPORATION
	INVESTMENT IN PUBLIC CORPORATIONS
	LENDING TO PUBLIC CORPORATIONS (NET)
	PC MARKET AND OVERSEAS BORROWING
CURRENT GRANTS ABROAD (NET)	CURRENT GRANTS OVERSEAS (NET)
	CURRENT GRANTS TO REST OF THE WORLD

자료: OSCAR Annual Database, 2018.

일곱 번째는 현금주의-발생주의 항목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 코드이다.

〈표 3-35〉 영국 OSCAR 현금주의-발생주의 조정 코드

현금 조정 코드 ESTIMATES_CATEGORY_CODE	코드 세분류 ESTIMATES_SUB_CATEGORY_CODE
CASH ADJUSTMENTS	CASH CFER (CAPITAL BUDGET)
	CASH CFER (NON-BUDGET)
	CASH CFER (RESOURCE BUDGET)
	CREDITORS
	DEBTORS
	GRANT-IN-AID
	INVENTORIES
	STUDENT LOANS NOTIONAL

자료: OSCAR Annual Database, 2018.

PESA 통계 작성용 코드 외에 예산 작성용 속성 코드, 통계청 국민계정용 속성, 유럽통계청 통계 분류용 속성 코드 등도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국민계정 통계 작성용 코드, 예산표 작성용 추가 코드는 아래와 같다.

〈표 3-36〉 영국 OSCAR 탑재 국민계정 통계 작성용 대분류 코드

국민계정 대분류 NA_AGGREGATE_CODE	국민계정 통계작성 상세 NA_AGGREGATE_LONG_NAME
PSCE	PUBLIC SECTOR CURRENT EXPENDITURE
PSCR	PUBLIC SECTOR CURRENT RECEIPTS
PSGI	PUBLIC SECTOR GROSS INVESTMENT

자료: OSCAR Annual Database, 2018.

〈표 3-37〉 영국 OSCAR 예산표(Public Sector Accounts Table) 작성용 코드

예산표 코드명 PSAT_CODE	예산표 코드 상세 PSAT_LONG_NAME
CAPITAL GRA	CAPITAL GRANTS (NET) W THIN THE PUBLIC SERVICE
	CAPITAL GRANTS TO AND FROM THE PRIVATE SECTOR
CEGS (CONSU	CURRENT EXPENDITURE ON GOODS AND SERVICE
CURRENT GRA	CURRENT GRANTS (NET) W THIN PUBLIC SECTOR
	CURRENT GRANTS ABROAD
GDFCF	GROSS DOMESTIC FIXED CAPITAL FORMATION
INTEREST AN	INTEREST AND DIVIDENDS PAYABLE
INVENTORIES	INVENTORIES
NET SOCIAL	NET SOCIAL BENEFITS
OTHER CURRE	OTHER CURRENT GRANTS
OTHER MISCE	OTHER MISCELLANEOUS CURRENT TRANSFERS
PSCE UNALLO	PSCE UNALLOCATED PROVISION
PSGI UNALLO	PSGI UNALLOCATED PROVISION
RENT AND MI	RENT AND MISCELLANEOUS CURRENT TRANSFERS
SUBSIDIES	SUBSIDIES
TAXES ON PR	TAXES ON PRODUCTION AND IMPORTS

자료: OSCAR Annual Database, 2018.

이외에 해당 통계자료 작성 시점에 관한 속성 정보 등이 첨부된다.

〈표 3-38〉 영국 OSCAR 기타 코드

코드명	내용	분류 상세
USAGE_CODE	지출계획, 결산 구분	PLANS, OUTTURN, BOTH
STATUS_CODE	부처 작성 초안, 재무부 제안 및 확정 등 상태 구분	DRAFT, PROPOSED, CONFIRMED
VERSION_CODE	해당 연도의 통계 작성 시점 구분	PLANS, R1(1개월차)~R13(결산)
TYPE_CODE	이체·전용·예산분류 개편·조직개편 등 구분 코드	BUDGET COVER TRANSFER BUDGET REGIME CHANGE BUDGET EXCHANGE INTERNAL DEPARTMENTAL CHANGE

자료: OSCAR Annual Database, 2018.

4. 해외 사례 시사점

1) 명확한 관리 목표에 따른 분류 체계상의 정보 관리

예산과 재정사업에 부여하는 속성의 성격은 각국마다 다르다. 미국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의무, 재량지출을 구분하고 연구개발, 교육훈련 등 자본·투자 지출을 식별하는 것은 우리나라 예산편성에서 의무지출 구분, R&D예산을 구분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대국민 정보공개용으로 작성하는 재정사업편람(CFDA)의 경우는 각각의 사업에 대해 색인 형식으로 속성을 자세하게, 그리고 매우 다양하게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benefit.gov 등에서 사업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영국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각 부처별, 프로그램별 사업 정보 만이 세출예산 추계(Main Supply Estimate)에서 공개될 뿐이지만, 월별 마감, 연간 결산 정보는 각 지출목별로 매우 자세하게 입력하도

록 하고 있다. 캐나다는 예산 편성, 정보공개, 결산을 위한 정보 생산 및 공개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과 정보는 중앙 재정당국이 취합해서 공개를 하고 있다.

요약하면 속성정보 관리의 목적이 미국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예산 정보 관리와 대국민 재정사업 정보공개를 위한 색인성 사업 속성 관리가 구분되어 있었다. 영국은 결산에서 정보공개를 위한 통계생산이 주목적이다. 캐나다는 재정사업 정보 공개는 부처에 위임되어 있으며 결산 성과관리 정보는 의사결정자, 대국민 정보공개를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즉 세 국가 모두 명확한 목적 하에 속성 정보가 정의되고 관리가 되고 있다.

속성의 분류 및 관리 역시 매우 체계적이다. 미국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리하는 속성의 경우 예산 준비 및 집행지침(A-11)에 매우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으며, 대국민 정보공개용은 재정사업편람 작성 매뉴얼에 수혜자 구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관리체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의 속성정보는 관리예산처로 일원화되어 있고, 재정사업편람은 관리예산처와 조달청(GSA)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물론, 분류체계가 체계적이라고 해서 여러 사업들이 중복적으로 속성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색인 기반 분류체계가 예산사업을 배타적으로 구분해주는 분류체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재정사업편람의 재정사업들은 복수로 구분되는 수혜자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 색인(subject index) 수준에서도 개별 사업이 여러 색인을 가지며 하나의 색인에 여러 사업들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분류체계는 예산 단계에서 사업의 수혜자별 구분을 하기 어렵게 해주는 요인이 되지만 대국민 검색기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매우 유리한 방식이다.

2) 시스템 지원과 정보공개 연계

캐나다가 제외한 2개국은 속성에 의한 재정관리를 표준화하여 명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예산편성은 관리예산처가 관리하는 MAX A-11 Data Entry 시스템을 이용하며, 재정사업편람 작성은 조달청이 관리하는 SAMS에 통합되어 있다. 2014년 이전에는 MAX A-11 Data Entry의 프로그램 활동(program activity)과 SAMS(구 CFDA작성시스템)의 연방프로그램(federal program)의 정의와 범주가 달라 양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정보가 호환되지 않았으나, DATA Act 이후 집행 단계에서 건별자료와 결합이 이루어지는 DATA Act Broker를 도입해,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스템간에 생산되는 정보를 결합하여 공개하고 있다.

영국 역시 관련 속성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중앙 재정 단위의 OSCAR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Online System for Central Accounting and Reporting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예산편성 만을 하기 위한 시스템은 아니다. 단 결산 단계에서 각종 공개용 통계를 생성하기 위한 다양한 품목별 분류체계를 탑재하고 있으며, 부처지출한도(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 구분, 각종 정책사업군(policy ring-fencing) 구분 정보를 담고 있다. OSCAR는 명백히 정보서비스를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으로서 결산 통계를 국민에게 신속히 보여줌과 동시에 예산책임청(OBR: Office of Budget Responsibility)의 지출 추계 즉 의사결정에도 사용한다. 즉 이 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정보를 예산과정에 활용하고 있다.

이는 속성정보를 각 부처별로 관리하고 별도의 중앙 차원에서의 단일의 의사결정 지원 및 대국민 정보 공개를 위한 시스템이 없는 캐나다의 재정정보 체계와 비교된다. 캐나다는 미국과 유사한 사업 설명자료 표준화를 시도한 적이 있으나 실패했다. 이는 재정정보 생산을 위해서는 각종 지침 등이 제도적으로 선결이 되어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캐나다는 부처별 사업정보공개를 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사업 검색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중앙 취합이 없으므로 예산 단계에서 미국 수준의 정보가 산출되지 못하고, 결산 단계에서는 영국만큼 정보가 산출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산과정에 정보를 활용하고, 대국민 정보 공개 수준을 높이려면 해외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시스템 기반으로 사업 정보를 관리하고, 공통 체계에 따라 요약 색인을 분류하는 것은 적시에 재정정보를 활용하거나 재정통계를 다양하게 산출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 3-39〉 주요국의 속성정보 관리 주체 및 목적 요약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주관	·기획재정부	·관리예산처	·관리예산처, 조달청	·재무위원회	·재무부 ·통계청
시스템	·dBrain	·MAX A-11 Data Entry	·SAMS(State Award Management System)	·없음 (부처마다 별도로 구축) ·재무위원회는 부처에게 FMIS 운영을 위한 지침을 하달	·OSCAR(Online System for Central Accounting and Reporting)
속성 정보	·예산 사업 속성	·예산편성용 속성	·사업별 속성	·프로그램 성과 ·사업별 속성	·자세한 경제 성질별 분류
관리 목적	·예산편성 ·집행점검 ·결산	·예산 편성	·정보제공	·예산편성 및 정보제공	·정보 제공
		·대통령 예산안 작성 및 제출	·재정사업편람 (CFDA) 작성 ·benefits.gov 등 사업정보 공개원천자료 관리	·분야별 사업 정보 관리 ·프로그램 성과 정보 관리	·통계집을 시기에 맞춰 제작 및 공개
관리 초점	·재정의 전단계	·예산단계	·집행단계	·예산 및 결산	·결산 이후

주요 특징	·예산 편성과 관리 기능에 집중 ·수요자보다는 관리 중심의 속성 정보	·속성 대분류 ·중장기전망	·상세 사업 정보 ·수요자 속성정보	·수요자 속성 (부처별) ·성과관리 속성 (중앙)	·유럽통계청, 국제회계기준 에 맞추기 위한 별도 속성체계 구축
		·USASpending.gov에서 건별 자료와 결합		·프로그램 성과 정보 대쉬 보드 ·분야별 맞춤검색	·데이터 원문 공개
정보 공개 주기	·(예산, 결산) 연1회 ·(집행)월1회	·연 1회(2월)	·연 1회(10월)	·연 1회 (부처마다 다름)	·매달 원문 공개(2개월) ·회기종료 후 3개월 (PESA) ·5개월(연간데 이터원문) ·7개월(CRA) ·1년(W ㄱ)등

Ⅳ 속성분류 기반 재정사업정보 관리 방안

1. 속성 분류체계 재구조화

1) 속성 추출 및 재분류

해외 주요국 사례를 통해, 재정사업별로 요약색인 정보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것이 의사결정 지원 및 대국민 재정정보 공개에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재정사업들을 검토하여 모든 사업에 부여할 수 있는 공통 속성을 추출, 일관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공통 속성을 일관된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류하여야 개별 재정사업에 속성을 일관되게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인건비, 총사업비 등 나열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행 재정사업 속성정보 역시 공통 속성분류체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 사업에 공통으로 부여할 수 있는 색인성 속성을 추출하기 위해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세부지침(이하 지침),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게시된 부처별 사업설명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업관리시스템 자료(이하 dBrain속성) 등을 검토했다. 부처별 사업설명자료는,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사업목표, 사업수행방식, 수혜자 중심으로 속성을 추출한 뒤 이들 속성을 정책 지원 및 목표, 사업 수행방식, 수혜자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분류했다. 그리고 지침과 dBrain 속성 중 관리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속성을 위에서 추출한 속성 분류체계에 맞추어 재분류했다.

그리고 색인기반 사업분류의 예시로 별도의 공통사업군 예시로서 일자리사업의 분류 방안을 탐색하고 보건복지부의 사업을 대상으로 속성에 의한 사업 분류체계를 적용하여보도록 한다.

〈표 4-1〉 사업요약정보 분류체계 개선 방향

구분	문제점	개선방향
프로그램 예산체계	경직적 빠른 통계생산 어려움	· 속성 분류체계로 보완
사업분류체계	나열식 관리	· 기존의 사업 속성을 체계적으로 재분류
	일부 정책사업은 내역사업으로 구분	· 내역사업 예산액 별도 관리 *중장기 과제로 과목구조 개편 수행
	세부사업의 분류체계 미비	· 단계별 속성 분류 체계 신규 마련 · 최종 귀착, 수혜자 중심 분류체계 마련 － 사업설명자료, 해외사례 참조

분류체계는 아래 <그림 4-1>에 요약되어 있다. 속성정보의 분류체계는 1단계 정책지원, 2단계 사업속성, 3단계 수혜자 속성에 따라 구조화하도록 한다. 1단계 정책지원은 기업에 대한 지원인 산업지원과 개인에 대한 지원인 복지지원 등 5개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세부 속성을 분류한다. 2단계 사업속성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달방식 또는 체계에 관한 속성으로 정책지원 유형에 따른 속성과 전사업 공통 속성으로 구분해 세부 속성을 분류한다. 그리고 3단계 수혜자 속성은 정책대상의 경제적 특성을 분류한 것으로, 하나의 사업에 복수의 수혜자 속성이 지정될 수 있도록 분류한다.

사업별로 부여하는 속성에 이와 같은 분류를 적용하는 것은 개별 재정사업에 속성을 일관된 기준에 따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사업은 정책 목적을 가지고 편성되고, 사업특성과 전달체계를 따라 집행되며, 최종적으로 수혜자에게 귀착되어 집행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따라 속성을 분류한다.

이와 같은 사업의 속성 분류는 재정사업관리자가 입력하는 정보의 순서와도 관련이 있다. 1단계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2단계, 3단계에서 입력해야 하는 정보가 다르므로, 각 순서에서 선택하게 되는 속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속성들 간의 기입순서와 위계를 부여함으로써, 특정 사업에 속성들이 일관된 기준으로 부여 될 수 있다.

〈그림 4-1〉 속성 분류 체계



세분류		수혜자 속성		
수당 및 복지성급여금 우체/현물 자금융보험 육훈련 복 의료 다	기업 규모			
	영리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비영리	대학, 병원, 기타		
	기업 일반			
	업종			
	제조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보건 의료
	문화 및 관광	농림수산	기타	
	수혜자 속성			
	연령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연령무관	
소득기준	1분위	차상위		
기타 개인	보훈	장애		
단체 지원				
지원 분야				
	산업 지원			
	문화 복지지원			
	국방			
	기타			
비 발 영지원 자치출				
수행방식	(주관기관)			
	직접	중앙부처		
	보조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위탁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출연	공공기관	민간	
	출자	공공기관	민간	
	융자	공공기관	민간	
	기타			

가) 1단계 정책 목표에 따른 분류

1단계에 해당하는 정책 분류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분야, 부분,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분류에 해당한다. 개별 재정사업을 먼저 기업, 개인, 해외 등으로 직접 수혜가 돌아가는 직접 지원과, 각종 시설·자산 취득 사업과 직접 행정사업인 간접사업으로 구분하고, 수혜자 별 정책구분을 세분화하면서 사업을 분류해나가는 것이다.

먼저 직접지원 사업은 크게 산업에 대한 지원과 복지·개인 지원으로 구분한다. 물론 둘 사이에 이론적, 실무적으로 명료한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R&D인력개발비 사업과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은 사실 모두 개인에게 수혜가 가는 사업이다. 단 R&D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을 통해 개인의 능력개발에 사용되는 사업비인 반면,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에 참가하는 개인은 소속 기업이 없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정책 목적에 비추어볼 때 R&D인력개발 사업은 연구개발이라는 정책 목적에 따라 특정 유형의 기업에게 주어지는 반면, 실업자 직업훈련은 훈련의 사업 내용과는 별개로 개인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정책 목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R&D인력개발 사업은 산업지원 사업으로,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은 복지·개인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산업지원 유형의 정책지원은 목적에 따라 산업 분야 지역발전, 산업별 육성 지원, 창업지원, 기타 일반산업 지원의 속성으로 구분한다. 산업지원 유형을 이와 같이 추가로 구분하는 것은 정책 목적이 지역 단위의 산업 육성인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인가, 기존 기업이 아닌 신규 창업 지원인가 등 산업 정책의 세부 정책 목표에 따른 것이다. 지역발전 유형은 산업단지, 자유무역단지 등 외에도 지역산업 육성, 지역전문가 육성 등 지역 단위로 투입되는 재정사업 유형을 묶기 위한 분류이며, 산업별 육성 지원 유형은 ICT, 관광, 의료 등 특정 산업 분야를 명시하여 지원하는 정책들을 묶기 위한 분류이

다. 창업지원은 지역, 산업 유형에 상관없이 창업기업을 명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기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 등이 해당한다. 기타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로 혁신성장 관련 사업, 각종 중소기업 대상 융자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인·복지지원 사업 유형은 고용지원, 사회보장급여, 주택, 보건, 교육, 기타 교육지원으로 구분한다. 고용지원은 실업자 지원, 근로환경 개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유형으로, 프로그램 예산체계 상의 고용 부문과 겹치거나 타 분야의 현금성 지급이나 직업훈련, 직접일자리 사업 등도 포괄되어 범위가 조금 더 넓다. 사회보장급여 사업은 각종 제수당, 복지성 급여와 연금 사업을 구분하기 위한 카테고리이다. 주택 유형은 복지 분야의 주택 사업 외에 연금기금 등의 주택사업 등을 포함하면서 주택 부문의 경비성 사업을 제외하기 위한 구분이다. 보건, 교육은 해당 분야에서 위 사업들을 제외하고서도 남는 개인 대상의 사업을 분류하기 위한 속성이다.

개인·복지지원 유형의 세부속성은 고용 지원, 급여지원이라는 정책 목표 관련 속성과 주택, 보건, 교육 등 지원 대상 분야 속성으로 구분된다. 정책목표 속성과 대상분야 속성이 혼재된 이유는 개인·복지지원 유형 사업들이 산업지원 유형 사업과는 다르게 정책 목표보다는 지원 대상 즉 수혜자 중심으로 사업이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복지지원 유형은 정책지원 속성으로는 정책의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활용하고 2단계, 3단계에서 사업속성, 세분류의 수혜자 속성 등을 더 세분화하여 정책지원 속성분류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설 및 자산 지원은 정부의 직접 사업으로 자산 형성을 통해 경제, 문화, 복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통적인 시설, 자산 지원 사업은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 또는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형성 측면에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재정사업 체계에서 SOC는 16대 분야 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만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자본지출은 특정 지출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책

성격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본 유형 분류에서는 이를 확장해 복지·산업 분야의 어린이집, 양로원 등의 각종 시설물, 건물 취득은 물론 관공서의 각종 행정 청사, 관사 취득 및 운영 사업을 이 유형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그리고 국방 분야, 119 장비 지원 등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유형 자산 취득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이나 개인 지원이라기보다는 국방, 안전이라는 목적을 위한 자산 취득 및 소비를 하는 자본지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유형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그리고 자산 및 시설의 취득 외에도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 역시 이 유형으로 분류한다.²²⁾

국제협력 지원 유형은 수혜자가 국내가 아닌 해외이거나, 해외 협력을 통해서 수행되는 사업들을 분류하기 위한 속성이다. 대분류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대북사업, 기타 국제협력으로 나눈다. ODA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공공기관 또는 집행기관을 통해 개발도상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한 자금으로 정의되며, 세부사업에 ODA 표시를 한 사업들에 대해 명시적으로 해당 속성을 부여한다. 국제기구 부담금이라고 해도 ODA에 포함되지 않는 국제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기타 국제협력 속성을 부여한다. 이외에 각종 북한관련 사업들은 통일부, 외교부의 사업이 아니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등의 분야에 포함되더라도 해당 속성을 부여한다.

마지막은 행정·정책 일반 지원 유형이다. 이 속성이 부여되는 사업은 산업지원, 사회복지지원, 시설 및 자산지원, 국제협력 지원 외의 사업으로 각종 간접비성 경비에 해당한다. 그리고 각종 규제 운영을 위한 제 경비, 정책개발 및 통계 조사, 각종 위원회 지원 등의 사업도 이 속성이 부여되며, 입법부, 사법부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활동도 마찬가지이다. 교부금·교부세는 지방자치 지원 사업 속성을 부여한다.

이 유형의 사업은 입법사법, 지방자치지원, 정보화, 행정정책 일반이라는 대분류의 하위범주 보다는 사업속성 상의 각종 운영 유형 분류가 중요하다.

22) 전 재정사업 중 시설 및 자산 취득·유지를 구분하는 것은 국방 분야의 부문을 전력유지(경상경비)와 방위력개선(자산취득)으로 나누는 국방기획예산(PPBSS)의 분류방식과 유사한 것이다(하연섭, 2017).

세부 사업 유형으로는 퇴직금과 건강보험부담금을 포함하는 인건비, 경상경비, 각종 정책 및 계획 수립 및 지원²³⁾, 위원회 운영 지원, 규제, 체계 운영 등 각종 정책 운영사업, 징수위탁, 행정역량개발 사업, 이자 상환 사업 등에 이 속성을 부여한다.

정책 성격별로 속성을 부여할 때, 하나의 사업에 속성이 2개 이상 부여되는 경우(중첩)가 발생한다. 사회복지 지원 속성 사업들 내에서 취약계층지원이 중첩으로 부여가 되는 경우는, 3단계 수혜자 속성에서 소득 기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중첩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R&D 속성은 산업지원 유형 내에서 지역발전, 산업육성 등 하위 분류와 상관없이 부여되며, 정보화, 국제협력 사업에서도 부여되기도 한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경우는 산업지원 유형, 복지 정책 유형 속성 사업에 모두 부여될 수 있다. 재난안전 속성은 산업지원에 해당하는 재난안전 연구개발, 시설 및 자산 지원에 해당하는 재난복구비, 행정지원에 해당하는 재난대비 훈련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부여될 수 있다. 이처럼 정책 목표에 가까우면서 다른 속성과 중첩으로 부여되는 속성은 1단계 속성 목록에 포함시키고 중복 속성으로 사업에 부여하도록 한다.

나) 2단계 사업 속성에 따른 분류

2단계 사업속성 분류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달 방식 또는 체계를 요약하여 속성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사업 속성은 정책지원의 유형에 따른 속성과, 전사업 공통 속성으로 분류한다. 정책지원 유형에 따른 속성을 다르게 가져가는 이유는, 산업지원, 사회복지 지원, 시설 및 자산 지원, 국제협력 지원, 입법·사법·행정지원 등 유형 구분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 속성, 수행방식 속성 등은 전사업에 대해 공통으로 부여한다.

23) 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를 포함한다.

산업 지원 유형의 지원방식은 융자 및 금융지원, 인적자원 개발, 산업단지/자유무역지역, 기타 산업 일반으로 구분한다. 이는 목적에 따른 정책구분의 하위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방식을 요약 설명해주는 속성으로 기능한다. 융자 및 금융지원은 융자(대출) 외에 이차보전, 신용보증 등의 보험 사업을 포함한다. 인적자원개발 사업은 각종 인력양성 및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한다.

특정 유형의 정책 지원 사업은 특정 방식의 지원 유형 속성만을 포함하도록 분류한다. 융자 및 금융지원은 일반 또는 특정 산업유형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산업단지/자유무역지역 정책은 지역발전 정책속성에 포함되므로 기타 일반산업 지원 속성은 부여하지 않는다. 창업지원 정책 유형은 산업단지 지원방식과 중복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산업단지 지원의 속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음은 복지·개인 지원이다. 이 유형은 사업 속성을 다시 현금지급과 서비스 유형으로 구분하고, 현금 지급은 제수당 및 급여, 연금 사업으로, 서비스 사업은 바우처, 융자금융, 교육훈련, 기타 유형으로 구분한다. 현금과 서비스의 구분은 개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지, 별도의 융자나 훈련 등의 서비스 제공인지를 구분하는 것으로 OECD SOCX(SOCial eXpenditure)의 현금(cash benefits)과 서비스(benefits in kind) 구분을 참조한 것이다.²⁴⁾ 서비스 유형은 현금 또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분류했다. 다만 제수당 및 급여, 연금의 구분은 정책이 사용하는 명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9대 복지급여에는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이 포함되어 연금과 수당이 급여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 연금을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 연금을 지원 방식의 하나로 구분하도록 한다. 서비스 유형

24) 마찬가지로 SOCX는 수혜자를 노령자(old ages), 보훈(survivors), 장애인/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하는 취약계층(Incapacity-related), 보건, 적극적 노동시장개입, 실업 등으로 구분한다. 적극적 노동시장개입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정책구분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며, 실업지원은 고용지원에 포함된다. 즉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 지원 유형의 속성은 OECD SOCX를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참조한 형태이다.

역시 통일된 기준이 있다고는 하기 어려우므로, 넓은 범위에서 구분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구분할 경우 기타 속성에 포함되는 서비스가 많아지는데, 이는 수혜자 구분을 통해 추가로 세분화하도록 한다.

시설 및 자산 지원은 대상이 시설인지 자산인지, 그리고 취득인지 유지·운영인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시설 취득은 철도, 양로원, 청사 등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시설 건설 및 취득을 포함한다. 유지 및 운영은 마찬가지로 철도 운영지원, 청사 임차 및 관리, 양로원 지원 등 각종 유지 운영비를 포괄하는 사업속성이 된다. 자산취득은 시설물 외의 철도 차량, 탐사선 등 선박 등의 취득 사업이 해당하며, 이의 유지 사업은 유지 및 운영 속성을 부여한다. 청사 및 국유재산 정책 유형에는 청사 외에 자산 취득이나 운영이 없으므로 해당 속성은 기입하지 않는다.

국제협력 지원 사업의 경우는 지원 방식을 국제기구 분담금, 차관(융자), 공동사업, 인적교류로 구분한다. ODA 사업은 국제기구 분담금 형식이 될 수도, 공동 개발, 협력 등의 사업이 될 수 있다. 반면 차관 사업의 경우는 ODA가 아닌 기타 국제협력 정책 지원 유형에 포함된다. 대북사업 정책유형은 차관, 공동사업, 인적교류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은 행정·정책 일반 지원 유형의 사업 속성이다. 이 유형의 사업은 산업지원, 사회복지 지원, 시설 및 자산지원, 국제협력 지원 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이 부여 대상이다. 이 유형은 인건비 등 크게 9개의 속성을 부여한다.

인건비와 경상경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 상의 인건비, 기본경비로 지정되는 사업 분류를 확장한 개념이다. 기본적으로 인건비성 경비인 퇴직 수당(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능 연금의 퇴직 후 급여), 소속기관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을 포함시키며, 사업성 사업비에 편성된 품목 상 인건비를 전부 포함하도록 한다.²⁵⁾ 인건비와 경상경비의 구분은 가장 기본적인 간접비 구분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

25) 이 경우에는 개별 품목을 사업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다음은 행정사무위탁, 행정지원 등 행정사무 지원비 사업의 구분이다. 이때의 위탁은 응급의료서비스의 위탁처럼 서비스 자체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 위탁 등 단순 사무의 위탁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행정사무 지원 비용 역시 세부사업 명으로 행정지원을 명시하는 사업이거나, 기관의 운영비 지원, 위원회의 경상경비 지원, 부담금 징수관리 등을 포함하는 사업에 대한 속성으로 정의한다.

정책개발은 계획 및 정책수립,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통계 및 자료 수집과 평가, 자료관리 사업을 포함하는 사업 유형이다. 여기에는 국토종합계획 수립, 환경기초조사연구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정책운영지원은 정책대상에게 직접 수혜가 가지 않는 각종 제도 운영, 제도 개선, 각종 규제 행정 지원 사업을 포함하는 속성이다.

행정역량강화는 각 부처의 역량강화,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서비스 개선 등의 사업비 속성이다. 정책평가가 아닌 행정성과관리 사업 역시 이 속성에 포함된다. 상환·이자 지출은 각종 이자 지출 및 국채 이자 상환 등을 포함하는 사업 유형이다.

기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들로 각종 제도 및 정책 교육·홍보, 행사성 사업, 수입대체경비 사업, 예비비 및 예비금 사업 등에 부여되는 속성이다.

다음은 모든 사업에 대해 공통으로 부여되는 사업속성이다. 사업 공통 속성은 사업의 정책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닌 속성으로 의무지출 여부, 신규/종료사업 여부, 공모 여부, 주요관리대상사업 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여부 등 주로 법규나 지침, 규칙에서 부여되는 속성들이다. 의무지출 여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향후 5년의 지출을 추계하는 대상사업이다. 의무지출 여부에 대한 속성은 전술했듯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속성으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사업 정보에 해당한다. 주요관리대상 사업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에서 재정관리 점검 목적으로 지정되는 사업으로 조기집행 대상 사업이다. 공모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 중 민간 사업자

를 공모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하지 않는 사업과 구분할 필요에 의해 부여되는 속성이다.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경우는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500억원 이상인 토목, 200억원 이상인 건축 사업이다. 이 사업속성은 SOC, 각종 시설 취득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속성이다.

다음은 2단계 수행방식에 대한 속성 구분이다. 수행 방식에 대한 구분은 사업의 전달 체계에 대한 정보표시 방식을 통일하는 동시에 사업 수행기관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행 방식은 직접, 보조, 위탁, 출연, 출자, 용자, 기타로 구분한다. 직접 수행은 정부가 인건비, 경비로 소모하거나 직접 국민에게 보상금 형태로 이전하거나, 건설사업, 용역사업을 직접 발주하는 유형의 사업이다. 보조사업은 자치단체, 민간,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다. 일부 민간 위탁 사업 중에서는 공공기관이 주관으로 지정되는 사업이 있으므로 구분한다. 위탁 사업은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위탁으로 구분하여 해당 속성을 부여한다. 출연은 법으로 규정된 공공기관 또는 기금에 출연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업에 규정한 것에 맞게끔 속성을 부여한다. 출자, 용자 역시 대상 기관이 공공기관인지, 민간인지에 맞추어 속성을 부여 한다.

사업속성부터는 광범위하게 여러 사업 속성이 중복 부여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종 기관으로 출연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경상운영비와 사업비가 하나의 사업에 포함되어 편성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해당 사업에 운영비, 사업비 속성을 부여하고 각목 명세서를 통해 예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세부사업의 품목별 분류로도 분리가 어려운 사업들이 있다. 예를 들어 창업지원 유형의 창업 성공패키지는 각종 코칭 및 교육 사업 예산 비중이 높지만 개별 기업에 지원되는 비용을 제품개발 관련 기술 및 장비 획득 사업도 포함하고 있어 일반 지원 사업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업 속성의 중복은 재정사업 체계를 일관성 있게 갖추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현행 프로그램 예산제도 상의 재정사업 체계에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최대한 일관성 있게 속성을 부여하면서 중복을 회피할 필요가 있다. 아래 예시는 정책지원 대분류별 중분류 사업속성 구분의 예시사업이다. 분류의 기준은 분류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재정사업을 분류하여 정보를 생산하려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 학자, 실무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심도 있는 분류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표 4-2〉 산업지원 정책 유형 사업속성별 사업 예시

정책분류	사업속성	사업 예시
산업 분야 지역발전	인적자원 개발	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단지/자유무역지역	서남권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농림수산식품부)
	기타 산업 일반	광역협력산업육성(산업통상자원부)
산업별 육성 지원	융자 및 금융지원	관광산업 금융지원(문화체육관광부)
	인적자원 개발	ICT글로벌인재양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단지/자유무역지역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보건복지부)
	기타 산업 일반	고령친화산업육성(고용노동부)
창업 지원	융자 및 금융지원	창업기업자금(중소벤처기업부)
	인적자원 개발	창업성공패키지(중소벤처기업부)
	기타 산업 일반	지식기반 창업촉진(특허청)
기타 일반 산업 지원	융자 및 금융지원	신성장기반자금(중소벤처기업부)
	인적자원 개발	4차산업혁명 미래유망분야선도 고졸인력 양성(고용노동부)
	기타 산업 일반	혁신성장 활성화 사업(산업통상자원부)

〈표 4-3〉 사회복지 지원 정책 유형 사업속성별 사업 예시

정책분류	사업속성		사업 예시
고용지원	현금 지급	제수당 및 급여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지급(통일부) 구직급여(고용노동부)
		기타	광역구직활동지원금(고용노동부)
	서비스	융자금용	고용장려금(융자)(고용노동부)
		교육훈련	직업훈련(법무부)
		기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보건복지부)
사회보장 급여	현금 지급	제수당 및 급여	장애수당(기초)(보건복지부) 실업크레딧(보건복지부)
		연금	기초연금지급(보건복지부)
	서비스	복지성 급여	주거급여지원(국토교통부)
주택	현금 지급	복지성 급여	주거급여지원(국토교통부)
		융자금용	전세임대(융자)(국토교통부)
	서비스	기타	도시재생사업 지원(국토교통부)
보건의료	현금 지급	제수당 및 급여	의료급여경상보조(보건복지부)
		교육훈련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보건복지부)
	서비스	기타	감염병 예방관리(보건복지부)
교육	현금 지급	제수당 및 급여	교육급여(교육부)
	서비스	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지원(교육부)
		융자금용	국고대여학자금융자(교육부)
		교육훈련	영재교육지원사업(교육부)
		기타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타복지 지원	현금 지급	제수당	6.25자녀수당(국가보훈처) 복지성 급여
		연금	퇴직급여(인사혁신처)
	서비스	바우처	에너지바우처(산업통상자원부)
		융자금용	제대군인대부(융자)(국가보훈처)
		교육훈련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통일부)
		기타	입양아동 가족지원(기획재정부) 다함께 돌봄 사업(보건복지부)

〈표 4-4〉 시설 및 자산지원 정책 유형 사업속성별 사업 예시

정책분류	사업속성	사업 예시
SOC 건설 및 유지	시설 건설 및 취득	경부고속철도2단계(국토교통부)
	시설 유지 및 운영	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국토교통부)
	자산 취득	철도 수송차량구입(국토교통부)
	자산 유지 및 운영	철도교통관제시설운영위탁(국토교통부)
청사 및 국유재산	시설 건설 및 취득	통계청 관사시설 취득(통계청)
	시설 유지 및 운영	청사시설관리(경찰청)
기타 자산 취득 및 유지	시설 건설 및 취득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교육부)
	시설 유지 및 운영	하수관로정비BTL사업임대료지급(환경부)
	자산 취득	3D/4D물리탐사연구선 건조사업(산업통상자원부)
	자산 유지 및 운영	군사시설개선(국방부)

〈표 4-5〉 국제협력 지원 정책 유형 사업속성별 사업 예시

정책분류	사업속성	사업 예시
ODA	국제기구 분담금	WMO국가분담금(기상청)
	공동 사업	농제농업협력(농림축산식품부)
	인적 교류	개발도상국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문화체육관광부)
대북사업	차관	경협기반(통일부)
	공동 사업	남북산림협력사업(산림청)
	인적 교류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문화재청)
기타 국제협력	국제기구 분담금	국제기구분담금(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아시아차관(기획재정부)
	공동 사업	해양과학국제협력(해양수산부)
	인적 교류	글로벌인적교류(외교부)

〈표 4-6〉 행정사업 지원 정책 유형 사업속성별 사업 예시

사업 속성	사업 예시
인건비	본부인건비(산업통상자원부)
경상경비	119구조구급국기본경비(소방청)
행정사무위탁	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비(보건복지부)
정책개발	교통정책 종합연구(국토교통부)
행정지원	관세행정활동지원(관세청)
정책운영지원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공정거래위원회)
행정역량강화	행정능률 향상 및 능력개발(국토교통부)
상환·이자지출	지급이자와 반환금(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타	예비비(기획재정부), 전국(소년)체전지원(문화체육관광부)

다) 3단계 수혜자 속성 분류

수혜자 속성은 재정사업 속성 분류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자 속성이 3단계 분류체계 최하단에 위치한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최종 귀착으로서 수혜자는 편성(목적)-집행-결과(귀착)의 정책 집행 단계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점, 세부사업 관리자의 속성입력 순서과도 관계가 있다. 그리고 대체로 수혜자 속성은 특정 사업에 대해 단일의 속성보다는 복수의 속성이 부여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연구개발(R&D)사업은 특정 업종을 지원하지 않는 지역 또는 인적자원 개발 유형 사업들의 경우 산, 학, 연 및 합동이 수혜자가 된다. 이 경우는 영리, 비영리 등 법인격 속성, 중소기업, 벤처, 소상공인 등 기업 규모 속성, 제조업, 에너지, 건설업 등 업종 속성을 무시하고 기업 일반 속성으로 부여한다.

산업 지원 예산의 경우 영리, 비영리 등 기업 법인격에 따른 분류, 영리 기업의 규모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류, 비영리 대상 교육기관(학원·대학), 병원, 기타 유형으로 분류한다. 수혜자 속성이 개별 사업에 2개 이상 중복적으로 부여될 수 있지만, 수혜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구분하여 사업군을

나누어 통계등을 산출하는 한편 이들 사업군을 대상으로 향후 추가적인 관리 자료 범주를 사업군별로 표준화하여 확대할 수 있다.

복지·개인 지원의 수혜자 속성 부여와 관리를 통해서 사업군을 더 정교하게 구분할 수 있다. 수혜자 속성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연령 무관 등 연령기준, 1분위, 차상위 등 소득기준, 보훈, 장애 등 기타 개인, 그리고 단체지원으로 구분한다. 물론 노인단체 지원 사업과 같이 노인 속성이 단체지원 속성과 함께 부여되기도 하며, 각종 복지급여, 수당 정책 등의 일부는 연령 기준과 소득 기준이 중첩되기도 한다. 대상별 복지전달체계는 세부사업보다는 내역사업 수준에서 더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사업 체계 상의 세부사업을 모두 수혜자 기준으로 나누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중복부여를 통해서도 얼마나 사업들의 수혜자가 중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유사 사업군을 묶어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해야 의사결정자 및 대국민 정보 생산 및 제공이 가능하다.

마지막은 시설 및 자산 지원의 지원분야 수혜 정보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 및 자산 지원 유형의 지원 분야를 산업지원, 문화 복지지원, 국방, 기타로 구분했다. 산업지원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환경 분야, 국방은 국방 분야, 문화 복지지원은 문화·체육·관광 및 복지분야로 크게 분류한 것으로, 분류 목적에 따라 더 다양한 구분 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 가령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문화 복지지원과 기타 유형으로 포함되게 된다.

라) 현행 속성의 재분류

다음은 현재 dBrain의 사업 속성,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의 사업 유형을 위 분류체계에 맞게 재분류하는 것이다. 재분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7〉 속성분류 및 기입 방식 개선안 신규 대조표

구분	현행 속성	개선
공식 예산체계	·프로그램예산	·좌동
	·품목별 예산	·좌동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 작성 세부 지침	·사업 유형	·분류 개선
	·인건비 ·총액인건비 ·출연·보조기관 인건비 및 경상비	·정책지원(행정정책일반지원)사업속성(운영유형)인건비)
	·기본경비 ·수입대체경비	·정책지원(행정정책일반지원)사업속성(운영유형)경상경비)
	·통계사업	·정책지원(행정정책일반지원)사업속성(운영유형)정책개발)
	·행사지원사업	·정책지원(행정정책일반지원)사업속성(운영유형)기타)
	·성인지 예산서 작성대상	·정책지원(행정정책일반지원)사업속성(공통)
	·민간보조 ·자치단체보조	·정책지원(행정정책일반지원)사업속성(수행방식)
	·연구개발사업 ·일자리사업	·정책지원(공통속성)
	·국제개발협력사업	·정책지원(국제협력지원)ODA)
	·정보화사업	·정책지원(행정정책일반지원)정보화)
	·총액계상 ·지분취득 ·투자	·정책지원(시설및자산지원)

	·임대형민자	·사업속성(공통>BTL)
	·신규사업	·사업속성(공통>당해연도 신규사업)
	·바우처	·정책지원(복지개인지원)>지원방식(서비스)바우처/현물)
	·국유재산관리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프로그램예산체계에서 구분
dBrain 사업관리 시스템	·의무지출	·사업속성(공통>의무지출)
	·주요관리대상사업	·사업속성(공통>주요관리대상사업)
	·일자리사업 ·연구개발사업	·과거 지침으로 설계된 속성을 현행 지침에 맞게 현행화 ·현행지침에 맞도록 속성 입력 후 내역사업 예산액 입력
	·재난안전사업 ·총사업비사업	·내역사업 해당 예산액 입력
	·정책구분(4대강, 글로벌, 녹색성장, 저출산고령화, 다문화 등)	·미사용 코드 폐지 ·국정 과제의 경우 변화에 따라 변경 운영
	·기타 주관식 기입속성	·사업목적: 세부사업 설명자료와 동일하게 입력 ·입력값이 모호한 필드 폐지(사업운영 기본방향 설명 등) ·사업규모: 총사업비사업, R&D사업, 보조사업 등은 사업기간과 다년간 사업비 입력 ·성과정보: 사업유형에 따라 표준화하여 신규필드생성 ·지역예산: GIS 등 필요정보 연계
신규 속성	·수혜자 속성	·사업별로 표준화된 속성 외에 구체적인 수혜자 정보는 부처에서 주관식 필드로 입력
입력방식	·표준화 지침 없고 주관식 필드에 대한 작성지침 없음	·공통 속성분류는 각 속성별로 코드화하고 관리 ·공통이 아닌 사업 일반색인은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입력 ·주관식 기입의 경우는 사업 목표, 성과정보 등 일부 필드에 대해 사업 유형별로 표준화 지침에 의한 관리 필요

이 체계 분류에 따라 기존의 의무지출, 일자리 사업 등의 색인 속성을 각 세부사업에 부여한다. 이 경우 체계적으로 속성 부여를 하게 됨으로서 각 세부사업을 요약해 보여줌과 동시에, 여러 사업을 묶어 통계를 산출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공통색인 분류체계 사업별 속성 부여의 예시이다.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분야, 부문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각 단계별로 사업 정보가 입력이 한다. 이를 통해 산업분야의 복지, 각종 사업 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

〈그림 4-2〉 속성 분류 적용 예시



1단계 정책지원 유형별, 2단계 사업속성별, 3단계 수혜자 속성별 유형분

류체계는 각 재정사업에 대해 하단으로 올수록 중복 속성 부여 빈도가 높아진다. 물론 정책지원 유형에서 중복속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중복 속성을 별도의 정책 공통속성인 R&D, 재난안전, 일자리, 취약계층지원 등으로 별도 유형화하여 관리하여 분류체계를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속성 분류를 통해 각 사업에 속성을 부여하고 유형화하여 사업군을 분류하는 것은 그 자체로의 의의도 있지만, 추가 사업설명자료 역시 유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령 산업별 육성 지원의 경우, 수혜자 속성의 업종 세분화, 기업규모 상 세분화를 통해 사업군을 만들 수 있고, 해당 사업군을 표현해줄 수 있는 공통 설명요소(common data element) 속성을 추출할 수 있다. 이처럼 재정사업 속성분류를 통한 체계도 상에서 유사 사업들을 비교해줄 수 있는 공통 설명요소 식별을 통해 정책결정자가 보다 알기 쉽게 여러 사업대안을 비교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은 속성분류에 따른 사업분류 속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재정사업을 맞춤형으로 쉽게 검색하고 공통 설명요소를 통해 각 재정사업에 대해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사업 유형에 따른 공통 데이터 요소는 해당 사업의 집행 상황, 전년도 정보를 포함하는 성과정보, 각종 자산 획득 사업의 경우 지리 정보 등이 될 수 있으며, 결산과 연계할 때 필요한 건별 자료에 입력해야 하는 데이터의 표준화와도 연계될 수 있다. 특히 사업 속성의 경우 용자, 출연 사업의 경우는 공통의 정책 목적 유형 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수행방식의 차이로 인해 관련 성과정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성과정보는 일자리사업 유형과 같은 경우는 일자리 지원 목표치를 공통의 지표로 선택할 수 있으며, 금융지원의 경우는 지원업체/지원건수 등의 지표, 회수율 등의 공통 지표를 유형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사업군 구분이 더 정교해지고 성과 지표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경우 재정사업에 대한 대국민 및 정책결정자의 이해도는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된다.

물론, 시점에 따라 최고 정책결정자와 국민이 요구하는 정보는 변화한다. 특히 정책결정자의 교체가 있게 되는 선거 시점 등을 전후해 정책 지원 속성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2) 사업속성 및 수혜자 속성의 부여

가) 산업지원 유형

산업지원 유형의 사업은 정책 분류 속성과 정책 공통속성, 지원방식 속성과 사업 공통 속성, 기업 법인격/규모, 업종 속성을 부여한다. 예시 사업은 창업기업 융자이다. 산업 지원의 창업지원 유형에 해당하며 이 사업은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공통속성에 일자리를 입력한다. 융자 사업에 해당하므로 지원방식으로 융자 및 금융지원을 선택하며, 수행 방식으로 융자, 추가 속성으로 주관기관을 기입한다.

해당 사업은 의무지출 여부, 신규/종료사업 여부 등 사업 속성의 공통 속성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리대상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 속성의 공통속성으로는 관리대상을 지정한다. 수혜자 속성의 경우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 융자에 포함되므로 영리 기업의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수혜속성으로 하며, 업종은 일반이다.

사업명	정책	분류	사업 속성	
		공통속성	지원방식	수행방식
창업기업자금(융자)	창업지원	일자리	융자및금융지원	융자(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 속성	수혜자 속성	
사업명		공통 속성	수혜대상	업종
창업기업자금(융자)		관리대상	영리(중소, 벤처)	일반

기타 기입 정보의 경우는 사업 유형에 따라 기입한다. 창업기업자금의 경우는 2019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지원업체 영업이익률, 입교기업 사업화성 공률 등을 지표로 관리하고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융자사업의 경우는 지원금당 사업지원비율, 지원업체 수 등 사업 성격에 따라 성과지표를 다르게 관리하고 있어 성과정보에 대한 것까지 표준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정보를 DB화 하여 시계열로 관리할 경우 사업 성과 관리 및 의사결정지원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므로 산업지원의 지원방식별, 수혜자 별, 업종별로 성과정보를 유형화하는 방향도 검토해볼 수 있다.

나) 개인 복지지원 유형

개인 복지지원 속성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 지원과 다른 방식으로 속성을 입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프로그램예산체계에서 복지 분야가 아닌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에너지복지 지원 단위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개인 복지지원 속성의 기타 복지지원 정책속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사업 수혜자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가구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통속성에 취약계층지원을 소득기준으로 명시한다. 개인 기준으로 노인, 장애인이 가구에 포함되는 경우를 수혜자로 하고 있으나 해당 가구원을 포함하는 가구가 대상이므로 별도의 연령기준, 기타개인 속성은 부여하지 않는다. 지원방식은 서비스 중 바우처에 해당하며, 수행방식은 보조, 시행주체인 한국에너지공단을 기입한다. 해당사업은 의무지출이 아니면서 관리대상, 총사업비 대상 등도 아니므로 공통속성은 기입하지 않는다.

노인 대상사업 또는 영유아·아동 사업의 경우는 연령 기준을 입력하되 해당 사업이 취약계층지원을 명시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통속성을 기입한다. 기타 개인 속성은 보훈, 장애 등이며, 해당 속성을 가지는 사업들만 이 속성을 기입하도록 한다. 개인이 아닌 노인단체지원 등 비영리 단체에 대한 지원이면서 산업지원이 아닌 사업은 해당 속성으로 기입한다.

사업명	정책 분류		사업 속성		
		공통속성	지원방식	수행방식	공통속성
에너지바우처	기타복지지원	취약계층지원	서비스(바우처)	보조(한국에너지공단)	-
사업명	연령기준		소득기준	기타개인	단체지원
에너지바우처	-		1분위	-	-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경우 2019년 자율평가에서 지원 가구수, 바우처 수

급자만족도 등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는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이며, 해당 성과정보를 별도의 속성으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특히 수혜 개체수, 만족도 등의 지표는 다른 지원방식에서도 발견되는 성과지표로 하나의 성과 유형으로 관리하는 방향도 장기적으로는 고려해 볼 수 있다.

다) 시설 및 자산 지원 유형

시설지원의 경우 SOC사업은 대부분이 산업지원분야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이 건설/유지보수 여부, 총사업비 여부, 수행방식에 따라서 구조화가 가능하다. 예시로 드는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은 아래와 같이 속성이 기입한다. 물론 SOC분야가 아닌 문화, 복지 분야에 해당하는 각종 시설 및 자산 취득 사업은 아래 양식에 따라 표준 속성을 기입한다. 문화·체육, 복지 분야, 안전 분야의 시설지원 사업은 대부분이 생활SOC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군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사업명	정책 속성		수혜 속성
	정책 속성	공통속성	지원분야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	SOC건설 및 유지	-	산업지원

사업명	사업 속성		
	획득유형	공통속성	수행방식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	시설 건설 및 취득	총사업비 대상	자치단체 (김해, 부산)

추가 기입 속성은 주로 총사업비 여부, 수행방식 및 주관/해당 기관 등과 사업비 관련 정보들이 될 것이다.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와 누적 연부액, 사업 기간 등의 추가 속성을 기입할 수 있다. 건설사업의 경우 성과 정보를 관리한다고 할 때 관리 시 세부사업별 지리정보, 사업별 성과정보를 별

도로 관리할 수 있으나 매년 사업정보 업데이트의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 데이터 입력의 행정력 소비와 정보 취합 및 공개의 편익을 형량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정보는 단계적으로 수집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라) 국제협력

국제협력 유형의 사업 역시 다양한 부처에서 시행되며,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속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산업지원에 해당하는 R&D, 행정지원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에도 ODA사업이 있어 어느 속성에 포함시킬지는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검토를 해보아야 한다. 예시로 드는 기상청의 기후기술 협력기반조성은 ODA속성이면서 동시에 R&D사업으로, 연구재단의 출연 내역 사업과 국제부담금 해외이전 내역사업이 하나의 세부사업에 포함되어있는 유형으로, 해당 세부사업은 두 개의 사업을 분리해 각각의 사업에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의 분리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수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여기서는 해당 사업이 ODA로 분류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속성이 기입된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한다. 국제협력 사업의 경우는 별도의 업종이나 수혜자 속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사업명	정책 속성	공통속성
기후기술협력기반조성	ODA	R&D

사업명	지원 방식	공통속성	수행방식
기후기술협력기반 조성	국제 부담금 공동사업	신규사업	해외 이전 출연(한국연구재단)

차관사업 등 외교부 산하 사업의 경우는 별도의 국가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지원국가별 정보는 ODA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정책결정자

등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국제기구 부담금의 경우는 각각의 세부사업에서 단일의 국제기구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 마찬가지로 국제기구 통계에 관심을 가지는 수요자에게 유용하다. 다만 이들 정보는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유용하지만 여러 사업을 묶는 속성으로는 적합하지는 않다.

성과지표의 경우 산업부, 국토부의 경우는 대상국 만족도 등의 서베이 지표와 함께, 협력채널 개최 건수, 인적자원 교류건수/과건실적 등 비교적 표준화된 지표를 사용하고 있었다. 어느 정도 표준화된 성과지표 구성이 가능하므로 상세 속성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3) 속성분류체계 적용

가) 공통 사업군 분류 예시: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본 절에서는, 대표적인 정책지원 사업이면서 다유형에 겹치는 유형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속성 부여를 예시해보도록 한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크게 직접일자리,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실업급여), 창업지원 등 6개 카테고리로 나누어지며, 정부 공식 발표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2019년 현재 170개 사업 22.9조원이다.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에서 일자리사업에 대한 특정 사업들의 편성요령을 적시하고 있으나 각 부처에서는 세부사업이 아닌 내역사업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특징이 있다.

〈표 4-8〉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편성 현황

(단위: 조원, 개)

	2016		2017		2018		2019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직접일자리	2.6	65	2.7	50	3.2	50	3.8	40
직업훈련	2.1	54	2.3	53	2.1	50	2.0	37

고용서비스	0.7	30	0.8	32	1	35	1.0	36
고용장려금	2.8	21	3.2	19	3.7	18	5.8	24
실업소득유지및지원	5.7	11	5.9	10	6.8	10	7.9	10
창업지원	1.9	17	1.9	21	2.5	19	2.5	23
총합계	15.8	198	17.1	185	19.2	182	22.9	170

자료: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각연도

일자리사업으로 기입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속성을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기입한다. 사례인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민간보조 형식으로 수행되고 해당 세부사업이 별도의 내역사업 구분 없이 전액 일자리사업 대상이므로 세부사업 예산액을 기입하고 비중은 100%가 된다.

사업명	일자리사업 유형	수행방식	대상 예산액(백만원, 비중)
아동안전지킴이	직접일자리	민간보조	51,824(100%)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는 추가로 지원형태, 취약계층 참여비율을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통합지침상에서 지원형태, 취약계층 비율을 공개하고 있다.

사업명	지원형태	목표인원(명)	취약계층 비율	청년 목표비율
아동안전지킴이	사회봉사복지형	10,700	50%	-

사업명	내역사업	금액	목표 인원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	81,824	10,700

직업훈련 사업 등 다른 유형은 지원형태는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목표인원과 취약계층 목표를 입력한다.

이와 같은 형태로 입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내역

사업을 대상으로 취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아래 표는 2017년 기준 직접 일자리사업 중 세부사업의 90% 미만 예산액만이 내역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의 목록이다. 50개 사업 중 24개 사업이 일치 비율이 90% 이하인 만큼 세부사업 단위의 정보에서 일자리사업 해당 금액 및 내역사업별 지표를 관리해야 한다.

〈표 4-9〉 내역사업과 세부사업 일치 비율 90% 이하 사업(2017년 기준)

(단위: 억원, %)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시행 방식	내역 예산	세부 예산	비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 운영비 지원(R&D)	출연연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출연	41	1520	2.7
산림청	국제산림협력	해외산림인턴지원	보조	3	61	4.9
산림청	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보조 직접	152	2,551	6.0
고용노동부	업종별재해예방	안전보건지킴이	출연	39	466	8.4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	하천쓰레기수거사업	보조	14	167	8.4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글로벌농업인재양성사업	직접	18	188	9.6
국토교통부	항공전문인력양성	항공인턴십지원	보조	4	37	10.8
농림수산 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마을사무장채용지원	보조	34	313	10.9
국토교통부	해외인프라시장개척	글로벌청년리더양성	보조	29	263	11.0
문화체육 관광부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원	보조	60	517	11.6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보조	226	1,472	15.4
농림수산 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	전화예찰, 전문상담	보조	63	405	15.6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지원	보조	81	486	16.7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인력육성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육성	보조	40	140	28.2
여성가족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새일여성인턴,	보조	148	490	30.2

		결혼이민여성인턴				
농촌진흥청	농가경영개선지원(보조)	민간전문가육성	보조	29	91	31.9
여성가족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방문교육서비스 등 4건	보조 출연	274	633	43.3
문화체육 관광부	박물관 진흥지원	등록사립박물관전문인력지원	보조	35	78	44.9
행정자치부	국가기록물정리		직접	36	71	50.7
행정자치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	보조	52	89	58.4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사업	보조	695	951	73.1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보조	2,881	3,426	84.1
외교부	해외봉사단(ODA)	해외봉사단 등 4건	출연	1,116	1,326	84.2
보건복지부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보조	652	739	88.2

자료: 2017년도 직접일자리사업 통합공고, 고용노동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현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탑재된 자료만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모두 다루기는 어려운 만큼, 추가적인 정보가 입력되어야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 생산이 가능하다. 2019년 기준 정부 발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170개 22.9조원이지만, 이를 세부사업 수준에서 합산하는 경우 158개 29.1조원이 된다. 사업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 사업 내의 여러 내역사업이 다수 속성으로 중복 지정되거나, 여러 내역 사업이 동일 속성에서 중복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2016~2019년 동안 여러 속성으로 중복되는 사업 수는 6~10개 사이지만 중복 속성 사업을 부여받는 세부사업의 예산액은 증가하고 있다. 여러 속성을 부여받는 세부사업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각 세부사업을 유사한 내역사업 묶음으로 편제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 보조 등 사업 수행 방식별로 편제하는 예산 편성 행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일자리사업만 볼 경우 속성 중복문제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성격에 따라 분리하고 사업정보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표 4-10〉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세부사업 집계 현황

(단위: 억원, 개)

	2016		2017		2018		2019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직접일자리	39,704	60	28,912	48	29,956	45	36,960	37
직업훈련	22,869	46	25,751	45	23,760	39	25,471	32
고용서비스	6,683	24	7,591	25	8,982	25	9,544	31
고용장려금	38,266	20	77,821	19	78,868	18	98,527	22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57,592	11	59,265	9	67,990	10	79,139	10
창업지원	21,406	15	24,636	20	26,473	18	29,554	18
직접일자리, 고용서비스	3,907	1	4,664	1	6,349	1	8,220	1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126	1	486	1	899	2	-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461	1	-	-	533	1	560	1
직접일자리, 창업지원	-	-	91	1	-	-	2,086	1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674	2	1,346	4	1,228	5	398	2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166	1	-	-	-	-	-	-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	-	-	-	-	-	740	1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	-	-	-	27	1	193	2
총합계	191,854	182	230,562	173	245,067	165	291,393	158
중복 속성 사업 규모	5,334	6	6,586	7	9,037	10	12,197	8

주)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산림청 해외산림인턴지원(3억원), 국토교통부 항공인턴십지원(4억원) 같은 소액 인턴 사업은 현행 내역사업으로 관리하더라도²⁶⁾ 3조 9,986억원 규모의 학자금 사업 중 일자리사업 대상 내역사업이 864억원에 달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복

26) 유사 사업들을 인턴 및 해외파견으로 묶어 다부처 사업으로 관리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는 부처간 분리를 전제로 하는 현행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뛰어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지교사 파견 지원, 여성가족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처럼 200억원이 넘는 사업들도 세부사업 분리 검토 대상이다.

세부사업 기준 일자리사업을 품목별로 볼 경우 민간이전이 14.4조원
(49.6%)로 가장 많았으며, 자치단체 이전은 4.3조원(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 사업은 합쳐 18.7조원으로 세부사업 기준 전체 일자리사업의 64.2%
였다. 현재 국고보조 사업은 전 사업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예산정보는 세부사업 수준에서 비율 정보로 관리하
고 집행 정보는 디지털예산시스템과 보완하여 산출하면 더 정확한 정보를 산
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직접일자리 사업은 총액의 79.8%가 자치단체,
직업훈련은 65.6%가 민간이전을 통해 수행되는 등 사업 유형별로 전달방식에
의 특징이 나타나므로, 사업수행 방식을 사업유형에 따라 분류해 세부속성을
관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표 4-11〉 세부사업 기준 일자리 사업 품목별 분류

(단위: 억원)

	인건비	경상경비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출연	용자	기타	행합계
직접일자리	486	234	3	3,342	29,552	2,435	-	907	36,960
직업훈련	-	129	0	16,638	1,510	7,031	-	163	25,471
고용서비스	685	601	74	6,612	122	1,416	-	34	9,544
고용장려금	-	890	13,582	41,742	903	40,929	282	200	98,527
창업지원	33	914	-	876	542	3,666	23,236	289	29,554
실업소득유지 및지원	-	12	4,752	73,973	-	-	401	-	79,139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	102	-	296	-	-	-	-	398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	0	-	22	-	171	-	-	193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	0	-	-	-	740	-	-	740
직접일자리, 고용서비스	-	1	-	895	7,324	-	-	-	8,220
직접일자리,	-	6	-	12	541	-	-	-	560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직접일자리, 창업지원	-	4	-	-	2,083	-	-	-	2,086
열 합계 (비중, %)	1,204 (0.4)	2,894 (1.0)	18,411 (6.3)	144,408 (49.6)	42,577 (14.6)	56,387 (19.4)	23,919 (8.2)	1,593 (0.5)	291,393 (100.0)

주) 출연금은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을 합한 금액임

나) 적용 사례 : 보건복지부

연구에서 제시한 공통색인 분류체계를 보건복지부 세부사업에 적용해 사업군을 분류해보도록 한다. 분류를 위한 기초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열린재정 홈페이지에서도 검색 가능한 사업 정보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세부사업별 각목 예산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설명자료는 각종 내부·보전거래 사업도 포함한 총계 기준으로 공개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사업을 모두 포함해 분류한다. 단, 사업별 속성부여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중복 속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분류 결과 제시하는 사업수와 예산액은 예시용 참고로만 사용하도록 한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중복 속성의 문제이다. 어느 사업이라고 해도 속성 중복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다. 가령 현재 복지 개인지원 유형에 포함된 노숙인 등 복지지원사업의 경우 노숙자 자활 프로그램에 쓰이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비용과 노숙자 재활·요양시설 및 주택 지원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비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류체계에 따르려면 해당 사업을 분리해 복지 유형의 사업에는 경상보조 비용만을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다른 대분류인 시설 및 자산 지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개념적으로는 맞다. 본 연구는 이처럼 품목으로 분리할 수 있는 사업을 분리하지는 않고, 사업의 목적을 기준으로 정책 유형을 대분류하도록 한다. 노숙인 등 복지지원 사업은 노숙자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 명칭이 복지라고 되어있으며 해당 사업의 사업비 중 90.4%(396억원 중 358억원)가 노숙자 프로그램 운영, 시설 운영

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지원되고 있어 사업 성격을 시설 및 자산 지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복지 개인지원의 기타 복지지원 사업으로 유형화하도록 한다. 다른 사업들도 이와 유사하게 사업 목적, 사업 내 각목의 비중 등을 바탕으로 분류하였다.²⁷⁾

사업수를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행정·정책 지원으로 분류되는 간접사업의 수가 336개로 가장 많았다. 직접 지원이 아닌 체계구축, 각종 운영지원 사업이 다수 편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정책 지원 사업은 경상경비 79개, 내부·보전 거래 56개, 정책운영지원 67개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 지원 유형은 기타 산업일반에 속하는 사업이 68개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이 보건 분야의 연구 개발사업이었다.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보건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이 52개로 가장 많았다.

복지·개인 지원 사업은 97개였으며, 사회보장급여 17개, 보건 15개, 기타 30개 등이었다. 시설지원 목적이 주를 차지하는 시설 및 자산지원 유형의 사업은 26개였다. 국제협력지원은 15건이고 국제기구 분담 성격의 ODA사업은 9개로 나타났다.

〈표 4-12〉 정책 유형 대분류-중분류 기준 사업 분류

(단위: 억원, 개, %)

구분	사업수	(사업수 비중)	예산액	(예산액 비중)
산업지원	69	(12.7)	635,356	(0.4)
산업 분야 지역발전	1	(0.2)	42,390	(0.0)
기타 산업일반	68	(12.5)	592,966	(0.4)
복지 개인지원	97	(17.9)	66,211,430	(39.1)
사회보장급여	17	(3.1)	39,116,522	(23.1)
고용지원	4	(0.7)	1,037,548	(0.6)
보건	15	(2.8)	1,467,420	(0.9)

27) 이와 같은 분류는 앞의 일자리 사업과는 달리 정부나, 재정정보원의 공식견해가 아니다. 합계 예산액의 경우는 사업 설명자료의 예산액을 합한 총계기준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의 확정 예산과 다를 수 있다.

교육	1	(0.2)	3,741	(0.0)
기타복지지원	60	(11.0)	24,586,199	(14.5)
시설및자산지원	26	(4.8)	1,135,362	(0.7)
기타 자산 취득 및 유지	26	(4.8)	1,135,362	(0.7)
국제 협력 지원	15	(2.8)	65,230	(0.0)
ODA	9	(1.7)	50,098	(0.0)
공동 사업	1	(0.2)	2,448	(0.0)
국제기구 분담금	1	(0.2)	937	(0.0)
기타 국제협력	4	(0.7)	11,747	(0.0)
행정정책지원	336	(61.9)	101,153,637	(59.8)
인건비	25	(4.6)	1,725,080	(1.0)
경상경비	79	(14.5)	178,505	(0.1)
정책개발	19	(3.5)	59,159	(0.0)
정책운영지원	57	(10.5)	658,742	(0.4)
행정사무위탁	1	(0.2)	74,908	(0.0)
행정지원	38	(7.0)	1,497,531	(0.9)
행정지원 정책운영지원	9	(1.7)	112,441	(0.1)
정보화	37	(6.8)	131,578	(0.1)
내부/보전거래	58	(10.7)	96,675,331	(57.1)
기타	12	(2.2)	40,362	(0.0)
총합계	543	(100.0)	169,201,015	(100.0)

주) 사업설명자료 총계 기준

산업지원은 보건 산업 유형의 연구개발사업(R&D)이 대부분이므로 별도의 세부분류를 제시하지 않는다.

개인·복지 유형은 97개의 사업이 중분류-사업속성을 따라 14개 유형으로 세분화한다. 기타를 제외하면 기타 복지지원 속성 사업 중 돌봄의료 서비스가 23개로 가장 많다. 보건 속성 사업 중 돌봄의료 서비스는 14개이며, 전체 돌봄의료 방식의 서비스가 37건으로 전체 사업의 1/3을 차지했다. 이들 돌봄의

료 서비스의 예산액 비중은 각각 0.7%, 1.8%에 불과해, 소액의 예산이 다수 사업으로 분리되어 편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수당 및 복지성 급여는 사회보장급여 유형에서 15개, 기타 유형에서 2개로 총 17개였다. 현금과 유사한 성격의 이전인 바우처·현물은 3개, 연금은 2개 등이었다.

〈표 4-13〉 개인·복지지원 유형의 중분류 지원방식별 분류

(단위: 백만원, 개, %)

중분류	지원방식	사업수 (개)	(사업수 비중)	예산액 (백만원)	(예산액 비중)
고용지원		4	(4.1)	1,037,548	(1.6)
	서비스	3	(3.1)	959,458	(1.4)
	교육훈련	1	(1.0)	16,669	(0.0)
	기타	2	(2.1)	942,789	(1.4)
	현금지급	1	(1.0)	78,090	(0.1)
	기타	1	(1.0)	78,090	(0.1)
사회보장급여		17	(17.5)	39,116,522	(59.1)
	현금지급	17	(17.5)	39,116,522	(59.1)
	연금	2	(2.1)	23,041,459	(34.8)
	제수당 및 복지성급여	15	(15.5)	16,075,063	(24.3)
교육		1	(1.0)	3,741	(0.0)
	서비스	1	(1.0)	3,741	(0.0)
	기타	1	(1.0)	3,741	(0.0)
보건		15	(15.5)	1,467,420	(2.2)
	서비스	15	(15.5)	1,467,420	(2.2)
	돌봄의료	14	(14.4)	432,291	(0.7)
	융자금용	1	(1.0)	1,035,129	(1.6)
기타복지지원		60	(61.9)	24,586,199	(37.1)
	현금지급	5	(5.2)	14,931,229	(22.6)

		제수당 및 복지성급여	2	(2.1)	11,516,127	(17.4)
		기타	3	(3.1)	3,415,102	(5.2)
	서비스		54	(56.7)	9,654,970	(14.6)
		돌봄의료	23	(23.7)	1,168,300	(1.8)
		바우처/현물	3	(3.1)	26,028	(0.0)
		융자금용	3	(3.1)	39,116	(0.1)
		기타	26	(26.8)	8,421,526	(12.7)
	총합계		97	(100.0)	66,211,430	(100.0)

주) 사업설명자료 총계 기준

개인·복지 유형 속성이 공식 예산체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부문을 기준으로 분류 예시를 제시하도록 한다. 속성 분류는 이미 부문 속성이 있는 사업에 또다른 중복 속성을 부여하면서 사업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령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공식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속해있으나 근로능력을 전제로 탈수급, 즉 고용을 목표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정책분류 속성으로는 고용이 적합하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인부문에 속하기는 하지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도 속하는 고용지원 사업이다. 이처럼 부문이 설명해주지 못하는 정책의 목표 측면을 보완하게 된다.

사회복지분야의 부문은 대체로 수급자의 기준을 중심으로 사업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수급 자격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더 세분화할 경우 부문 체계를 보완하는 수혜자 중심의 사업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표 4-14〉 개인·복지 유형 중분류별 부문별 사업 분류 및 예시

(단위: 백만원, 개)

구분	부문	사업수 (개)	예산액 (백만원)	사업 예
고용 지원	기초생활보장	1	1,037,548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노인	1	78,09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취약계층지원	2	822,002	장애인일자리지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소계	4	137,456	
보건	노인	2	1,467,420	노인건강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보건의료	11	1,054,725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구강건강관리 등
	아동·보육	3	375,201	모자보건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고위험 산모·신생아지원
	소계	15	37,494	
사회 보장 급여	건강보험	2	39,116,522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차상위계층지원
	공적연금	2	304,406	국민연금급여지급,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기초생활보장	6	23,041,459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아동·보육	3	10,884,767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아동수당
	취약계층지원	4	3,064,917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활동지원
	소계	17	1,820,973	
교육	보건의료	1	3,741	응급처치 활성화지원
기타 복지 지원	건강보험	2	24,586,199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
	공적연금	3	7,873,159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관리, 노후연금자금 대부사업, 노후준비서비스
	노인	5	63,650	기초연금지급, 노인단체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기초생활보장	1	35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보건의료	15	11,665,164	국가예방접종 실시, 골수기증희망자검사지원 등
	사회복지일반	9	486,730	나눔문화 확산, 보건복지상담센터 등
	아동·보육	12	615,715	가정위탁지원운영, 다함께돌봄사업 등
	취약계층지원	12	3,665,383	노숙인 등 복지지원, 발달장애인지원 등
	소계	59	216,363	
사업수 합계		97	66,211,430	

주) 사업설명자료 총계 기준

다음은 사업 수행 방식에 대한 속성이다. 보건복지부의 공통 속성 정보는 별도로 표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총사업비 대상 사업, 관리대상사업의 수가 적은 반면 의무지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수급 자격을 만족하면 대체로 월별로 균등하게 집행되는 의무지출 사업들이 연간 관리대상사업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시행주체는 출연, 보조 등 사업의 지출 성격과, 사업 설명자료 상의 주관 기관 정보를 바탕으로 분류했다. 개별 사업이 공공기관, 민간, 자치단체, 직접 수행 방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 세부 사업이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지원은 공공기관이 주를 이루고, 복지·개인 지원과 시설 및 자산지원은 자치단체를 주요 전달수단으로 운영되며, 국제협력과 행정지원은 중앙관서의 직접수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표 4-15〉 정책 유형 대분류별 시행주체별 분류

(단위: 백만원, 개)

구분 / 시행주체	사업수	예산액	구분 / 시행주체	사업수	예산액
산업 기업지원	69	635,356	시설및자산지원	26	1,135,362
공공기관	42	445,325	공공기관	5	65,436
공공기관, 민간	3	42,243	공공기관, 자치단체	2	47,615
공공기관, 민간, 자치단체	1	12,755	민간, 자치단체	3	630,666
공공기관, 자치단체	1	8,049	자치단체	12	309,056
민간	1	1,840	중앙관서	4	82,589
자치단체	2	42,640	국제 협력 지원	15	65,230
중앙관서	19	82,504	공공기관	1	937
복지 개인지원	97	66,211,430	민간	1	11,138
공공기관	11	30,435,736	중앙관서	13	53,155
공공기관, 민간	2	1,825,463	행정지원	336	101,153,637

공공기관, 민간, 자치단체	3	105,628	공공기관	47	96,316,611
공공기관, 민간, 중앙관서	1	44,677	공공기관, 민간	3	19,061
공공기관, 자치단체	8	11,968,805	공공기관, 자치단체	4	98,548
공공기관, 중앙관서	2	13,419	공공기관, 중앙관서, 자치단체	1	52,996
공공기관, 중앙관서, 자치단체	2	138,873	민간	16	99,197
민간	11	75,820	민간, 자치단체	4	22,542
민간, 자치단체	12	187,857	민간, 중앙관서	1	4,254
민간, 중앙관서	2	86,150	민간, 중앙관서, 자치단체	1	5,125
자치단체	29	18,821,347	자치단체	15	1,507,480
중앙관서	11	2,491,945	중앙관서	240	2,752,578
중앙관서, 자치단체	3	15,710	중앙관서, 자치단체	4	275,245
총합계				543	169,201,015

주) 사업설명자료 총계 기준

마지막은 행정지원 사업의 유형별 부문별 분류이다. 보건복지부의 부문별 예산구조는 행정지원사업의 성격을 어느정도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다. 보건·의료 분야가 194개로 전체 행정·정책 지원사업의 57.7%에 달하는데, 이는 재하원 등 책임운영기관 사업과 공공조직원은행 등 조직 지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등 위원회 지원, 질병유전자 발현조절기반 구축 등 산하 조직의 인프라·정보 생산 사업,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 정책개발 사업 등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는 사회복지 일반의 경상경비가 57개로 많은데 정보화, 본부 정책관·지원관 별 기본경비가 모두 사회복지일반 부문으로 편성됨에 따른 것이다. 취약계층지원 부문 경상경비는,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 사업 전체가 취약계층 부문에 포함됨에 따른 것이며, 사업자체는 기본경비와 전산운영경비에 해당한다.

〈표 4-16〉 행정지원사업 유형별 사업 분류

(단위: 백만원, 개)

중분류	부문	사업수	예산액	중분류	부문	사업수	예산액
인건비	건강보험	1	839,765	정책 운영 지원	건강보험	1	179
	공적연금	1	377,163		공적연금	1	56
	보건의료	16	98,680		기초생활보장	1	12,601
	사회복지일반	5	386,511		보건의료	37	340,569
	취약계층지원	2	22,961		사회복지일반	3	7,741
	소계	25	1,725,080		아동·보육	10	259,343
경상 경비	건강보험	1	2,853		취약계층지원	4	38,253
	보건의료	19	146,745	행정 지원	소계	57	658,742
	사회복지일반	57	28,774		공적연금	1	611
	취약계층지원	2	133		보건의료	56	201,325
	소계	79	178,505		사회복지일반	7	29,004
정보화	공적연금	1	5,979		아동·보육	3	1,254,587
	보건의료	27	41,357		취약계층지원	3	15,805
	사회복지일반	8	83,266		소계	38	1,497,531
	취약계층지원	1	976	행정 지원 정책 운영 지원	공적연금	2	29,292
	소계	37	131,578		보건의료	2	4,372
정책 개발	건강보험	1	714		사회복지일반	4	70,720
	공적연금	2	2,780		취약계층지원	1	8,057
	보건의료	11	47,186		소계	9	112,441
	사회복지일반	4	7,011	기타	보건의료	11	40,064
	아동·보육	1	1,468		취약계층지원	1	298
	소계	19	59,159		소계	12	40,362
행정사무 위탁	공적연금	1	71,107	합계		336	101,153,637
내부거래	공적연금	7	95,417,157				
	보건의료	46	1,221,026				
	취약계층지원	5	37,148				
	소계	58	96,675,331				

주) 사업설명자료 총계 기준

4) 속성정보 관리체계

이상에서 사업별 공통 속성 추출 및 이에 바탕을 둔 사업 분류 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통 색인에 기반을 둔 사업 분류는 사업별로 공통 색인을 부여하고 사업들을 속성에 따라 분류해 사업정보 등을 관리하고 예산 편성·심의 과정과 대국민 정보 생산에 활용할 수 있다.

공통 속성 기반 분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업 설명자료를 전산화하고 관련 성과정보, 재정사업 개편 정보 등의 사업 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사업 이력관리는 2008년 dBrain 개통 이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지침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설명자료 양식 역시 dBrain의 사업관리시스템의 양식을 한글 서식(hwp)로 복제해 작성하고 있고 시스템으로는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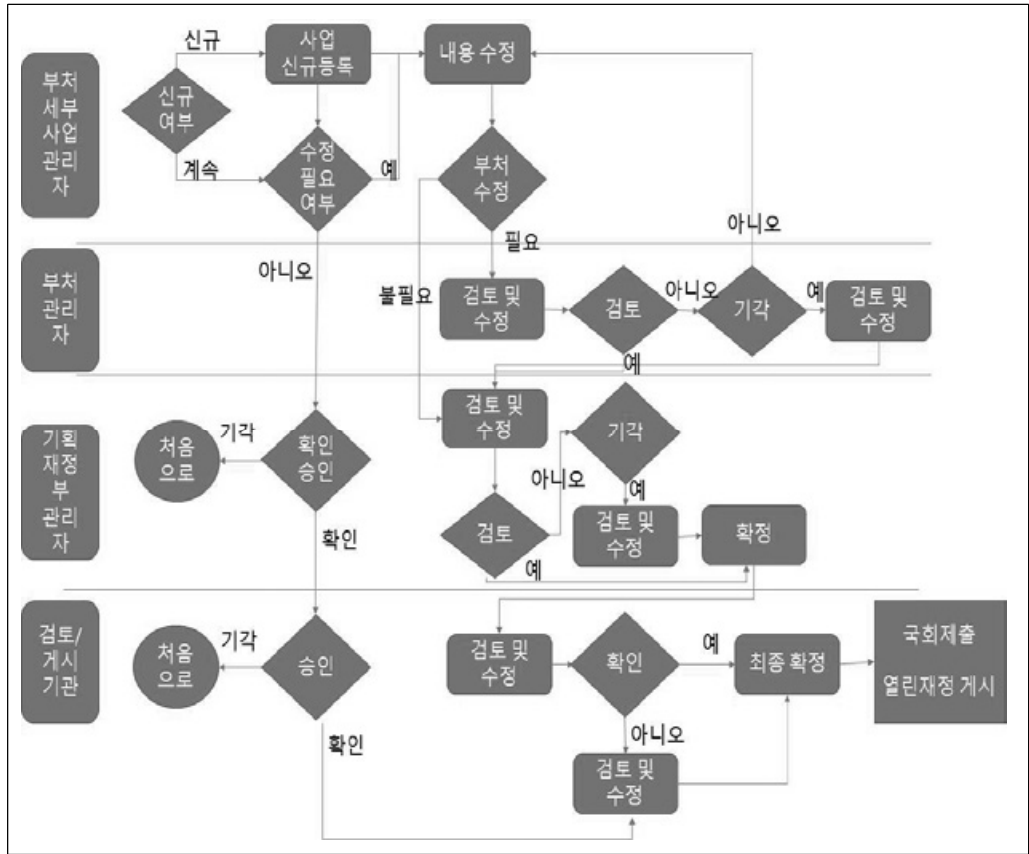
물론 재정사업 이력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제반 행정력, 시스템 지원 미비 외에도 재정사업체계 전반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 일단 하나의 재정사업에 대해 공통속성이 부여되고 사업설명자료가 1회적으로 등록되는 것만으로 사업정보관리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재정사업 개편은 부처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정부조직개편, 회계·기금 개편과 국정과제 변경에 따라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건설사업, 연구개발사업 등 자본 사업은 주기적으로 신규사업과 종료사업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예산사업의 역동성을 고려해 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의 이력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계속사업, 신규사업, 개편사업 등을 분리해 각사업에 대한 공통속성부여와 사업 설명자료 작성 및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예산 편성 체계에서 5월 경 부처 예산요구 시점이 종료되어야 부처의 자율적 사업체계 개편, 신규사업 등록 등이 확정된다. 예산 심사를 위해서는 관련 자료가 2~3월에는 완비가 되어야 하고, 정확

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의 사업설명자료는 8월 말에 국회로 송부되어야 하므로, 수정·확정된 사업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다. 그리고 12월 3일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에서도 사업별 정보 수정, 국회 신규사업 및 폐지사업으로 인한 수정소요가 발생하므로 대국민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일정도 촉박한 편이다.

재정사업 속성정보의 정확성,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사업 담당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전산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속성 정보 관리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회기에 맞춘 정확한 일정관리와 담당자 지정, 그리고 관리체계의 지침화가 필요하다.

〈그림 4-3〉 속성정보 업데이트 흐름도 예시



위 그림은 미국 CFDA의 관리체계의 사업정보 관리 및 등록절차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예에 적용을 해본 것이다. 신규사업 등록, 개편 사업 정보수정을 시스템 상에서 하되 이력관리를 위한 절차, 승계 자료의 관리방식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설명자료에 더해 관련 속성을 업데이트하고 검증받는 절차만을 밟도록 간소화하여 관리한다.

〈표 4-17〉 속성정보 관리 일정 예시

활동 명	주관	기한
속성 및 사업자료 업데이트 설명회	기획재정부	1/31
부처 관리자 간담회	기획재정부-전담기관	2/31
신규사업 확정 및 업데이트	부처	3/21
개편사업 확정 및 업데이트	부처	3/31
최종 업데이트	부처	5/31
기획재정부 심사 수정	기획재정부	6/31
전담기관 확인 수정	전담기관	7/15
국회 제출	정부	8월 말
국회 확정	국회	12월 초
부처 업데이트	부처	12월 말
전담기관 확인 및 열린재정 게시	전담기관	1월 중

예산 요구시점에 맞추어 사업정보 업데이트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일정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빠른 검토 및 수정이 있어야 하며, 사업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지정도 고려해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관리예산처가 최종 승인 등을 결정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과 작성/게시 시스템 지원은 조달청(GSA)이 담당하고 있다.

시스템 자료 입력에 있어 주요 시점은 5월, 12월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예산 회기에 따른 정보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년 12월에 완벽한 정보가 입력되어야, 차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사업설명자료 수정 소요가 적어진

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활용되는 자료는 신규사업과 개편사업을 중심으로 3월, 늦어도 4월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금액, 내용 수정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회 송부를 위한 설명자료는 늦어도 6월까지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12월에는 국회 폐지사업에 대한 업데이트,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작성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각각의 사업정보가 표준화된 식별번호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시점에 따라 유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력관리 담당자를 현재의 단위사업 관리자에서 세부사업 관리자 수준으로 낮추되 검증을 위한 담당자를 부처 단위사업 담당자, 외부 담당자 등을 지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일정관리, 사업 정보 관리 절차 등을 표준화하는 것은 시스템 기반 사업 정보 및 속성 관리의 1단계이다. 사업 유형별 공통 서식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 사업 유형 변경 시 사업 양식 변경에 따른 구(舊) 정보의 관리 절차 등을 만드는 것은 그 다음단계가 될 것이다. 사업 유형별 표준 양식, 정보관리 절차 등은 현행 사업 정보 관리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관련 사업 담당자 등과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2. 재정사업정보 관리 운영 방향

지금까지 재정사업정보 관리를 위한 정책목적과 사업수행방식, 수혜자 중심의 속성(공통색인) 추출 및 사업 분류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재정사업체계는 부처별 예산 편성과 국회 보고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수혜자 중심으로 예산사업을 알려주거나, 별도의 사업군을 분류해 정보를 생산하고 의사결정자나 국민에게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국민 공개용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체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 속성 체계안을 제시했다. 여기서는 속성 분류체계를 재정립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한다.

1) 속성정보의 생산목적 명확화 및 목적에 맞는 속성체계 구축

속성분류 기반 재정정보 생산이 정확성과 신속성을 가지려면, 어떠한 정보를 생산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속성 기반 사업 분류 체계는 크게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예산정보와 결합, 상위 의사결정자에 대해 정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와, 사업에 대한 요약 정보로서 일반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사업을 알기 쉽게 검색하게 해주는 동시에 예산정보와 결합하여 대략적으로 특정 수혜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사업의 규모가 얼마인지 알려주는 일종의 사업 가이드 성격의 체계, 그리고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재정지원이 돌아갔는지 정확하게 식별하게 해주는 일종의 통계 기준으로서의 체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재정사업에 대한 속성에 대한 정의가 없고 용례의 구분이 없이 사용되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 가지 유형 중 예산 편성을 위한 속성정보 정도만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으로 구현되어있는 수준이다. 수행해야 하는 각 부처 제공 사업설명자료는 예산안 심사 자료 작성용 서식을 이용하므로 수혜자를 중심으로 요구자료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지 않아 대국민 설명자료로서의 기능이 부족하다. 또한 전자화되어있지 않아 검색서비스도 제공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예산 편성을 위한 기본 단위로서 세부사업이 대국민 정보공개 기본단위인 세부사업과 단위가 동일한 것은 장점이다. 따라서 예산 편성과 정의 의사결정지원과 대국민 정보공개 모두를 위한 속성 기반 사업 관리가 용이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세부사업이 예산을 편성, 심의, 의결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세부사업을 복수의 수혜자 유형, 전달경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에서 재정사업 속성관리는 중복 속성을 현실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의사결정 목적의 속성과 수혜자 중심의 속성을 분리하고 의사결정 지원 목적의 속

성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단순하면서 체계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반면 수혜자 속성은 각 사업에 중복부여가 가능하도록 하되 연구에서 제안한 속성 이상으로 다양한 색인 성격의 속성정보를 부여해야 한다. 사업별 색인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어떠한 단어에 익숙하며, 정부가 붙인 이름 외에 실제로 국민이 어떠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수집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²⁸⁾ 단기적으로 단일 세부사업이 단일 전달경로 또는 단일 수혜자와 매칭되도록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하게 중첩 속성의 사업 설명 속성을 부여하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혜자 귀착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 생산은 집행과 결산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대략적인 수혜자 조건 등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사업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 정확한 수혜자 정보는 내역사업을 관리하는 각 사업부서의 집행시스템이 더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 집행 및 사후자료를 dBrain과 집행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관리한다면, 결산 정보를 바탕으로 더 정확한 예산 추계가 가능해질 것이다.

2) 시스템 기반 속성의 표준화와 유연한 관리

현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는 사업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관리시스템이 존재하며, 약 100여개가 넘는 속성이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나 시스템 개통 초기에 단발성으로 데이터들이 수집, 입력되어 있는가 하면, 4대강, 일자리 등 정책사업이 이슈가 될 때마다 새로운 속성이 등록되고 입력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대부분의 속성은 일정한 분류체계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 않고, 관련 속성의 입력에 대한 설명, 지침 등이 없는 실정이다.

속성정보를 이용해 재정정보 활용도를 높이려면 현재 시스템에 등록되어

28) 미국은 CFDA 상의 사업 명칭은 부처에서 붙인 프로그램 명칭 외에 대중적 명칭(popular nam)을 동시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있는 속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재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dBrain에 등록되어 있는 속성정보는 속성 범주 자체가 현재 통용되는 속성과 거리가 있을뿐더러, 특정 속성과 상관없는 사업들에 해당 속성이 부여되어 있는 등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는 속성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기존에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속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속성 체계를 확립하고 시스템 입력 도구 및 보고서 작성 툴, 검색 시스템 도입 등 제반 시스템의 정비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에 부여되는 속성에 대해 어떠한 값이 속성으로 지정되어야 하는지 명료한 합의와 지침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자리사업을 관리한다고 하면 전혀 상관 없는 일자리사업이 일자리사업으로 속성 지정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속성 분류체계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속성에 어떠한 사업이 속하게 되는지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해당 속성에 속하는 사업을 충분히 예시해주어 속성을 입력하는 시스템 사용자가 정확한 속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 이력관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업 ID 관리도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에 대한 시계열 이력관리가 이루어져야 속성을 부여를 통한 정책대상 별 자원배분 등의 추적이 가능해진다. 현재의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소관, 회계,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코드가 부여되고 별도로 세부사업 단위의 식별 ID가 존재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코드는 관리적인 목적이 두드러져 시계열 관리, 자료 검색관리를 위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력관리와 시계열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이력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ID변동 추적과 아울러 사업 이력 변동 시 적시에 속성 등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물론 사업 속성을 시계열로 관리할 경우 어떠한 형태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실무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료 입력 지침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에 부여되는 속성을 관리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특히 주기적인 정권교체로 인한 정부조직 개편, 매년 진행되는 사업 중복 심사 및 통폐합, 내역사업 분할로 인한 세부사업 신

설, 자본 사업의 신규·폐지에 따른 사업 속성 업데이트 및 이력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속성에 따른 사업분류, 의사결정 지원, 관련 정보 생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사업별로 부여된 속성정보는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속성정보는 경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공식적 프로그램예산체계와는 비교적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다. 속성정보는 정권교체, 국정과제 변경 등에 빠르게 반응,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노후 속성이 있는지 점검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내역사업 등 정보의 연계가 필요할 경우는 세부사업의 관리코드와 속성, 그리고 내역사업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등의 관리코드와 속성을 표준화하여 필요시에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관리 거버넌스 구축

우리나라의 재정사업의 속성정보 입력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코드부여 체계, 그리고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의 사업 유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코드부여는 의사결정 지원, 대국민 정보지원 등의 목적이 아니라 재정의 책임성 증진을 목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부지침 상의 사업 유형은 일정한 체계에 의하여 사업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경비 등을 구분하고 연구개발, R&D, 일자리사업, 정보화 등 특정 정책 속성 사업의 편성요령을 가이드하기 위한 것으로 dBrain을 통해 해당 사업들의 정확한 예산액 또는 통계를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각의 재정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속성을 입력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현재 재정사업정보가 상세 설명자료도 아닌 요약속성마저도 정확하게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시스템 자료 입력에 요구되는 행정력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금액 정보 외에 사업 요약 정보인 속성정보와, 기타 필요 정보를 모두 입력하려면 각각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한 별도의 사업정보 입력 관리자를 사업군 별로 지정하여 정보가 필요한 예산 편성시기, 확정 시기, 프로그램 예산 개편 시기 등 시기에 맞추어 자료를 입력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그러나 시스템 자료 관리에 투입되는 인력이 제한적이고 순환보직으로 인해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자료관리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공직환경 등이 속성정보 체계의 일관성과 적시성을 저해하고 있다.

사업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그만큼의 인력, 재정 등의 행정력 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시스템 등 인프라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속성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려면 현행보다 진보한 재정사업관리 체계, 관련 지침과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현행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사업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먼저 시범적으로 어떠한 범위까지 속성을 통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시범적 사업이 우선 필요하며, 지속적인 실무합의를 통해 관리 자료의 범주를 확정하고 교육해야 한다.

현행 dBrain에서 나아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에서 실효성있는 사업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관련 절차 등을 시스템화하여 제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예산 편성단계에서 실효성있는 속성 입력 및 업데이트가 어렵다면 별도의 속성관리 일정 및 전담인력을 배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 속성 입력 내용의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속성정보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조직 지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정비

현행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공식적으로는 국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입법과목인 장·관·항에 해당하는 분야·부문·프로그램, 그리고 행정과목으로서 자율적 성과관리 대상인 단위사업으로 분류된다. 단위사업은 「국가재정법」 상 세항에 해당하고 편성의 기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

르도록 하고 있으며, 복수의 유사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세부사업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의 사업 유형별, 목별 세부지침에 근거하여 작성되고 있으나, 대략 인건비, 경비성 사업과 이외의 사업성 사업만이 구분이 가능하다. 사업성 세부사업은 별도의 분류체계가 없으며, 전달 경로나 수혜자 정보 표시에 대한 지침과 가이드가 없다. 사업성 사업에도 인건비, 경비성 지출품목이 편성되고 있으며, 일자리, 연구개발, ODA, 정보화 사업 등 지침에서 규정하는 유형별 사업들도 세부사업에 포함되는 내역사업 개념으로 편성이 되는 실정이며, 해당 유형의 사업이 1:1로 세부사업에 매칭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세부사업 체계 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속성 분류체계에서는 각 분류체계에 모든 세부사업이 1:1로 대응할 수가 없으며, 결과적으로는 개별 속성이 각각의 사업의 특성 색인(character/subject index)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정책 대분류라고 해도 이 역시 1:1 대응보다는 일종의 대표속성이 되거나,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분야, 부분을 보완 설명해주는 속성 이상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는 2007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처음 개통하면서 정의한 세부사업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수혜자 중심으로 발전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7년 대비 2019년 총지출 규모는 238.4조원에서 469.6조원으로 연평균 5.0%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명목 연간 경상성장률인 3.2%를 웃도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의 숫자는 8,306개에서 7,401개로 오히려 줄었다.²⁹⁾ 그리고 사회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사업은 세부사업 하단의 내역사업을 신설하거나 증액하는 방식으로 예산사업이 변화해온 결과 지금의 세부사업은 복수의 내역사업에 대한 속성을 모두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재 편성되고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 특성 색인 정보만을 구축하는

29) 사업수는 연초 국회 확정 본예산 기준. 사업수는 본예산 확정 이후 세출 이월, 추경, 정부조직 개편, 결산 감사 과정에서 연중 변화한다.

것만으로도, 모든 정책사업에 대한 사업 검색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대국민 정보 서비스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다. 다만 다부처 수준에서 여러 사업을 묶어줄 수 있는 속성정보의 활용도 측면은 그만큼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 속성 분류체계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그만큼 세부사업의 편성단위를 정책 목표, 수행방식, 수혜자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

현재 편성되고 있는 세부사업 하단의 내역사업을 모두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정보화하고 관리하는 것도 사업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력에 견주어 볼 때 어려운 일이며, 예산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현재의 예산 사업 편성 및 심사 구조는 행정 낭비를 줄인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장점을 살리면서 속성 분류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면, 특정 정책목표를 가진 내역사업들만이라도 세부사업에서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전달경로와 실 수혜자 식별이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를 한 후 속성을 부여하고, 부여된 속성을 바탕으로 사업군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세부사업을 개편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이 선행한 후 속성에 의한 분류를 해야 정확한 정책별, 수혜자별 정보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

V 결론

재정사업의 속성이란, 사업에 대한 요약 색인 정보 또는 특정 값을 입력해야 하는 필드 등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재정사업의 속성 분류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하나는 여러 재정사업에 공통으로 부여할 수 있는 색인정보를 속성으로 파악, 이 속성을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다른 하나는 재정사업들에 공통 속성체계에 따라 속성을 부여한 후, 공통 속성을 분류한 기준에 따라 사업을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일관성있는 속성 분류체계를 따라 개별 재정사업에 속성을 부여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의미있는 재정정보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의사결정 지원과 대국민 자료 제공을 통한 투명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속성 분류체계 개발을 위해 색인성 정보 속성 분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세부사업에 부여되는 각종 정보를 검토했으며, 공통으로 부여할 수 있는 속성을 추출해 정책 유형, 사업 수행방식, 수혜자 구분을 따라 분류체계를 만들고 각각의 분류체계 상에 포함될 수 있는 속성을 묶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통 속성을 바탕으로 각각의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검토했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사업에 이러한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세부사업의 분류를 시도하여 어떠한 정보를 속성을 통한 재정사업 분류를 통해 추출할 수 있는지 탐색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부 사업별 공통 색인 속성정보의 관리는 재정사업정보 전산화 관리의 시작점이다. 시스템 기반 사업정보 관리는 단순히 공통 색인 속성정보의 관리에서 나아가 사업별 성과정보 관리, 이력관리, 수혜자 상세 정보 등의 내용을 망라하는 개념이다. 이들 정보를 모두 시스템으로 전산화하여 관리한다면 재정투명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업정보 전산관리는 부처와 전담관서의 업무부담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투입 행정력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업정보 관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관리정보의 범주를 정해야 한다. 만약 대국민 서비스가 주목적이라면 개별 사업별로 다양한 요약속성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이며, 의사결정 지원이 목적이라면 국회 지적사항 등 과거 이력 정보의 관리가 더 필요할 수 있다. 이처럼 재정사업정보 중에서 사용 필요성이 비교적 높은 정보부터 관리를 시작하고 성과정보, 사업별 지리정보 등 관리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속성정보는 표준화하여야 함과 동시에 유연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사업에 특정 속성이 부여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하고, 국정과제 소요 등으로 새로운 속성이 추가되는 경우는 신속한 속성정보 추가가 이루어지는 한편 사용되지 않는 속성에 대해서는 과감한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업별로 부여된 속성정보는 지속적으로 관리 및 업데이트 되어야 하고, 세부사업 하단에서 부처에서 관리하는 내역 사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 내역사업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연계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정사업 속성분류가 함께 예산액 즉 숫자로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추게 하려면, 현행 재정사업 체계에서 세부사업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복수의 내역사업을 재분류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내역사업들이 직접비, 간접비로 명백하게 분류되고 정책 목표, 수행 방식, 정책 대상 수혜자에 따라 구분되어야, 실질적으로 속성분류를 통해 사업군을 뽑아내고 예산액을 합산했을 때 그 예산액이 해당 정책 수혜자에게 특정 경로를 따라 전달되는 금액으로서 의미가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할 것은 속성정보의 관리 거버넌스이다. 속성분류체계를 확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리하는 체계가 불분명하다면 속성분류체계를 통해 생산된 재정정보의 신뢰성이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속성정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사업별 속성 부여와 분류, 일정 관리 등을 표준화한 지침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관리되는 사업자료의 범주를 변경 또는 확대하고 속성을 입력하는 사업관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권오성 외. (2016). 「재정사업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국고보조사업
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12.
- 기획재정부. (2015). 201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_____. (2014). 201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_____. (2015). 201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_____. (2016).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_____. (2017). 2018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_____. (2018).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지침.
_____. (2019). 2017년도 통합재정수지.
- 기획예산처. (2007). 2008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 김성주, 윤태섭. (2017).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분류체계의 개선방
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11.
- 김찬수, 오윤섭. (2013). 「공공부문 유사중복 사업 식별·관리 실태와 주요
이슈.」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004.
- 박정수. (2018). 「우리나라 재정정보공개 제도·시스템 개선방안」. 한국재
정정보원 연구보고서.
- 유승원, 이남국, 신가희. (2017). 「OECD 주요 선진국의 FMIS 운영 현황
조사」. 한국행정학회.
- 이원희 외. (2016). 「국고보조금 정보공개 대국민서비스 분류체계 개발」.
- 임성일, 이효, 서정섭. (2013). 「새로운 지방예산제도」. 서울: 박영사.
- 하연섭. (2014).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서울: 다산출판사.
- 한국재정정보원. (2019). 「2019 주요재정통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 「영국의 재정제도」. 정책분석 10-02.
_____. (2017). 「재정사업 성과지표 개발 매뉴얼」.

Department of Commerce. (2017). Understanding the Catalog of Federal Domestic Assistance.

Government of Canada. (2012). Financial Management System Configuration.

Government of Canada. (2018). Standard on Customer Record.

HM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8). *Country and Regional Public Sector Finances: Financial Year Ending 2017*.

HM Treasury. (2017). *Country and Regional Analysis November 2017*.

HM Treasury. (2018). OSCAR Annual Database 2018.

HM Treasury. (2018). *Public Expenditure Statistical Analysis 2018*.

HM Treasury. (2018). Understanding the OSCAR Data Release 2018.

HM Treasury. (2018). *Whole Government Accounts 2017*.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England and Wales. (2018). The UK Central Government Publ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 (2018). *Open Budget Survey 2017*.

Lloyd, Doug. (2012). Update and Status of Financial Management Transformation in the Government of Canada.

US Department of Treasury. (2018). *Treasury Financial Manual*.

US Office of Acquisition and Property Management. (2018). *Federal Domestic Assistance Reference Manual*.

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1984). *Circular A-89 Catalogue of Federal Domestic Assistance*.

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8). *Circular A-136 Financial Reporting Requirements*.

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8). *Circular A-11 Preparation, Submission, and Execution of the Budget*.

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2018). *Catalog of Federal Domestic Assistance*.

World Wide Web Foundation. (2017). *Open Data Barometer: Global Report*. Forth ed.

Government of Canada 홈페이지(canada.ca)

Government of Canada AGPAL 홈페이지(agpal.ca)

Government of Canada 산업부 홈페이지(www.ic.gc.ca)

dBrain 재정사업정보 관리 방안

발 간 월 2019년 8월
발 행 인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편 집 재정정보분석본부 재정통계분석부
발 행 처 한국재정정보원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273-0500
디 자 인 (주)메이커뮤니케이션 Tel. 02-761-8340
I S B N 979-11-965521-3-8 93350

문의: 재정정보분석본부 재정통계분석부 02)6908-8559
mymajesty@kpfis.kr



9 791196552138 93350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9 791196552138 93350